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883-01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



연구기관



주관기관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8월 11일

- 연구 기관 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 기간 : 2022년 5월 12일 ~ 2022년 8월 11일
- 참여 연구원
 - 연구 책임자 :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여 연구원 :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요약본]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연구 필요성) 국내외에서 NFT의 지위에 관한 규범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 NFT는 소유권 증명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NFT를 통해 확산 중
 - NFT의 개념·주요국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NFT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활용방안 및 핵심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연구 목표) 최근 확산되고 있는 NFT 시장에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쟁점 및 활용방안 도출
 - NFT의 개념 및 구조, 특성, NFT 관련 주요국의 입장, 산업 유형별 NFT 활용 사례 및 분쟁 사례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NFT 관련 지식재산 쟁점 도출 및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 활용방안을 모색

□ NFT의 의의

- (개념) 각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 저장된 토큰으로, 희소성* 및 대체불가능성**을 지님
 - *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동일한 복제가 매우 용이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
 - ** 개별적으로 어떤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한번 생성된 NFT는 위조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 가능
- (구조) NFT가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실제 디지털 자산까지 토큰의 구성요소로 판단
 - 소유권 대상인 디지털 자산과 메타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할 경우, 위·변조 등의 위험 발생
 - NFT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웹사이트 등을 폐쇄하는 경우 관련 NFT의 메타데이

터 및 디지털 자산 소실 우려 존재

- (표준) 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NFT가 발행되는데,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을 의미(사실상 표준)
- (특성) NFT는 토큰의 고유한 값인 토큰 ID와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정 토큰에 대한 소유권, 거래내역 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
 - 위조의 어려움을 통한 희소성 유지, 거래내역 추적의 용이성, 부분 소유권 가능, 거래 용이성 보장

□ 국가별 NFT 동향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NFT가 수집용(collectible)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
 -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인 경우,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규제되어야 하며, 실제 기능과 개별 국가 상황에 따라 맞춤형 규제 적용 권고
- (미국)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은 SEC(증권거래위원회), 상품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 아직 NFT의 관할은 불명확
 - 투자목적인 NFT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여 증권법이 적용될 여지 존재
 - 최근 발의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입법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탈중앙화적 성격으로 인하여 상품에 해당하고 CFTC가 관할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상원에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법적인 문제에 대해 특허상표청과 저작권청에 공동연구를 요청하였고, 공동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 착수
- (유럽) 아직까지 NFT는 규제대상이 아니나, 가상화폐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 Regulation) 시행 시 NFT가 넓은 의미에서 규제 대상 암호화

자산*에 속할 가능성 존재

* (암호화자산)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

- (독일) 은행법(KWG) 상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을 암호자산으로 규정
 - NFT가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NFT는 금융상품으로 분류 가능
- (중국) NFT를 가상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려는 경향
 - 중국과학기술부의 주도로 NFT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 초안 마련에 착수
- (일본)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결제기능(economic functions such as a means of payment)’의 부재로 NFT를 규제 대상에 불포함
- (싱가폴) NFT는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결제 토큰(Limited purpose digital payment tokens)’이므로 지불서비스법의 적용에서 제외
 - 단, NFT가 결제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활용될 경우 지불서비스법 적용
- (한국)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
 - 금융연구원의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 및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의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등 NFT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의 접근 외에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NFT 활용 및 분쟁사례

- (활용사례) NFT를 활용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 예술, 게임, 메타버스, 금융, 컬렉터블, 실물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하는 사례 증가

〈 NFT 관련 비즈니스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예술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술 및 음악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
게임	게임에 NFT, 탈중앙화금융(DeFi) 기술이 적용되면서 Play to Earn(P2E)이라는 새로운 장르 발생, 게임 아이템을 NFT 형태로 구매할 경우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이용자가 직접 소유 가능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에 관한 각종 정보 공유 및 NFT 거래, NFT 관련 창작자들의 공연, 작품발표회 등 실현. 이외에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 자체를 NFT로 발행 및 판매, 거래
금융	별도의 금융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탈중앙화 방식(DeFi)의 Peer to Peer(P2P) 거래(NFT 담보 대출, NFT 자산관리·평가서비스)
컬렉터블	스포츠카드, 연예인 굿즈 등 기존 컬렉터블 시장의 주요한 문제인 인증, 사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NFT 기술 활용
실물자산	NFT 기술 특유의 고유 ID 부여 및 추적 식별기능을 활용하여, 실물자산(물품)을 연계한 NFT의 발행을 통해, 판매 또는 중고거래 등이 가능
마케팅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NFT를 활용해, 자사의 상품(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활용

- (분쟁사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외에도 상표권 분쟁, 퍼블리시티권 분쟁, 부정경쟁행위, 플랫폼제공자의 책임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 (나이키 v. 스탁엑스) 온라인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가 허가 없이 나이키 신발의 이미지를 NFT로 제작해 판매한 것에 대해 나이키는 뉴욕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22.2.). 나이키는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스탁엑스 플랫폼에서 4개의 위조 신발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22.5.)
 - (에르메스 v. 로스차일드) 메종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작가가 에르메스의 '메타버킨' NFT 컬렉션을 판매한 것에 대해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22.1.).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로스차일드의 각하 신청을 기각('22.5.)
 - (미라맥스 v. 타란티노) 할리우드 영화사 미라맥스는 타란티노 감독이 1994년 개봉한 영화 '펄프픽션'의 각본과 미공개 장면 등을 NFT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계약위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21.11.)
 - (유가랩스 v. 라이더립스) 'BAYC' NFT를 제작한 유가랩스는 'RR/BAYC' NFT

를 제작하여 발행한 라이더십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22.6.)

- (중국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 창작자의 저작권 승인 없이 예술품을 도용해 NFT를 발행한 사건에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NFT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22.4.). 저작물의 권리유무와 침해 등에 대한 심사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 NFT 관련 지식재산 쟁점

- (상표)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NFT 관련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NFT로 발행하면서 해당 상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디자인)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서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등에서 물품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부정경쟁행위)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사이버스쿼팅, 유명인 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성과도용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등에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홈페이지 등의 도메인이름

- 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하는지 여부
 -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NFT의 발행에 대한 유명인의 동의나 해당 유명인과의 제휴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는 경우, 위작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에서 전송권 또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플랫폼제공자의 책임)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NFT 활용방안

-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NFT의 메타데이터에 지식재산 정보를 기재하거나 지식재산 정보를 NFT화하여 연동시키는 방안
 -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 또는 확인하여 안전한 NFT 유통환경 조성 및 지식재산권 분쟁방지에 기여
- (지식재산 출원·등록 시스템에 활용)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 등록과정에서 등록원부의 발행과 동시에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NFT를 발행하고 이를 동시에 ‘(가칭)지식재산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시키는 방안
 - 지식재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NFT에 대한 검색 및 거래를 통해, 구매를 원하는 NFT를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통하여 손쉬운 거래 실현
- (우선권 증명에 활용) NFT의 경우 고유한 인식값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우선권 증명에서 WIPO 접근코드를 NFT로 발행하는 방안

-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WIPO 접근코드의 위·변조 가능성 또는 위험성 문제 해소 가능

○ (지식재산 금융활성화에 활용) NFT를 지식재산의 소유권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술이전 및 조각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

- NFT가 해당 재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증한다는 특성으로,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지식재산과 결합한다면 지식재산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

○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활용) 원본 증명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 텍스처(Micro Texture)를 활용하는 방안

- 명품 및 중고거래에 활용되었을 때 위변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구매자 이익보호에 대한 부분, 신뢰성과 이력 정보에 대한 투명화 부분에서 기여 가능

□ 결론

○ NF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대두는 지식재산권이 현실이라는 전통적인 영역 외에도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을 고민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NFT 기술과 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상표의 사용 및 침해유형, 물품의 유사성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선제적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종속될 위험이 있음을 염두에 둔 접근 필요

○ 이에 일부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그 동안의 발생하는 문제 및 사례의 점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목 차

제 1 장 서론	1
I. 연구의 필요성	1
II. 연구의 범위 및 목표	2
제 2 장 NFT 의 의의	3
I. NFT 의 개념 및 연혁	3
1. NFT 의 개념	3
2. NFT 의 연혁	4
II. NFT 의 구조 및 특성	6
1. NFT 의 구조	6
2. NFT 표준	8
3. NFT 의 특성	10
III. NFT 의 유형	12
1. 활용 유형별 분류	12
2. 소재 유형별 분류	15
제 3 장 국가별 NFT 동향	17
I. 해외동향	17
1. 미국	17
2. 유럽	18
3. 독일	19
4. 중국	20
5. 일본	20
6. 싱가포르	21

II. 국내동향	22
제 4 장 NFT 활용 및 분쟁사례	24
I. NFT 유형별 활용사례	24
1. 예술	25
2. 게임	39
3. 메타버스	43
4. 금융	45
5. 컬렉터블	48
6. 실물자산	51
7. 마케팅	63
8. 기타	66
II. NFT 분쟁사례	71
1. 지식재산 관련 주요 분쟁사례	71
2. 지식재산 관련 기타 분쟁사례	91
3. 기타 NFT 관련 분쟁사례	96
제 5 장 NFT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99
I. 개요	99
II. NFT 발행·거래 과정에서의 상표권 쟁점	100
1. 문제제기	100
2.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100
3. 상표적 사용 여부	101
4.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2
III. NFT 발행·거래 과정에서의 디자인권 쟁점	104
1. 문제제기	104
2. 디자인권의 효력 및 침해	104

3.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104
IV. NFT 발행 ·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경쟁행위	107
1. 문제제기	107
2.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107
3. 저명상표 희석행위	112
4. 사이버스쿼팅	115
5.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119
6. 성과도용행위	122
V. NFT 발행 ·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125
1. 문제제기	125
2. 저작재산권 침해	125
3. 저작인격권 침해	126
4. 위작을 NFT 로 발행하는 경우	128
VI. NFT 플랫폼의 OSP 책임	129
1. NFT 콘텐츠의 저장장소	129
2. NFT 플랫폼제공자의 법적 책임	130
VII. 현행법 적용의 한계	134
제 6 장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NFT 활용방안	137
I. NFT 발행 · 거래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해소방안	137
1. 현황 및 필요성	137
2. 해소방안	139
II. 지식재산 출원 · 등록 시스템에서의 NFT 활용방안	142
1. 현황 및 필요성	142
2. 활용방안	143
III. 우선권 증명 절차에서의 NFT 활용방안	146
1. 현황 및 필요성	146

2. 활용방안	147
IV.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NFT 활용방안	151
1. 현황 및 필요성	151
2. 활용방안	152
V.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NFT 활용방안	154
1. 현황 및 필요성	154
2. 활용방안	154
제 7 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1

〈표 차례〉

표 1 산업 유형별 NFT 분류	12
표 2 NFT 관련 비즈니스 유형	24
표 3 DAS 서비스 흐름도 및 이용절차	148
표 4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있어서 블록체인 활용 프로세스 및 유용성	149

〈그림 차례〉

그림 1 NFT 거래액(최근 3년)	1
그림 2 NFT의 역사	5
그림 3 NFT 시스템 모델	6
그림 4 NFT(ERC-721)의 구조	7
그림 5 ERC-20에서 준수해야 하는 6개의 규칙과 2개의 이벤트	9
그림 6 ERC-721에서 사용가능한 주요 함수의 내용	10
그림 7 NFT 특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구조	11
그림 8 NFT 이용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라이선스 서비스	14
그림 9 이세돌 '신의 한 수' NFT	26
그림 10 Klip Drops	27
그림 11 아티프로젝트의 예술품 이력관리 및 위변조 방지 서비스	28
그림 12 아티프로젝트의 NFT 마켓플레이스 구조	29
그림 13 탐탐의 거래구조도	31
그림 14 Royalty Bank의 가상박물관 구조도	32
그림 15 Algorand's Instant Consensus Protocol	35
그림 16 KENDRIX 개념도	37
그림 17 디지털 콘텐츠 생성	39

그림 18 디지털 콘텐츠 유통	39
그림 19 게임과 NFT 기술	40
그림 20 Enjin Coin 생태계 개요	42
그림 21 NFT 담보 대출	45
그림 22 넥소의 NFT 담보 대출	46
그림 23 나이키의 크립토킵스 특허	52
그림 24 Arianee 와 IBM 의 디지털 패스포트 구조도	56
그림 25 레비추 운영방식	56
그림 26 Propy Transaction Platform v.1 (Propy Whitepaper)	57
그림 27 Propy Transaction Platform v.2 (Propy Whitepaper)	58
그림 28 AqarChain 의 실물 부동산의 NFT 화 및 거래 구조도	58
그림 29 LIFULL 의 부동산 NFT 거래 프로세스	59
그림 30 도요타의 중고차 NFT 거래 프로세스	60
그림 31 Gaudiy 의 '데이터 소유 전자책'	62
그림 32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NFT 티켓 발급 과정	63
그림 33 애니파이브의 '싱켓'	67
그림 34 세종텔레콤의 교육 콘텐츠 유통플랫폼	68
그림 35 똥똥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	72
그림 36 로스차일드가 제작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	79
그림 37 스탁엑스에서 거래되는 나이키 제품의 '볼트 NFT'	82
그림 38 타란티노의 펄프픽션 NFT	85
그림 39 말리야가 발행한 NFT 컬렉션	92
그림 40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 NFT	92
그림 41 두 아이와 두 엄마, 황소, 무제	93
그림 42 오픈씨에 기재된 제이릴라 관련 NFT	94
그림 43 페이크 민팅의 대상이 되었던 미스터 미상의 #07. Subway station	95
그림 44 보스뷰티즈 NFT 컬렉션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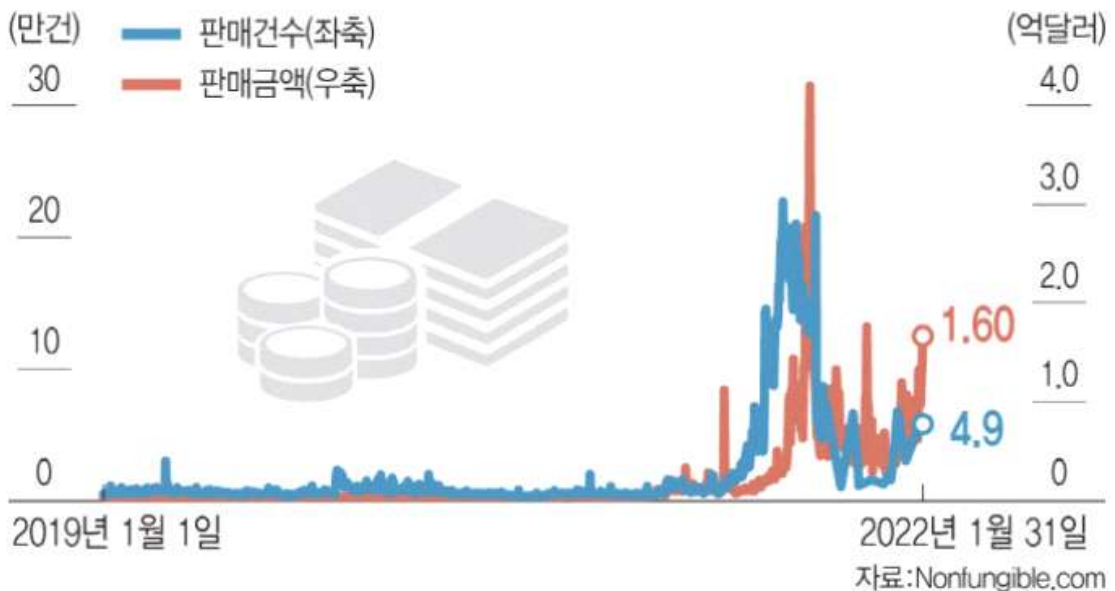
그림 45 BAYC #2162	98
그림 46 NFT Metadata	139
그림 47 ERC-998 토큰	141
그림 48 엔젤리그의 비상장주식조합 가입 증명카드 예시	147
그림 49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선권 증명 서류 교환 예시	150
그림 50 마이크로 텍스처 방식의 실물자산적용 시나리오	155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지위에 관한 규범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NFT 분석 사이트인 논펀지블닷컴에 따르면, 2021년 세계 NFT 거래액은 전년 약 8,200만달러에서 215배 성장한 176억달러(약 21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NFT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은 총 54억달러(6조 6,000억원)로, 470개 이상의 가상화폐 지갑이 NFT 투자로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플’이란 활동명을 가진 마이크 윈켈만의 디지털 아트 ‘에브리데이즈: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은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6,930만달러(830억원)에 낙찰되었으며,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월간 거래금액은 지난 달 58억달러(6조9000억원)를 돌파하는¹⁾ 등 NFT는 소유권 증명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NFT를 통해 확산 중에 있다.

그림 1 NFT 거래액(최근 3년)



< 출처: 이데일리(2022) >

1) 한달 거래액이 7조원...NFT, '대체불가' 매력 뒤흔래(이데일리, 2022.2.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2228224&mediaCodeNo=257>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되고 있으며,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도 증가하는 등 NFT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저작권 외에도 NFT를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문제 및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침해 문제 외에도 NFT가 가지는 특성인 증명성, 식별성, 편리성, 분산성, 파생성 등에 기인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NFT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지식재산 원본 증명 등에 NFT 기술을 활용하거나 NFT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표시 및 침해 여부 판단, NFT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출원이력, 등록원부 등 지식재산정보 관리의 활용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NFT의 개념 및 주요국 동향, 활용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NFT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핵심쟁점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목표

본 연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NFT의 발행 및 거래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쟁점을 도출하고, 지식재산 행정의 선진화에 활용하고자 NFT를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례의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NFT의 개념 및 구조, 특성, NFT 관련 주요국의 동향, 산업 유형별 NFT 활용 사례 및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NFT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NFT는 디지털 원본에 대한 인증과 소유에 대한 증명을 가능하게 하여, 디지털 아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NFT 시장의 확산 속에서 NFT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판매자 및 소비자, 중개자, 지식재산권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NFT의 개념 및 구조, 특성, NFT 관련 주요국의 입장, 산업 유형별 NFT 활용 사례 및 분쟁 사례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NFT 관련 지식재산 쟁점 도출 및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NFT의 의의

I. NFT의 개념 및 연혁

1. NFT의 개념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로,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²⁾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NFT가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일종의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되며,³⁾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특정한 자산을 나타냄으로써 동일한 복제가 매우 용이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⁴⁾

토큰이라는 용어로 인해 대체 가능 토큰인 Fungible Token 즉,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인식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대표적 암호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이 상호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불에 유용할 수 있어 대체가 가능하지만, NFT는 각 NFT에 고유한 일련번호 또는 복제할 수 없는 “지문(해시)”이 포함⁵⁾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디지털 원본을 증명하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NFT의 특성상 작품의 고유성이 중요시되는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⁶⁾ 그 활용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음악,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NFT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술적 정의와는 별개로 개념적 정의는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⁷⁾ NFT가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성을 표시하는 고유 식별자, 파일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로 이뤄져 있고, 파일의 속성에는 작품명, 작품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미디어 링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FT의 개념을 논할 때는 디지털 콘텐츠와 소유권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2) 성소라·롤프 회퍼·스콧 맥러플린, NFT 레볼루션, 더 퀘스트, 2021, 27쪽 참조.

3) 성소라·롤프 회퍼·스콧 맥러플린, 상계서, 27쪽 참조.

4) 최재식의3,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IP Focus 제2021-2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12.30., 2쪽.

5) 해시는 특정 디지털 파일에서 생성된 암호화 키이기 때문에 해시는 하나의 특정 콘텐츠 사본과만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김현경, 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8.11., 3쪽.

6) Cointelegrap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NFT 총 판매량에서 수집품과 미술작품이 91%를 차지

7) 성소라·롤프 회퍼·스콧 맥러플린, 전계서, 29쪽 참조.

2. NFT의 연혁

NFT 개념은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12년 Yoni Assia의 'Bitcoin 2.X(aka Colored Bitcoin) Initial specs'이라는 글에서, 실물자산과 연결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는 토큰인 컬러드코인(Colored Coin)의 개념 및 아이디어가 소개된 바 있다. Non Fungi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컬러드코인은 최초의 NFT라고 볼 수 있다.⁸⁾

이후 NFT는 2015년 10월 이더리움 블록체인 영역에서 '이더리아(Etheria)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동년 11월 이더리움 개발자회의 '데브콘(Devcon)'에서 공개되었다.

NFT를 활용한 시장이 태동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6월, 미국 회사 라바랩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캐릭터 판매 플랫폼인 크립토펙크(Cryptopunk)⁹⁾를 출시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NFT 시장 형성과 NFT 표준을 완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2018년 6월 21일 NFT가 사용하는 ERC¹⁰⁾-721 표준안이 최종 채택되고, 게임 아이템, 실물 자산, 예술품 등에서 디지털 소유권 보장 및 비가역적(변경할 수 없는 속성) 거래증명 등의 특성에 기반하여 NFT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ERC-20과 ERC-721 장점을 혼합하고자 하는 ERC-1155이 개발되어 제시되었다. ERC-1155는 이더리움 토큰 발행 표준인 ERC-20과 ERC-721의 대표적인 특징인 대체 가능성(fungible)과 대체 불가능성(non-fungible)을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에 결합한 것으로, 이더리움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 '가스(GAS)'를 ERC-20 대비 60%로 줄였으며,¹¹⁾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용해 한 명 이상의 수신자에게 두 개 이상의 토큰을 보낼 수 있는 멀티 전송(Multi-transfers)을 가능하게 하는 등 네트워크 병목현상 개선 및 효율성을 향상시켰다.¹²⁾

8) 노경탁, NFT, 메가트렌드가 될 것인가, 유진투자증권, 2021.10.5., 18쪽.

9) 크립토펙크는 서로 다른 외모, 성격, 의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희귀할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크립토펙크 시리즈는 가로 24픽셀, 세로 24픽셀로 이루어진 얼굴 이미지 아바타 총 10,0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 9,000여 개는 무료로 배포되었는데, 2021년 6월 소더비 경매에 나온 크립토펙크 '코비드 에어리언'은 1천 170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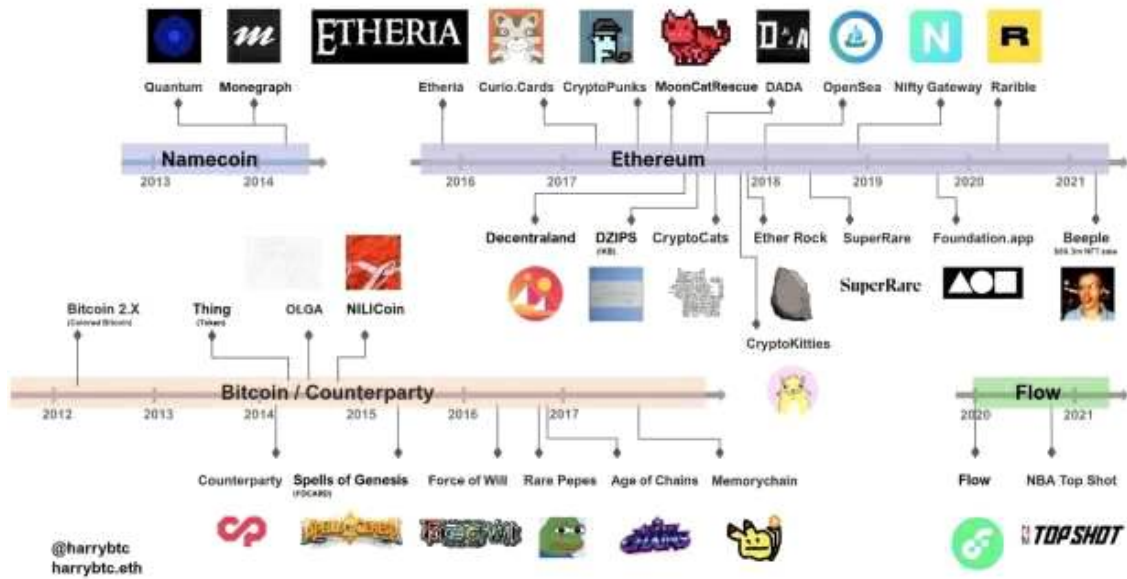
10)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로,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평을 받기 위한 문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여 채택하면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으로 동작하고 있음

11) 엔진, 새 이더리움 표준코드 'ERC-1155' 제시, (한국경제, 2018.6.25.),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806250618g>

12) 민경식의2,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10., 15쪽.

그림 2 NFT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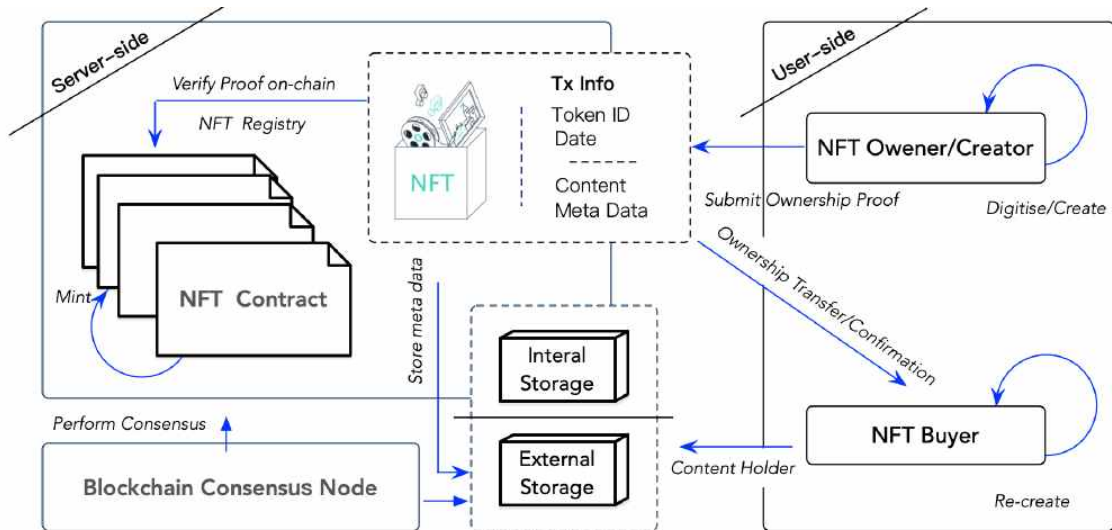
< 출처: 유진투자증권(2021) >

II. NFT의 구조 및 특성

1. NFT의 구조

NFT 시스템은 P2P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로서 참여자 누구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한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토큰의 기능을 정의하고 발행한다. NFT 시스템의 참여자는 창작자와 구매자로 구성된다. 창작자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재화를 NFT 시스템을 통해서 NFT로 발행(minting)할 수 있다. NFT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새로운 트랜잭션을 전송한다.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서 확인(confirm)된 후, 새로운 블록에 NFT의 메타데이터와 소유자 정보가 추가된다. 구매자가 NFT를 구입한 경우, 작품의 소유자, 구매가격, 소유권 변경, 인수가격 등의 메타데이터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구매자는 NFT 미술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나 창작자의 실제 그림, 원본 파일은 받을 수 없다. NFT 시스템은 디지털화, 저장, 서명, 발행, 확인 등 기능별로 최소한의 프로토콜로 정의된다.¹³⁾

그림 3 NFT 시스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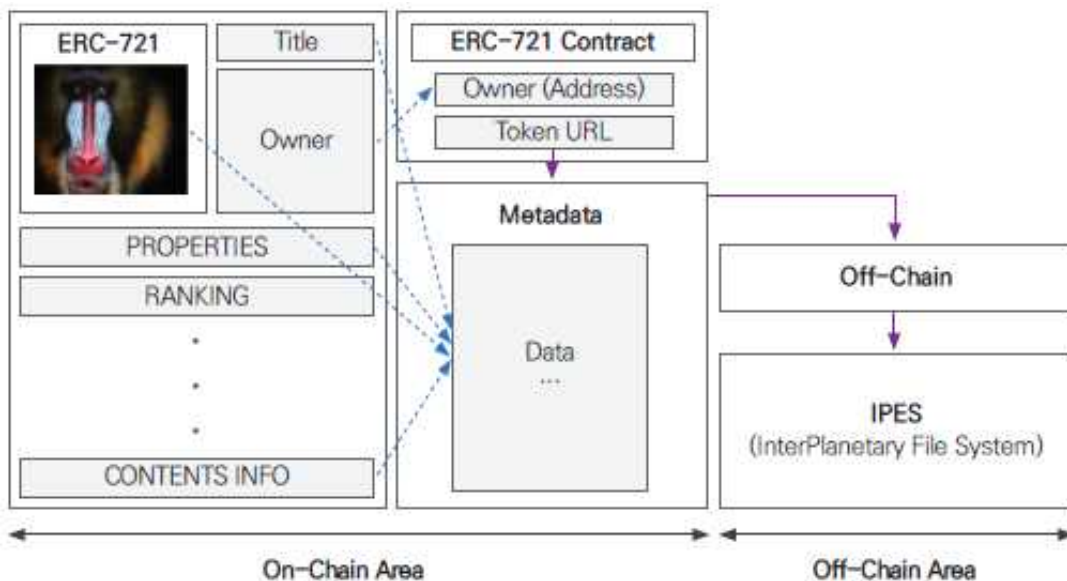
< 출처: Qin Wang · Rujia Li · Qi Wang · Shiping Chens(2021)¹⁴⁾ >

13) 이중엽 · 이강효, 소유의 귀환, NFT 기술과 서비스 동향, 주간기술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29., 15-16쪽.

14) Qin Wang · Rujia Li · Qi Wang · Shiping Chen, Non-Fungible Token (NFT): Overview, Evalu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21,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1656444_Non-Fungible-Token_NFT_Overview_Evaluation_Opportunities_and_Challenges

NFT가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실제 디지털 자산(이미지 등)까지 토큰의 구성요소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큰에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거래 내역 관련 정보만을 담고, 메타데이터와 실제 디지털 자산은 연결 정보만을 담으며,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와 실제 콘텐츠를 온체인(on-chain)에 저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 대용량 데이터를 올릴 경우 블록체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수수료 비용이 높기 때문에 NFT 토큰만 블록체인 온체인(on-chain)에 저장한다.

그림 4 NFT(ERC-721)의 구조



< 출처: HITPE의 IT Note >

NFT 토큰만 블록체인 온체인에 저장하고 소유권 대상인 디지털 자산¹⁵⁾과 메타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할 때 이를 중앙화된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위·변조 등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등 현실세계에서의 실물 자산이 도난·훼손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과 메타데이터가 위·변조되거나 분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NFT 토큰의

15) 현행법상 NFT에 적용되는 법적 환경은 소유권에 기인한 처분권능의 이전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에 가까우며 따라서 지식재산권자(NFT 판매자)가 복제본의 이용자(NFT 구매자)에 대하여 해당 복제본의 사용 및 처분과 관련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NFT가 '사적 재산'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해당 NFT가 연계된 콘텐츠가 거래되는 경우 일단 판매된 NFT에 대하여 판매자, 즉 콘텐츠 보유자가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해당 NFT와 연계된 콘텐츠의 가치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결국 구매자가 유체물과 유사한 소유권을 가지게 됨을 전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NFT 콘텐츠에서 완전한 권리양도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대부분 '라이선스' 정도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로열티에 대한 권리'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다수다, NFT, 그 소유권에 대하여(이영한, 2022.3.10.),

<https://www.dentonslee.com/ko/insights/articles/2022/march/10/nft-on-the-ownership-of-nfts>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2020년에 니프티모지(Niftymoji)라는 NFT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웹사이트 등 모든 계정을 닫아 관련 NFT의 메타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디지털 콘텐츠)이 모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 NFT 표준

NFT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경우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라는 기술적 문서에 최소한의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즉, ERC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token)의 표준을 의미한다.¹⁶⁾ 이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는 FT는 ERC-20으로, NFT는 ERC-721에 따라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

FT는 '대체 가능 토큰' 표준으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기본 표준으로, 토큰의 이름, 기호(Symbol), 소수점, 총공급량을 정의한다. 대체 가능 토큰으로 발행된 토큰은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며, 소수점 단위에 따라 통화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 토큰의 가치가 같기에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¹⁷⁾ ERC-20은 현재까지 가장 대중화된 표준으로, 개발도 용이하고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표준이다.¹⁸⁾

'대체 불가 토큰'인 NFT는 FT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포함하며, 토큰 소유자(Token Owner)를 지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다루어 서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작은 화폐단위로 통화를 나누어서 거래할 수 없다.¹⁹⁾ ERC-721은 고유성을 가지는 수집형 토큰에 사용되는 표준이며,²⁰⁾ 최근에는 ERC-20과 같은 고유성이 없는 토큰과 ERC-721처럼 고유성이 있는 토큰을 무한히 생성할 수 있는 표준인 ERC-1155가 2018년 6월 엔진코인의 CTO인 비텍 라돔스키(Witek Radomski)에 의해 개발되었다.²¹⁾

ERC-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개발자인 파비안 보글스텔러(fabian Vogelsteller)와 비탈릭 부테린(Vitalic Buterin)에 의해 2015년 11월에 제안되었으며, 토큰을 구현하기 위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사용되는 기술 표준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ERC-20은 이더리움

16) ERC-20의 정의와 기능(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1.12.14.),
<https://m.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40>

17) 이중엽·이강효, 전제서, 17쪽.

18) 해쉬넷(이더리움), <http://wiki.hash.kr/index.php/%EC%9D%B4%EB%8D%94%EB%A6%AC%EC%9B%80>

19) 이중엽·이강효, 전제서, 17쪽.

20) 해쉬넷(이더리움), <http://wiki.hash.kr/index.php/%EC%9D%B4%EB%8D%94%EB%A6%AC%EC%9B%80>

21) 해쉬넷(이더리움), <http://wiki.hash.kr/index.php/ERC-1155>

토큰에 대한 공통 규칙 목록을 정의하여 개발자가 토큰 간의 상호 작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주소 간 토큰을 전송하는 방법과 토큰 내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ERC-20 기준에 맞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을 설계한 후 토큰을 발행하면 이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지갑에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다.²²⁾

그림 5 ERC-20에서 준수해야 하는 6개의 규칙과 2개의 이벤트

```
function totalSupply( ) public view returns (uint256)
→ totalSupply( ) : 전체 토큰이 얼마큼 발행이 되었는지 봅니다.

function balanceOf(address _own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balance)
→ balanceOf( 소유자 ) : 어떤 소유자(주소)의 토큰이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function transfer(address _to,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success)
→ transfer(주소, 값) : 얼마만큼(값)의 토큰을 어디에(주소) 보냅니다.

function transferFrom(address _from, address _to,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success)
→ transferFrom(주소from, 주소to, 값) : "주소from"에서 "주소to"로 얼마만큼(값)의 토큰을 보냅니다.

function approve(address _spender,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success)
→ approve( spender, 값 ) : spender(주소)에게 얼마만큼(값)의 토큰을 계좌에서 가져가는 것을 허가합니다.

function allowance(address _owner, address _spend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remaining)
→ allowance(소유자, spender ) : spender(주소)가 소유자(주소)의 계좌에서 얼마만큼의 토큰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event Transfer(address indexed _from, address indexed _to, uint256 _value)
→ Transfer( ) 이후에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것인지 정의합니다.

event Approval(address indexed _owner, address indexed _spender, uint256 _value)
→ Approve( ) 이후에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것인지 정의합니다.
```

< 출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2021) >

ERC-721은 ERC-20 토큰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²³⁾은 비슷하지만, ERC-721 토큰에는 외부 애플리케이션 또는 계약에 대한 토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 필드가 있고, 기본 토큰 속성에 대한 정의 및 해당 속성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정의된 역할 필드가 있으며, 개발자가 고유 ID를 통해 토큰을 추적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²⁴⁾

22) ERC-20의 정의와 기능(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1.12.14.), <https://m.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40>

23) ERC-20 표준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DApp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토큰 컨트랙트가 꼭 수행해야 하는 기능들을 인터페이스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토큰을 전달하고, 토큰과 관련한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정의되어 있다.

24) NFT 생성: ERC-721 및 ERC-1155란 무엇입니까?(Portal Cripto, 2021.9.25.), <https://portalcripto.com.br/ko/nft-%EC%83%9D%EC%84%B1-erc-721-%EB%B0%8F-erc-1155%EB%8A%94-%EB%AC%B4%EC%97%87%EC%9E%85%EB%8B%88%EA%B9%8C%3F/>

그림 6 ERC-721에서 사용가능한 주요 함수의 내용

```
import "../utils/introspection/IERC165.sol";

interface IERC721 is IERC165 {
    event Transfer(address indexed from, address indexed to, uint256 indexed tokenId);
    event Approval(address indexed owner, address indexed approved, uint256 indexed tokenId);
    event ApprovalForAll(address indexed owner, address indexed operator, bool approved);

    function balanceOf(address own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balance); → 해당 주소가 보유하고 있는 NFT 토큰의 개수
    function ownerOf(uint256 tokenId) public view returns (address owner); → 해당 NFT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주소

    function approve(address to, uint256 tokenId) public; → 해당 주소에 NFT 토큰 전송 권한을 부여함
    function getApproved(uint256 tokenId) public view returns (address operator); → 해당 토큰의 전송 권한을 갖고 있는 주소를 알려줌
        public view returns(address, operator);

    function setApprovalForAll(address operator, bool approved) public; → NFT 토큰 소유자가 해당 주소에게 모든 NFT 토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
    function isApprovedForAll(address owner, address operator)
        public view returns (bool); → 위 권한이 있는지 참/거짓을 알려줌

    function safeTransferFrom(address from, address to, uint256 tokenId) public; → NFT 토큰 소유자로부터 해당 NFT 토큰을 다른 주소로 전송함
    function transferFrom(address from, address to, uint256 tokenId)
        pub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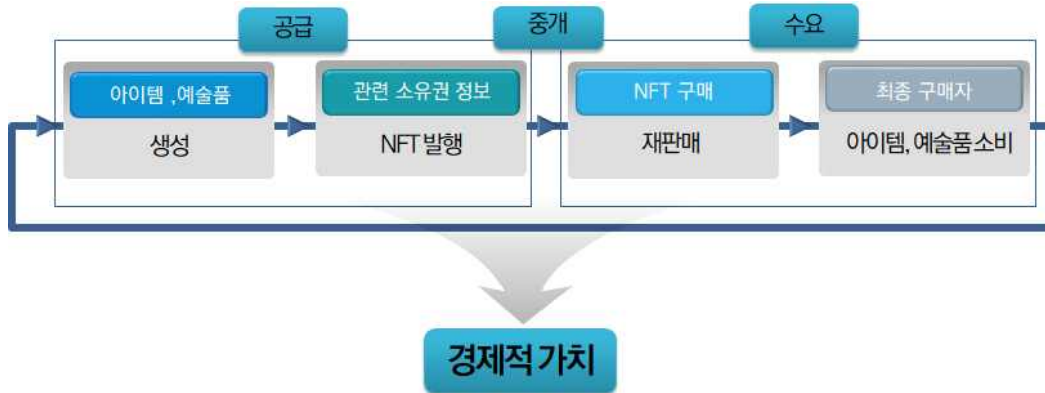
    function safeTransferFrom(
        address from,
        address to,
        uint256 tokenId,
        bytes calldata data
    )
        public;
}
```

〈 출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2022) 〉

3. NFT의 특성

NFT는 ERC-721 또는 ERC-1155라는 이더리움 표준을 따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진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된다. 이를 통해, 위조의 어려움을 통한 희소성 유지, 거래내역 추적의 용이성, 부분 소유권 가능, 거래 용이성 등을 보장한다.

그림 7 NFT 특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구조



〈 출처: NFT 기술과 비즈니스(최재식, 2022) 〉

NFT는 ERC-721이라는 이더리움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NFT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더리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체 가능한 토큰에 대한 표준안인 ERC-20과 비교해보면, ERC-20은 토큰 ID와 소유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 ERC-721 코드는 토큰 ID와 소유자 정보를 사용한다. 토큰 발행시 ERC-20은 토큰의 양(amount)을 표시하는 반면, ERC-721은 토큰 ID를 표시한다. 이는 대체 가능한 토큰은 모든 토큰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특정 토큰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큰 양만 표시하기 때문이다. 토큰 전송(Transfer) 시에도 ERC-20은 토큰의 양(amount)을 표시하는 반면, ERC-721은 토큰 ID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해당 토큰 ID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작업을 거친다. 즉, NFT는 토큰의 고유한 값인 토큰 ID와 이에 대한 거래 내역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정 토큰에 대한 소유권, 거래내역 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²⁵⁾

25) 최재식의3, 전계서, 5쪽.

III. NFT의 유형

1. 활용 유형별 분류

국내외에서 NFT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 유형에 따라, 예술(미술, 음악), 게임, 메타버스(가상부동산), 금융(디파이, 대출, 증권), 컬렉터블(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실물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산업 유형별 NFT 분류

구분	분류 기준
NFT 레블루션 (성소라, 룰프 회퍼, 스콧 맥러플린)	① 미술
	② 음악
	③ 컬렉터블
	④ 게임 아이템
	⑤ 디지털 부동산
Nonfungible.com	① Collectible
	② Art
	③ Sports
	④ Metaverse
	⑤ Game
	⑥ Utility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센터장)	① 수집형
	② 예술형
	③ 메타버스형
	④ 게임형
	⑤ 디파이형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경식 팀장·김관영 선임연구원·박진상 주임연구원)	① 게임
	② 메타버스
	③ 예술
	④ 실물자산
	⑤ 금융시스템 및 서비스

구분	분류 기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① 게임
	② 메타버스
	③ 예술
	④ 엔터테인먼트
	⑤ 금융시스템 및 서비스
	⑥ 실물자산
NFT 거래 사례로 본 플랫폼 확장 가능성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정 중앙대 경영학박사)	① 디지털 아트
	② 게임
	③ 음악
	④ 패션
	⑤ 대출
NFT 금융 서비스의 대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석영 연구위원)	① 게임NFT
	② NFT아트
	③ 증권형NFT
	④ 결제수단NFT
	⑤ 실물형NFT

미술,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의 NFT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된 미술품 및 음원 뿐만 아니라 실물 형태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NFT를 발행 및 판매하고, 보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술품, 골동품 등에 대한 경매와 판매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한 가운데, 디지털 옥션 등이 있으나 온라인 지불에 따른 거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를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의 무결성, 부인방지와 함께 토큰의 안전한 거래가 확보되는 NFT를 접목하였다.²⁶⁾

게임에서의 NFT는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을 NFT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소유 하에서 자유로운 구매 및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존 게임은 대체로 중앙 집중화된 활동으로 모든 데이터, 자산 및 게임 내 통화는 일반적으로 게임이 시작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아이템의 모든 소유권은 개발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²⁷⁾

메타버스에서의 NFT는 메타버스에서 가상 디지털 자산거래와 가상 환경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²⁸⁾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용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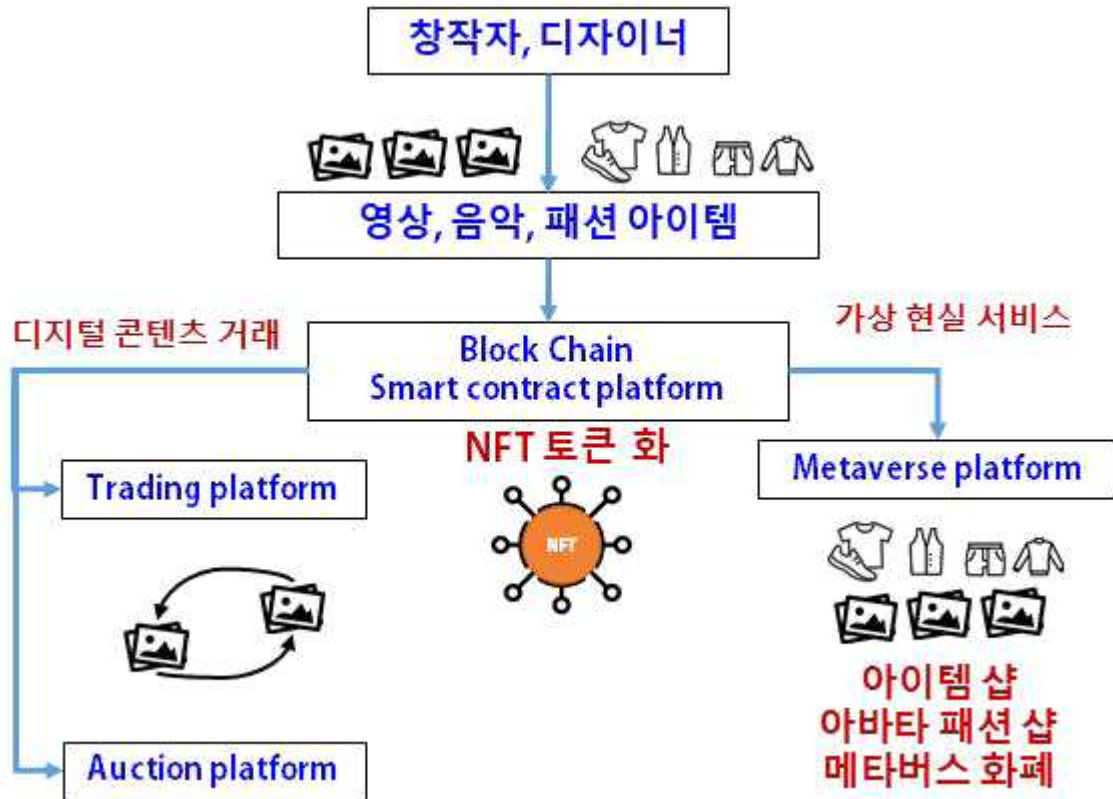
26) 민경식외2, 전계서, 25쪽.

27) 김민정, NFT 거래 사례로 본 플랫폼 확장 가능성, KISA REPORT volume 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8쪽.

28) 김시호,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KISA REPORT volume 07, 한국인터넷

자신만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거래를 실현한다. 이 때 NFT는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과 구매(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림 8 NFT 이용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라이선스 서비스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

금융시스템에 NFT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시스템인 DeFi²⁹⁾와의 결합도 시도되고 있다. DeFi와 NFT가 결합한 NFTfi 또는 NFT 담보대출이 출시되고 있다. NFTfi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P2P 방식의 담보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FT 담보 대출은 NFT 자체를 자산으로 평가하여 자산 담보대출 서비스로 대출은 실물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형태로 지급되는 대출 서비스이다.³⁰⁾

컬렉터블(엔터테인먼트, 스포츠)에서의 NFT는 한정된 디지털 자산 발행량을 설정하고 token ID 등을 통해 한정된 자산에 해당함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 가치를 부

진흥원, 2021, 8쪽.

29) DeFi(Decentralized Finance)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로 '탈중앙화 된 금융'을 뜻함

30) 민경식의2, 전제서, 28쪽.

여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소유욕을 유발할 수 있다.³¹⁾

실물자산에서의 NFT는 부동산, 한정판 굿즈, 명품 등 현실 세계에서 희소성이 높은 자산을 NFT화 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고, 병행수입 및 중고 거래 등에서 상품의 진위여부 판별을 가능하게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소재 유형별 분류

NFT는 주로 활용 관점에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NFT의 대상이 되는 소재의 유형에 따라 이미지, 동영상, 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오디오, 3D모델, 텍스트 등 소재 유형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미지 관련, 크립토펙크나 비플의 작품이 그리하듯 상당수의 NFT는 한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NFT는 이미지의 크기나 해상도에 제약이 없지만, 일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NFT를 민팅할 때 파일 크기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미지의 형태에는 래스터 이미지(jpg, png 등)와 벡터 그래픽(svg 등)이 있다.³²⁾

동영상 관련, NBA의 경기 장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담은 'NBA 톱샷 NFT'와 같이 동영상도 포함된 NFT가 있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저절로 반복 재생되진 않지만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에서는 동영상이 자동적으로 반복 재생되게 해놓았으며, 일부 제작자들은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동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을 동영상의 가장 첫 프레임과 이어지게 만들기도 한다.³³⁾

GIF 관련, 짧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NFT를 만들 경우, GIF는 매우 적합한 포맷 중 하나이다. GIF는 짧고 단순하며 자동으로 반복되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파일 포맷으로, 색상의 종류가 최대 256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적합하다.³⁴⁾

오디오 관련, 킹스 오브 레온은 가수 중 최초로 NFT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인디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음원 판매 및 팬을 확보하기 위해 오디오 형태의 NFT를 발매하고 있다. 오디오 NFT를 만들 때는 mp3 파일보다는 음질이 더 좋은 wav 오디오 파일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³⁵⁾

3D모델 관련, 베브는 3D모델 NFT에 특화된 NFT 마켓플레이스로, 유명 브랜드의

31) 최재식외3, 전계서, 7쪽.

32)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NFT 사용설명서, 여의도책방, 2021. 37-38쪽 참조,

33)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상계서. 38쪽 참조,

34)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상계서. 40-42쪽 참조,

35)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상계서. 42쪽 참조,

3D 이미지 NFT를 판매하고 있다. 3D모델은 사물이나 디자인을 3차원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2차원인 평면에서는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회전시키거나 확대, 축소하여 감상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헤드셋을 이용하여 감상하거나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실물로 출력할 수 있다.³⁶⁾

텍스트 관련, 시나 단편 소설, 책 전체와 같은 텍스트(글)도 NFT가 될 수 있으며, 흔한 편은 아니지만 시장이 존재한다.³⁷⁾

36)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상계서. 42-43쪽 참조,

37)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상계서. 43쪽 참조,

제3장 국가별 NFT 동향

I. 해외동향

NFT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NFT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의 폐해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NFT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NFT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NFT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의 방향성 및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국내외 금융당국은 컬렉터블과 같은 일반적인 NFT를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FATF는 NFT가 상호교환되기보다는 유일하고 결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수집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규제되어야 하며, 실제 기능과 개별 국가 상황에 따라 맞춤형 규제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³⁸⁾

1. 미국

미국은 NFT를 규제하는 특정 법안이 없으며, 미국법상 NFT의 분류도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향후 NFT의 특성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들과 같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

2017년 7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에 의해 공급되는 토큰들(DAO Tokens)은 투자계약이므로, 1933년 미국증권법(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하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CEA) 상의 상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의 재정범죄 단속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8) FATF, 2021,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은행업무비밀법(Banking Secrecy Act)에 따른 자금세탁방지법령의 적용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³⁹⁾ 예컨대, 미국 증권법은 기념품과 수집품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으나,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NFT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여 증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지난 2022년 6월 7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동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제 관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탈중앙화적 성격으로 인하여 상품에 해당하고 CFTC가 관할할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9일, 미국 법사위원회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과 톰 킬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지식재산권소위원회 소속)은 특허상표청(USPTO)과 저작권청에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리양도, 라이선스 권한, 침해 유형, 보호 대상 등 NFT 관련 지식재산 관련 현재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NFT 활용방안, NFT 시장에서의 현행 법제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공동 연구 수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2022년 7월 9일까지 연구 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면 2023년 6월 9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고.⁴¹⁾ USPTO와 저작권청은 공동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 착수하였다.⁴²⁾ 법률전문매체인 JDSUPRA는 최초판매원칙 및 공정사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notice-and-takedown)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⁴³⁾

39) 성덕근, NFT의 현황과 쟁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2-01호, 한국법학원 2022.4.29., 22-23쪽.

40) 미국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법률신문, 2022..7.2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488>

41) Two US Senators Solicit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NFTs(Skadden, 2022.6.21.),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22/06/two-us-senators-solicit-study-of-intellectual-property-rights>

42) US trademark and copyright offices to study IP impact of NFTs(Cointelegraph, 2022.7.12.), <https://cointelegraph.com/news/u-s-trademark-and-copyright-offices-to-study-ip-impact-of-nfts>

43) Senators Ask USPTO and US Copyright Office to Conduct NFT Study, with a Focus on IP Issues(JDSUPRA, 2022.7.11.), <https://www.jdsupra.com/legalnews/senators-ask-uspto-and-us-copyright-2608333/>

2. 유럽

유럽의 경우 NFT는 아직까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은행당국은 가상 환경에서 통용되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암호화폐를 디지털화폐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다루고자 하지만, EU의 가상화폐 규제는 그동안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3월 14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한 범유럽 차원의 단일 가상화폐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 Regulation)가 시행될 경우, NFT가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 MiCA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전략(Digital Finance Strategy)’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개, 인증 및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안이다.⁴⁴⁾

MiCA의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 NFT가 넓은 의미에서 규제 대상 암호화 자산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MiCA 초안에는 NFT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NFT에 대한 내용들이 추후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부터 유럽의 모든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단일 규제체계 하에 놓이게 될 것으로 평가⁴⁶⁾되고 있다.

3. 독일

독일 정부가 시행한 제5차 AML 지침(AMLD5)에서는 암호자산을 독일 은행법(KWG)의 의미 내에서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WG에서 암호화폐 자산은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고 화폐나 화폐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지만 자연인이나 법인이 교환이나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44) EU의 MiCA(가상자산규제안) 의결을 통해 살펴본 유럽 가상화폐 규제 정책의 현주소(KBSA, 2022.4.8.), <https://www.kbsa.kr/notice/nft-sosig/euyi-mica-gasangjasangyujean-yigyeoleul-tonghae-salpyeobon-yureob-gasanghwapye-gyuje-jeongcaegyihyeonjuso>

45) 스트라베이스, NFT관련 시장 및 정책동향 분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 73쪽.

46) 성덕근, 전제서, 22-23쪽.

양도될 수 있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NFT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NFT는 KWG 하의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가능하다.⁴⁷⁾

4. 중국

중국 정부는 NFT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NFT를 가상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당국은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특징인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어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며 가상화폐 채굴에서부터 거래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엄단하겠다고 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NFT와 같은 기술 발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중국과학기술부 산하 중국기술시장협회(China Technology Market Association)의 주도로 중국 NFT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⁴⁸⁾

5. 일본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결제기능’이 NFT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상자산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일본 사회 내에서 NFT가 도박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블록체인콘텐츠협회,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 등이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⁴⁹⁾

일본의 최근 NFT 정책의 방향성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는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산하 디지털 사회추진본부 NFT정책검토프로젝트팀이 발표한 ‘NFT 화이트페이퍼(안) ~ Web 3.0 시대를 대비한 일본의 NFT 전략’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의 핵심은 현행의 암호자산(가상화폐)을 둘러싼 세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장전략으로서 NFT의 규제의 틀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국가전략의 책정 및 추진체계 구축, NFT 비즈니스 발전에 필요한 시책,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NFT 비즈니스를 지탱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시책, 사회적 법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 등 6개 주제에 대한 제안

47) 최재식 외3, 전제서, 16-17쪽.

48) 스트라베이스, 전제보고서, 77쪽.

49) 성덕근, 전제서, 21쪽.

을 담고 있다.

6. 싱가포르

현재 NFT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규제당국이 NFT 특성에 대해 조사 중에 있어 향후 NFT의 특정 특성이 현존하는 규제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디지털 토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증권형 토큰,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⁵⁰⁾으로 구분되며 만일 NFT가 증권의 특성을 띠거나 기업이나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혹은 이익 소유 지분을 지급받는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될 시 이는 현존하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규제에는 유가증권 거래를 위한 라이선스 조건 준수 등이 있다. 만약 NFT가 지불형 토큰으로 간주되는 경우 2019년 지불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 PSA)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디지털 지불 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범위는 DPT 거래나 교환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2020년 1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NFT가 결제수단의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활용되는지에 따라 이에 해당할 경우 DPT로 보고, DPT에 해당하는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의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NFT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50) 제품,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만 가진 토큰

II. 국내동향

NFT 분석 업체 논펀지블닷컴에 따르면 2021년 NFT 거래액은 약 17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1조 8,000억 원)로, 전년 대비 2만 1,000% 이상 성장하였다.⁵¹⁾ NFT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NFT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NFT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등의 이슈가 등장하면서, NFT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되고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높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NFT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⁵²⁾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설정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NFT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2022.4.28.)' 및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2022.6.)'를 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연구원은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2021.12.)'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발간되었다.⁵³⁾ 동 가이드라인에서 NFT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⁵⁴⁾,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에 있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51) 삼성·현대차도 눈독 들이는 'NFT 시장'..."암호화폐 시장 아우를듯.(뉴스핌, 2022.4.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19000795>

52) 스트라베이스, 전계보고서, 48쪽.

53)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4.28.

54) 종이 매체, 예탁계좌부 기재,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 분산장부상 토큰(token)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NFT 100개로 쪼개 팔았을 경우, 지분만큼 실물을 나눠주면 해당 NFT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나, NFT를 발행한 원 소유주가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처분해 처분 대가를 NFT 보유자에게 지분대로 배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NFT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간되었다.⁵⁵⁾ 안내서는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구매자·권리자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NFT에 대한 관련 법률 및 법원 판결이 없다는 점에서 동 안내서가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NFT는 발행 형태도 다양하고 발행 형태에 따라 법적인 성격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NFT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정부와 법조계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규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⁵⁶⁾

결국, NFT에 대한 논의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지만, NFT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률적 판단이 사실상 쉽지 않다.

55) 박경신·오진해·임형주·전재림,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2022.6.

56) [단독] 금융위, NFT 정의·규제 결론 못 내려...추가 연구 예상(디지털투데이, 2022.2.2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973>

제4장 NFT 활용 및 분쟁사례

I. NFT 유형별 활용사례

국내외 문헌에 의하면 NFT를 활용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 예술, 게임, 메타버스, 금융, 컬렉터블, 실물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NFT를 활용하고 있는 유형을 기존의 국내외 문헌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 예술, 게임, 메타버스, 금융, 컬렉터블, 실물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 산업계에서 1회성 이벤트 성격으로 NFT를 발행 및 배포하는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마케팅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2 NFT 관련 비즈니스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예술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술 및 음악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
게임	게임에 NFT, 탈중앙화금융(DeFi) 기술이 적용되면서 Play to Earn(P2E)이라는 새로운 장르 발생, 게임 아이템을 NFT 형태로 구매할 경우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이용자가 직접 소유 가능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에 관한 각종 정보 공유 및 NFT 거래, NFT 관련 창작자들의 공연, 작품발표회 등 실현. 이외에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 자체를 NFT로 발행 및 판매, 거래
금융	별도의 금융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탈중앙화 방식(DeFi)의 Peer to Peer(P2P) 거래(NFT 담보 대출, NFT 자산관리·평가 서비스)
컬렉터블	스포츠카드, 연예인 굿즈 등 기존 컬렉터블 시장의 주요한 문제인 인증, 사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NFT 기술 활용
실물자산	NFT 기술 특유의 고유 ID 부여 및 추적 식별기능을 활용하여, 실물자산(물품)을 연계한 NFT의 발행을 통해, 판매 또는 중고거래 등이 가능
마케팅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NFT를 활용해, 자사의 상품(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활용

1. 예술

1) 개요

NFT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술 및 음악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NFT로 발행된 디지털 예술 시장은 창작자가 직접 거래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됨에 따라, 각각의 디지털 예술품의 가격과 소유권, 소유권의 이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미술 작품과 관련하여, 크립토 아트⁵⁷⁾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실물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NFT를 통해 디지털 원본에 대한 인증과 소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지다 보니, 미술 작품의 거래 및 경매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활용 범위가 디지털 전시회 및 미술 작품에 대한 조각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음악 작품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로열티 관점에서 NFT는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음악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 CD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앨범과 곡을 판매하던 창작자들은 음악 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으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뀌면서 수익이 감소하였다. 새로운 플레이어인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예컨대, 라디오 매출의 50%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창출한 매출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비플의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202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비플(Beeples)’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이 5,000일 동안의 창작품을 하나의 NFT로 합성한 디지털 아트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약 6,934만 달러(한화 약 785억 원)에 낙찰되었다.⁵⁸⁾ 비플은 사이버펑크(첨단 기술시대 저항 문화)를 테마로 시네마 4D와 같은 모델링, 비주얼(시각효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상세계의 이미지를 주로 작업하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5,000개 이상의 디지털 작품을 창작하여 인

57) 크립토 아트(crypto art)는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태생의 희귀한 디지털 아트로, 특유의 심미성을 갖췄으며 주로 인터넷 문화를 정의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표현(예. 레어페페 밈 트레이딩 카드, 크립토펙 컬렉터블, 비플의 사회 풍자적 3D 그래픽 NFT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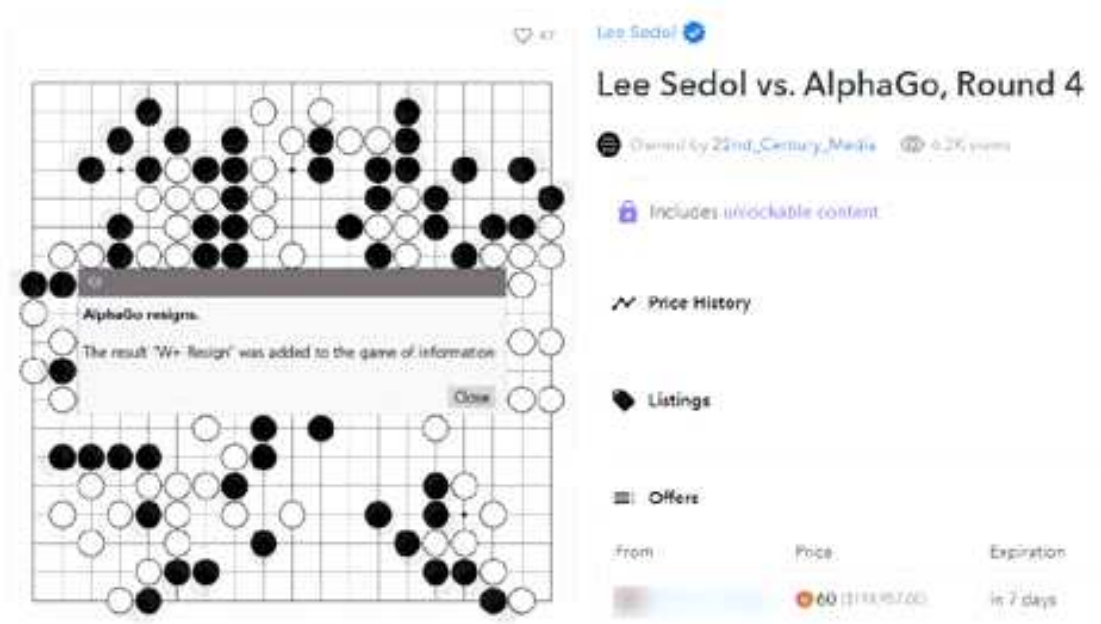
58) 성덕근, 전제서, 12쪽.

터넷에 업로드하였고, 이를 하나로 합성한 작품이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다.⁵⁹⁾

3) 이세돌의 ‘신의 한 수’

이세돌과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의 제4국을 NFT로 발행되었으며, 2억 5,00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당시 바둑판 위에 흑돌과 백돌이 차례로 놓이는 모습과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백 78수가 표시된 기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이세돌의 사진, 서명 등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9 이세돌 ‘신의 한 수’ NFT



< 출처: 동아일보(2021)⁶⁰⁾ >

59) 비플은 어떻게 최고의 NFT 암호화 아티스트가 됐나?(중앙일보, 2021.3.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4810#home>

60) 이세돌 ‘신의 한 수’ NFT 2억5000만원에 낙찰(동아일보, 2021.5.19.),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210519/107005299/1>

4) 뱅크시의 ‘Original Banksy Morons’

얼굴 없는 아티스트로 유명한 뱅크시(Banksy)는 2020년대에 가장 인기있는 예술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2006년 작품인 ‘Morons(멍청이들)’를 인젝티브 프로토콜(Injective Protocol)이라는 기업이 10만 달러에 구입한 후 NFT로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 기업은 “NFT와 실물이 둘 다 존재한다면 작품의 가치는 실물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실제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NFT만이 원본으로 남게 되었는데, 해당 NFT 작품은 ‘Original Banksy Morons’란 이름으로 228 ETH(당시 한화 약 4억원)에 낙찰되었다.⁶¹⁾

5) 그라운드X의 ‘클립 드롭스(Klip Drops)’

그라운드X의 ‘클립 드롭스(Klip Drops)’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선발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1일 1개씩 소개되고(One Day One Drop), 경매나 한정판 에디션 방식으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작품을 큐레이션 하여 유통하는 서비스로, 유저 간에 디지털 아트를 사고팔 수 있는 ‘마켓(Market)’을 제공하며, 판매액의 일부는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크리에이터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10 Klip Drops



〈 출처: IT 조선(2021)⁶²⁾ 〉

61) 성택근, 전계서, 13쪽.

62) 카카오 그라운드X, NFT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주목(IT 조선, 2021.11.25.),

6) 후랭키 미디어재단의 ‘아티프로젝트’

후랭키(Hooranky.B) 미디어재단의 아티프로젝트(ARTi PROJECT)는 예술의 디지털화, 거래 투명화, 소유권 NFT 분산화, 예술 대중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로, 아티프로젝트의 플랫폼에서는 예술품의 생성, 구매, 유통 과정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 서버에 암호화된 해시값으로 저장하여 영구, 불변하게 위변조 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티프로젝트는 한국NFT공인인증원과 함께 예술품의 디지털화와 이를 NFT화하여 소유권을 등록하고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⁶³⁾

그림 11 아티프로젝트의 예술품 이력관리 및 위변조 방지 서비스



< 출처: 아티프로젝트 >

아티프로젝트는 누구나 예술품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인 ‘ARTi-X / Market place’를 구축하고, 누구나 소액으로 예술품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아티 플랫폼은 NFT 인증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작품의 진의여부를 심의하고 인증함으로써 NFT 마켓에 검증되지 않은 무부별한 아이템들이 등록되지 않도록 필터링 인증시스템을 활용한다. 인증된 예술작품은 소유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NFT 기술을 적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해시값을 갖는 고유토큰을 발행하고, 대체 불가능한 고유토큰이 블록체인에 등록 및 저장된다.

⁶³⁾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4/2021112402236.html
 아티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artiproject.com/kor/index.html>

그림 12 아티프로젝트의 NFT 마켓플레이스 구조



< 출처: 아티프로젝트 >

7) '아이피샵'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국내 지식재산 종합플랫폼인 '아이피샵'에서는 지식재산 투자를 통하여 획득한 소유권을 NFT로 변환하여 거래할 수 있고,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의 실물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 가치 기반의 NFT몰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 창출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피샵은 다양한 지식재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 채널로 운영되며, 각 채널에 등록된 개별 지식재산 상품은 다수의 분할된 지식재산 소유

권 형태로 거래되며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유한 조각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로도 회원들끼리 거래할 수 있고, NFT몰로 소유권을 옮겨 코인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다.⁶⁴⁾ 현재 음원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인접권 수익금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⁶⁵⁾

8) '콜렉트릭스'의 지식재산 상업화

콜렉트릭스(Colletrix)는 블록체인 NFT 기술을 지식재산권과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사업에 접목한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는 ERC-721을 사용하여 희소성이 있는 창작물 및 디자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시킨 후 수집품으로서 실제 상품과 연결해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소비자들은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을 NFT형태로 신뢰 있고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재판매를 위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⁶⁶⁾

콜렉트릭스는 지식재산 경제를 디지털화하여 원천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원천 지식재산권자는 NFT 거래 시 영구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 사망 후에도 평생동안 자신의 창작품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실제 상품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인기를 기반으로 하여 NFT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콜렉트릭스의 관계자는 토큰마다 가치가 달라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NFT를 활용하여 실제 상품들의 지식재산 사업을 비롯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지식재산과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분야에 접목하여 향후 하나의 생태계를 구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⁶⁷⁾

9) 엘에스웨어의 '탐탐'

블록체인 기업인 엘에스웨어는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 거래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인 '탐탐(TAMTAM)'을 출시하였다. 탐탐은 무단복제로부터 창작자 권익 보호, 저작권(라

64) [인터뷰] “음원·웹툰·NFT까지...건강한 IP투자로 산업적 선순환 이끌 것”(아주경제 2022.3.31.), <https://www.ajunews.com/view/20220331135525811>

65) 아이피샵 홈페이지, <https://ipxhop.com/?pn=guide>

66) 콜렉트릭스, 지적재산권(IP) 및 머천다이징 분야에 NFT 기술 적용 프로젝트 공식 발표(로이슈, 2019.5.10.),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1905100920412690204ead0791_12

67) NFT 기술을 지적재산권(IP)과 머천다이징 사업에 접목한 '콜렉트릭스' 한국 첫 선(전자신문 2019.5.10.), <https://www.etnews.com/20190510000084>

이선스, 이용 허락권) 위반 분쟁 방지, 작가를 대상으로 한 NFT 등록·전시, 등록된 작품 진위 판별 등 기능을 지원한다.

작가 NFT와 해당 작품 비독점적 이용허락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가 작품 소유권과 이용 목적에 필요한 저작권을 맞춤 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다른 NFT 플랫폼과 달리 작품 소유권과 저작권 권리를 구분해 거래가 가능하며, NFT 창작자 권한인 소유권과 저작권을 분리해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림 13 탐탐의 거래구조도



〈 출처: 전자신문(2022)⁶⁸⁾ 〉

10) 오스트리아 린츠의 NFT 전시회

오스트리아 린츠의 Francisco Carolinum Linz에서는 2021년 6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계 최초의 NFT 전시회인 ‘Proof of Art’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Francisco Carolinum Linz는 이더리움 기반 Cryptovoxels에 박물관을 구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⁹⁾

68) 엘에스웨어 NFT 마켓플레이스 탐탐, 아티스트 요람된다(전자신문, 2022), <https://www.etnews.com/20220706000107>

69) PROOF OF ART - A brief history of NFTs(Ars Electronica, 2021),

11) Royalty Bank의 가상박물관

일본 Royalty Bank는 가상공간에 박물관을 구축하여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전시하고, 관람객은 작품 감상 및 구매를 할 수 있는 가상박물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가상공간에 전시된 작품은 NFT로 발행되어 관리되며, NFT는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에 대해서도 발행된다.

그림 14 Royalty Bank의 가상박물관 구조도



< 출처: Royalty Bank⁷⁰⁾ >

12) 러시아 국립 Hermitage 박물관의 미술전

세계에서 2번째 대형 미술관인 러시아 국립 Hermitage 박물관이 NFT를 활용한 디지털 미술전을 2021년에 개최하고, 마돈나 리타 등 5개 미술작품의 사본을 NFT 경매할 예정이다. Hermitage의 현대미술부서는 “NFT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라고 발표하였다.⁷¹⁾

<https://ars.electronica.art/newdigitaldeal/de/proof-of-art/>

70) Royalty Bank 홈페이지, <https://www.en.royaltybank.co.jp/nft>

71) Russian State Hermitage raises \$440K via Binance NFT auction(thebittimes, 2021),

<https://thebittimes.com/russian-state-hermitage-raises-440k-via-binance-nft-auction-tbt2461.html>

13) 바라노프의 미술 작품 경매

NFT 마켓플레이스인 Mintable은 바라노프(Baranoff-Rossine)의 유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10개의 드롭(drop)과 1개의 96년된 원본 등으로 구성된 NFT 기반의 컬렉션을 판매하였다.⁷²⁾

14) 서울옥션블루의 'XXBLUE'

서울옥션블루의 관계사인 XXBLUE가 NFT 예술 작품 분야의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작품은 옥션이나 선착순 에디션으로 판매되고, 작품 구매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업비트 NFT'에서 가능하며, 람다256과 업비트(두나무)가 NFT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XXBLUE(서울옥션블루)가 NFT 콘텐츠 제공사가 되는 협력 구조이다.⁷³⁾

15) 머니투데이의 '블루커스'

머니투데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피스트트러스트와 합작해 플랫폼 내 심사 기능을 통해 일차적으로 검증된 NFT를 거래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인 블루커스를 2021년 12월에 개시하였다. 머니투데이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NFT와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발행된 크리에이터 NFT, 일반 사용자가 발행하는 NFT를 제공하며, 불법 복제, 선정적 콘텐츠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을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블루커스는 고평가 판매, 공개·비공개 경매 방식으로 NFT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16)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전용 NFT 플랫폼'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큐레이션형 NFT 거래소 니프티게이트웨이와 협력해 스마트TV

72) Mintable - An NFT auction of a 96 year-old painting by Wladimir Baranoff-Rossine(Brave New Coin, 2021), <https://bravenewcoin.com/insights/podcasts/mintable-an-nft-auction-of-a-96-year-old-painting-by-wladimir-baranoff>

73) 서울옥션도 NFT거래 시작...디지털아트 플랫폼 XXBLUE 열었다(매일경제, 2021.11.23.),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1/1090995/>

전용 NFT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며, 동 플랫폼은 NFT 예술품 및 수집품을 탐색하고 거래할 뿐 아니라, 스마트TV에서 구매한 NFT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수탁(커스디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⁷⁴⁾

17) LG전자의 ‘드롭스 갤러리’

LG전자는 그라운드X와 협업해 카카오의 디지털지갑 클립(Klip)에 구매 보관 중인 NFT 작품을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드롭스갤러리(Drops Gallery)’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드롭스갤러리는 ‘클립 드롭스’의 1D1D(One Day One Drop)를 통해 구매한 국내 주요 아티스트들의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디팩토리를 통해 구매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NFT 콜렉터블스와 마켓을 통해 구매한 작품 모두 TV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와 작품 해설 등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⁷⁵⁾ 또한, 디지털 아트 플랫폼 기업 블랙도브(Blackdove)와 다양한 NFT 예술작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 하드웨어 없이 디스플레이와 통합된 블랙도브 앱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디지털 아트 카탈로그를 관리하거나 작품 구매가 가능하며, 블랙도브는 작품 구매나 구독을 원하는 고객에서 무료 큐레이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롯데홈쇼핑의 ‘방구석 컬처관’

롯데홈쇼핑은 대중적인 작품을 TV 홈쇼핑에서 판매하거나, 작품 소유권과 결합한 미술품 NFT 등 다양한 연계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업 본격화의 일환으로 전문관 방구석 컬처관을 모바일 앱에 2022년 2월 25일 오픈하였다. 방구석 컬처관은 원화, 명화, 아트상품 등 섹션별로 총 100여 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유명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문화공연 및 전시 티켓 등 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⁷⁶⁾

74) 삼성전자, 니프티게이트웨이와 스마트TV용 NFT 플랫폼 만든다(코인데스크 코리아, 2022.3.31.),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64>

75) LG 스마트 TV로 NFT 작품 감상" 그라운드X, '드롭스 갤러리' 출시(FNnews, 2022), <https://www.fnnews.com/news/202202211730395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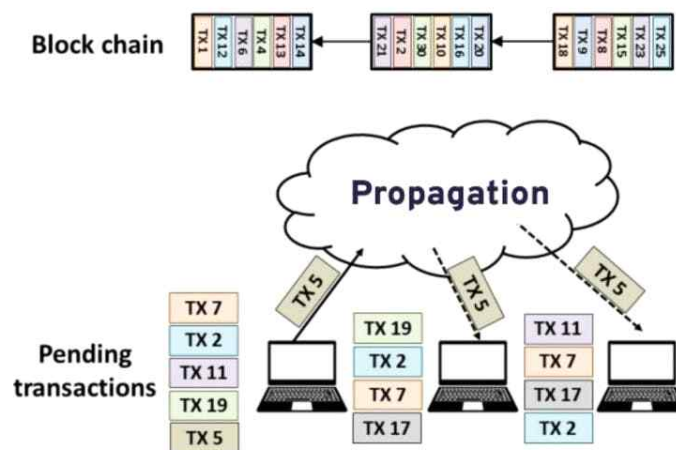
76) 롯데홈쇼핑, 컬처 사업 본격화... 미술품 NFT시장 진출(뉴데일리경제, 2022.3.3.),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3/2022030300057.html>

19) SIAE의 NFT 저작권관리시스템

이탈리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SIAE)와 블록체인 회사인 알고랜드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방형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첫 단계로 95,000명이 넘는 저자의 권리로서 450만 개 이상의 NFT를 생성하였다.⁷⁷⁾

NFT는 국가별로 나누어진 각 구성원의 다양한 권리를 나타내며, 동일 지식재산에 연결된 다른 아티스트 권리자의 정보, 작업, 관련 작업을 온체인으로 업로드하면, DSP(Digital Service Provider)가 관리하는 정보와 링크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면, 스마트 계약의 간단한 적용을 통해 스트리밍 사용료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DSP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음악 재생횟수 역시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저작권료 징수 체계의 혁신 효과가 발생한다.

그림 15 Algorand's Instant Consensus Protocol



< 출처: Algorand(2018)⁷⁸⁾ >

77) SIAE, Italy's larges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represents authors' rights as digital assets managed on the Algorand blockchain(Algorand, 2021.3.24.), <https://www.algorand.com/resources/ecosystem-announcements/siae-launches-4-million-nfts-on-algorand-for-creators>

78) Algorand's Instant Consensus Protocol(Algorand, 2018.5.1.), <https://www.algorand.com/resources/algorand-announcements/algorands-instant-consensus-protocol>

20)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의 ‘KENDRIX’⁷⁹⁾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022년 6월 28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명 기능을 갖춘 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인 ‘KENDRIX’⁸⁰⁾의 베타 버전을 발표하였다. 음악 업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착됨에 따라 음원 제작부터 마케팅, 배포까지 스스로 실시하는 개인 음악 크리에이터(DIY 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DIY 크리에이터에게는 “음악 전송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과는 별도로 저작권관리단체 등을 통해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DIY 크리에이터에게는 자신의 음원에 대한 무단 이용·공개에 관한 대항 수단이 없고 저작물 사용료 분배의 구조나 JASRAC와의 관리 위탁 계약·음원 등록이 복잡하다는 등 기존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이용은 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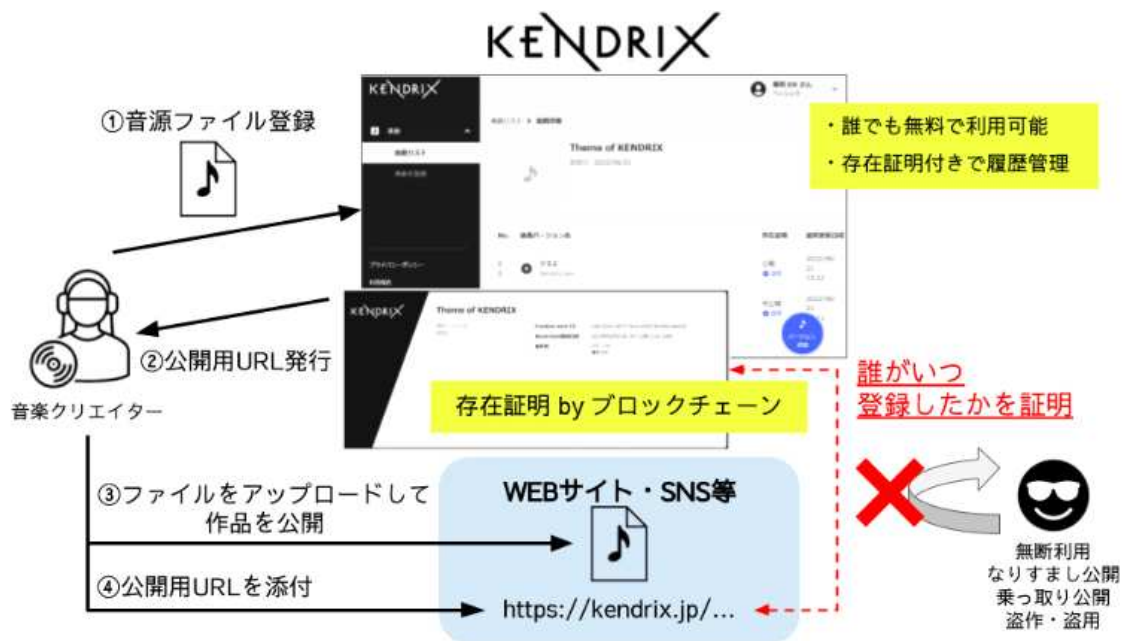
이에 JASRA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존재 증명 기능을 갖추고, JASRAC를 포함한 음악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데이터 연계, 각종 신청·등록 및 계약을 정형화·간소화하여 전자화된 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인 KENDRIX를 개발하였다.

KENDRIX는 모든 음악 크리에이터가 안심하고 음원을 발표할 수 있고 적정한 대가 환원을 받기 위한 각종 절차의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크리에이터 DX(디지털 전환) 플랫폼이다. 음원 파일 등을 KENDRIX에 등록하면 관련 정보(음원 파일의 해시 값, 타임스탬프, 사용자 정보 등)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누가·언제·어디서 소유했는지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블록체인에 등록된 정보를 표시하여 ‘존재 증명 페이지’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영상 전달 플랫폼이나 SNS로 음원을 공개할 때, 존재 증명 페이지의 공개용 URL을 더함으로 음원에 대한 해당 음악 크리에이터의 권리임을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있어 부정 이용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KENDRIX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존재 증명 외에 본인인증(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eKYC)을 이용한 온라인 계약 기능 등을 추가하여, 2022년 10월부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79)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https://www.jasrac.or.jp/release/22/06_03.html

80) KENDRIX는 ‘KENRI(권리)’와 ‘DX(디지털 전환)’을 조합한 명칭

그림 16 KENDRIX 개념도



< 출처: 일본 음악저작권협회(2022) >

21) 예스24의 '아티피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미술품을 조각으로 거래하고 NFT 기술을 접목한 아티피오 (ARTIPIO)를 출범할 예정이다. 미술품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과정에서 NFT로 진품 인증을 하거나 소유권을 부여하여 고객이 쉽게 미술품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이다.⁸¹⁾

22) 3LAU의 음판 판매

3LAU는 음악 산업이 창출한 수익의 대부분이 스트리밍 회사와 레코드 회사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곡과 앨범을 NFT화하여 판매하였다. 직접 설계한 경매 방법에 따라 상위 22명의 입찰자에게 토큰화된 앨범뿐 아니라 특별한 경험 교환권(한정판 LP판, 미공개 곡 접근권 등)인 리워드를 분배하였다.⁸²⁾

81) 미술품 조각투자 뛰어드는 예스24...NFT '아티피오' 상표권 등록(조선비즈, 2022.2.1.),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2/02/01/7SDYTEYEOVAA3DYJU6DCGXTMVM/>

82) [NFT 시대 도래] 코로나로 막막한 음악가들, NFT로 활로 모색(이투데이, 2021), <https://www.etoday.co.kr/news/view/2010601>

23) KINGS OF LEON의 음판 판매

그레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록밴드 'KINGS OF LEON'은 2021년 신규 앨범에 일련번호를 매겨 NFT로 판매하였다. NFT버전은 NFT 마켓플레이스인 YellowHeart를 통해 50달러에 판매되었으며, 각 토큰은 한정판 음반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포함된 패키지 앨범으로 2주 동안만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이러한 특수 토큰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차 시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⁸³⁾

24) 링거스튜디오의 '음악IP자유거래소'

링거스튜디오와 비트썸원은 신인 작곡가 발굴을 통한 신보 발매 및 음악 저작권과 관련 콘텐츠를 NFT로 제작·발행·유통 계획을 수립했으며, 링거스튜디오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통해 '음악IP자유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⁸⁴⁾ 음악IP자유거래소는 빠르고 정확하게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물자산과의 경제적 가치 연동 달성이 가능한 저작권 인증의 NFT 모듈과 자체 개발 오디오 워터마크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투명한 저작권 소비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⁵⁾

25) Avex technologies의 Asset Bank / A trust⁸⁶⁾

블록체인 사업 및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 Avex technologies는 2021년 4월 16일, 지식재산 보유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목적으로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발표하였다.

Avex technologies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비스인 'A trust'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차세대형 저작권 유통 시스템 'Asset Bank'를 개시하여 Asset Bank와 A trust를 연계시켜 NFT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 trust'는 Avex technologies가 2019년 7월 개발한 NFT 사업 기반으로,

83) The Only Marketplace For Music/Live Event NFT Ticketing is "YellowHeart"(MORNING LAZZINESS, 2022), <https://www.morninglazziness.com/business/yellowheart-nft-marketplace/>

84) 비트썸원·링거스튜디오 MOU...NFT 업무 협력(아시아투데이, 2022.3.18.),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8010010221>

85) '링거스튜디오', 틱스(TIPS) 선정으로 투자유치 탄력(아주경제, 2022.4.14.),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4005052445>

86) Avex technologies 홈페이지, <https://avex-technologies.com/news/pressrelease/243/>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인증서를 부여함으로써 진품 가치를 증명하고 유일성, 한정성을 갖추면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가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안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 ‘Asset Bank’는 일본 내 11개 콘텐츠기업연합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단체 ‘Japan Contents Blockchain Initiative’의 블록체인에 사전 출시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악곡, 이미지, 일러스트, 텍스트, 3D 모델, 모션 데이터 등을 ‘Asset Bank’로 등록하여 디지털 콘텐츠 권리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 권리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창출할 수 있으며, 장래에는 누구나 ‘Asset Bank’에 등록된 정규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의 판매를 안심하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7 디지털 콘텐츠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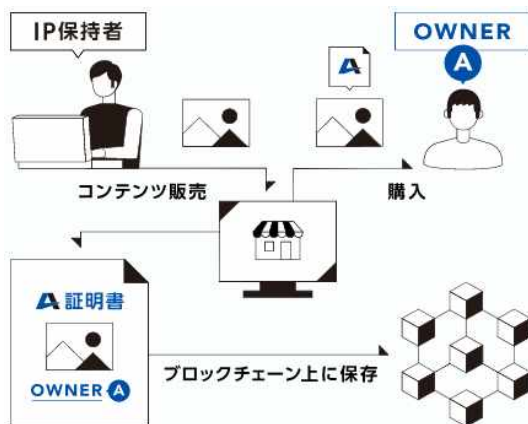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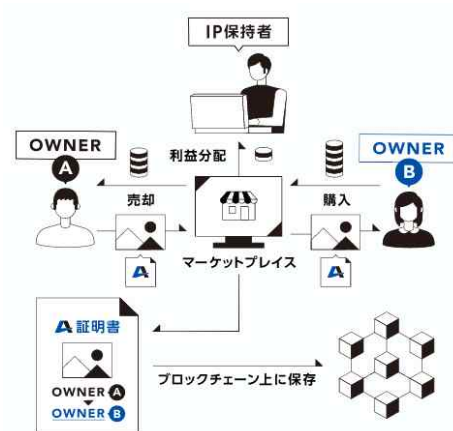


그림 18 디지털 콘텐츠 유통



< 출처: Avex technologies⁸⁷⁾ >

2.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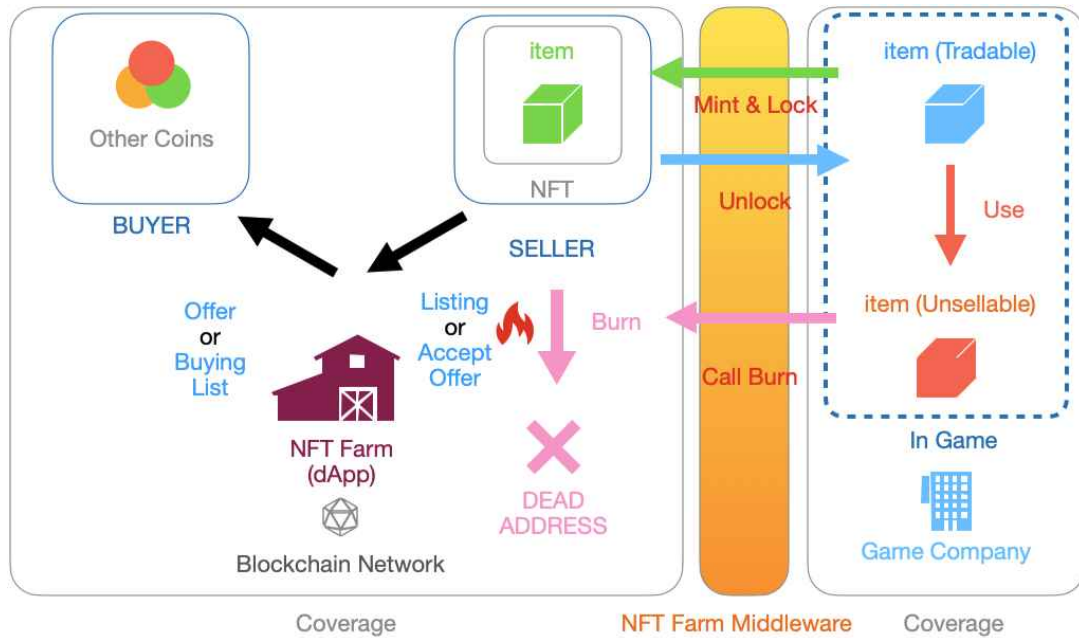
1) 개요

게임 아이템을 NFT 형태로 구매할 경우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이용자가 직접 소유하는 즉,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NFT, DeFi)이 적용되면서 Play to Earn(P2E)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게임 시스템에서 이용자는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이용권만을 소유하였는데, NFT 아이템은 이용자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마켓플레이스

87) Avex technologies의 ‘A trust’ 홈페이지, <https://atrust-cert.com/>

를 통해 판매·재판매할 수 있으며, 호환되는 게임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다.

그림 19 게임과 NFT 기술



< 출처: mydailybyte(2022)⁸⁸⁾ >

2) 대퍼랩스의 '크립토키티'

대퍼랩스(Dapper Labs)가 2017년 제작한 게임으로, NFT 형태로 제작자가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는 가상 고양이인 크립토키티를 구매, 판매, 번식 등이 가능하다. 가상 고양이 이미지를 입힌 NFT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져 각각의 고양이들은 희소성을 가지고 거래될 수 있고, 각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여 NFT로 표시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소유권 추적이 가능하며, 희귀한 크립토키티가 생성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⁸⁹⁾

88) [DEEP BYTE] 게임과 블록체인...우린 깐부니까...(mydailybyte, 2022.2.21.), https://mydailybyte.com/deep_game_blockchain/

89) 게임과 NFT의 결합, 아이템이 '내 것으로'(이데일리, 2021.4.14.), https://news.v.daum.net/v/20210414053812376?s=print_news

3) 소레어

소레어(Sorare)는 특정 시즌 축구선수들의 공인된 수집형 카드를 교환 플랫폼으로, 선수, 시리얼 넘버, 국적 등 고유 정보의 수집 가치를 제공하며, 수집한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은 보유한 NFT 카드 점수가 높으면 승리하게 되며,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카드의 가치 향상을 통해 카드 소유자에 대한 보상 구조를 형성하여 수집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⁹⁰⁾

4) 스카이 마비스의 '엑시인피니티'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 스카이 마비스가 지난 2018년에 선보인 엑시인피니티는 '엑시'라는 몬스터를 이용해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한 마리의 엑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NFT로 엑시를 이용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엑시를 교배해 희귀한 엑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다시 NFT로 변환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하다.⁹¹⁾

5) 미투온의 '포켓배틀스 NFT War'

미투온이 개발한 '포켓배틀스 NFT War'는 캐주얼 전략 배틀 NFT·P2E 게임으로, '포켓배틀스'를 미버스 메인넷에 온보딩해 NFT·P2E 버전으로 2022년 7월 출시하였다. 이 게임은 등급별 다양한 영웅과 용병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해 자신만의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 전투를 할 수 있다. 총 12종의 영웅 NFT와 19종의 일반 영웅, 그리고 39종의 용병 조합이 가능하다.

포켓배틀스 NFT War는 게임 유틸리티 토큰인 '포켓토큰(PKT)'이 도입된다. 유저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포켓스톤(PKS)'이라는 게임내 재화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포켓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탈중앙화거래소인 미버스텍스에서 포켓토큰을 'USDC'⁹²⁾로 교환할 수 있다.

NFT 영웅은 미버스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NFT를 보유한 유

90) Sorare 홈페이지, <https://sorare.com/r/ryan-nft>

91) [백서읽기] NFT 대장주 '엑시인피니티'란 무엇(BUSINESS watch, 2022.2.22.),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2/02/21/0018>

92) 서클(Circle Internet Financial)에서 발행한 미국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저는 일일퀘스트, 통합아레나, 영웅 NFT 보유자 대상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며, 토너먼트를 통해 분기별 총 24만달러의 상금을 획득할 수 있다.⁹³⁾

6) 엔진 플랫폼의 'Enjin Coin 생태계'

엔진(Enjin) 플랫폼은 누구나 게임 아이템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도구 및 마켓플레이스 또는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토큰화된 게임 아이템이 사용자들 간 판매·재판매되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초 엔진은 개발자들이 직접 게임 및 앱에 NFT 토큰을 적용할 수 있는 엔진 플랫폼을 개시하였다.⁹⁴⁾

그림 20 Enjin Coin 생태계 개요



< 출처: EnjinKorea(2018)⁹⁵⁾ >

93) 미투온, NFT·P2E 게임 '포켓배틀스 NFT War' 글로벌 론칭(머니투데이, 2022.7.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818283195871>

94) 엔진 홈페이지, <https://enjin.io/>

95) Enjin Coin 생태계 개요(EnjinKorea, 2018),

<https://medium.com/@enjinkorea/enjin-coin-%EC%83%9D%ED%83%9C%EA%B3%84-%EA%B0%9C%EC%9A>

3. 메타버스

1) 개요

메타버스 플랫폼은 NFT에 관한 각종 정보 공유 및 NFT 거래, NFT 관련 창작자들의 공연, 작품발표회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상의 세상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NFT 창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 자체를 NFT로 발행 및 판매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SK텔레콤의 '이프랜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는 NFT·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기거나 플랫폼에 올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돈을 버는 '플레이앤드언(PNE)' '크리에이트앤드언(CNE)' 체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장식하는 의상 등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거래할 수 개방형 장터를 구축할 예정이다.⁹⁶⁾

3) 디센트럴랜드의 NFT 토지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NFT로 발행된 디지털 땅을 구매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 및 저장,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 내에 여러 NFT작품을 전시하거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센트럴랜드 속 토지인 랜드는 NFT로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NFT 정보 사이트인 논펀지블닷컴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가장 비싸게 판매된 랜드는 27만달러(약 3억8000만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랜들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⁹⁷⁾

%94-5cac0c4157e2

96) 이프랜드에서 메타버스 간부들을 만났어요(THEPR, 2022.2.9.),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50>

97)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속 '건물주' 왜볼까(팍스넷뉴스, 2021.8.6.), <https://paxnetnews.com/articles/77073>

4) 더 샌드박스의 '랜드'

더 샌드박스(The Sandbox)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NFT로 발행된 가상공간 '랜드(LAND)'를 매입하면 사용자는 그 위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 및 게임을 제작해 배치할 수 있다. 게임 속 아바타가 거래할 때 사용하는 코인을 이용해 랜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랜드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게 되어 매매 및 임대 가능하다. 더 샌드박스에는 166,464개의 랜드가 있으며,⁹⁸⁾ 2022년 3월 기준 랜드의 가격은 판매 초기인 2019년 말과 비교해 약 300배 증가해 약 1,700만 원에 팔리고 있다.⁹⁹⁾

5) 업랜드미의 '모노폴리'

업랜드미(Uplandme)의 업랜드(Upland)는 블록체인에서 땅문서를 사고파는 게임으로, 보드게임 '모노폴리(Monopoly)'를 블록체인에서 재현한 게임이다. NFT에 동일한 주소가 존재할 수 없는 땅문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땅문서 거래 내역은 모두 블록체인 플랫폼 이오스(EOS)에 기록되며, 땅의 소유권도 게임사가 아니라 실제 땅문서를 지닌 이용자가 된다.¹⁰⁰⁾

6) 디비전 네트워크의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디비전 네트워크(Dvision Network)는 전세계 주요 도시를 본판 NFT 가상 부동산인 '랜드'를 디비전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랜드는 200,000필지로 공급이 제한된다. NFT 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한 사용자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건물의 내외부를 직접 꾸밀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포럼, 전시회, 갤러리, 임대 등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입장료 및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¹⁰¹⁾

98) 더 샌드박스 토큰 소개: 랜드(LAND)(The Sandbox KR, 2019.11.26.),

<https://medium.com/thesandboxkorea/%EB%8D%94-%EC%83%8C%EB%93%9C%EB%B0%95%EC%8A%A4-%ED%86%A0%ED%81%B0-%EC%86%8C%EA%B0%9C-land-2ef2875cf2b2>

99) 더 샌드박스 "SM도 구매하는 가상부동산 '랜드', 재테크 대세될 것"(한국경제, 2022.3.4.),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3045357g>

100) '블록체인판 부루마블' 업랜드미 \$200만 투자 유치(코인데스크 코리아, 2019.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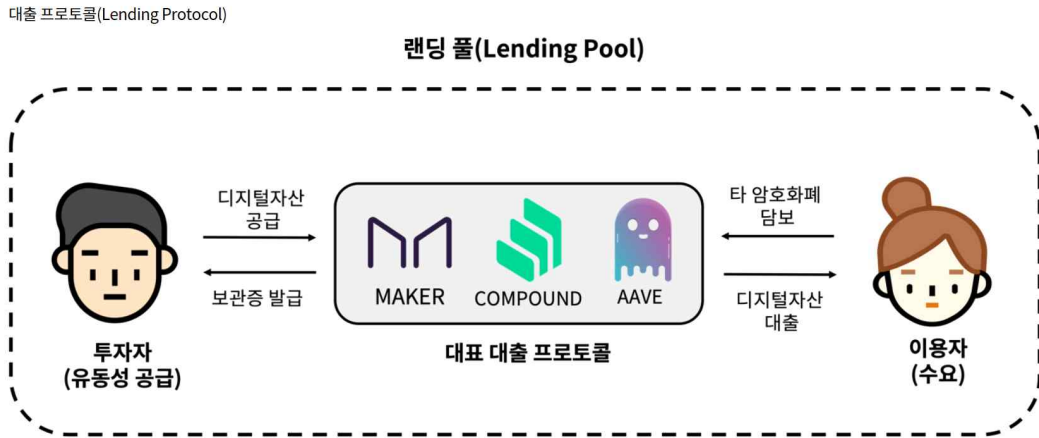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65>

4. 금융

1) 개요

금융시스템에 NFT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별도의 금융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탈중앙화 방식(DeFi)의 Peer to Peer(P2P)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NFT를 활용한 P2P는 현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 금융을 연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NFT를 DeFi와 결합시켜, ‘현물 담보 계약’을 NFT로 만들고 이를 대출 재원의 담보로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NFT 발행 시 대출 상환이 실패하여 담보 청산을 하게 될 경우 NFT는 오픈 마켓을 통해 현물 담보 청산이 가능한 사용자에게 전달되면서 구매 대금인 디지털 자산은 다시 디파이 대출 재원에 복귀되어 일반적인 P2P거래와 달리 자동적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림 21 NFT 담보 대출



< 출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¹⁰²⁾ >

P2P 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NFT를 담보로 제공하여 코인을 빌리는 대출서비스와 NFT 거래 내역, 투자 수익, 자산 현황 등을 제공하는 NFT 자산관리·평가 서비스가 있다.

101) 디비전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dvision.gitbook.io/dvision-network-english/what-is-dvision-network/nfts-in-dvision-meta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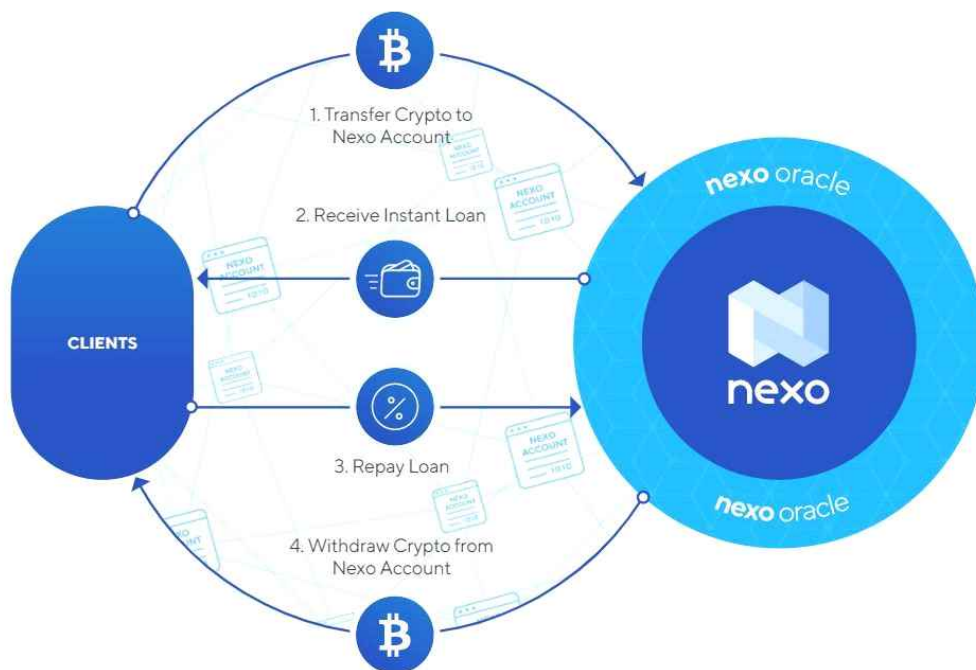
102)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https://m.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103>

2) 넥소의 NFT 담보 대출

가상자산 담보대출 기업 넥소(Nexo)의 'NFT랜딩데스크'는 'BAYC(Bored Ape Yacht Club)'와 크립토펙크 NFT 컬렉션을 담보로, 담보가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ETH(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등을 대출하고 있다.

그림 22 넥소의 NFT 담보 대출

Business Model



< 출처: PAXNETnews(2019)¹⁰³⁾ >

3) 플로우티의 P2P 대출

플로우티(Flowty)는 NFT를 담보로 하여 차입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자는 이자소득을 창출하는 P2P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입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담보는 자동으로 차입자에게 이전되고, 차입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가 자동으로 대출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이다.¹⁰⁴⁾

103) 변동성 높은 코인, 암호화폐 대출 증가세(PAXNETnews, 2019), <https://paxnetnews.com/articles/50258>

104) Flowty 홈페이지, <https://flowty.io/>

4) 론스냅의 NFT 모기지

모기지 대출 기관인 론스냅(LoanSnap)은 NFT 모기지를 발행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 수입 대비 빚 비율, 주택 가치 등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하면서 다른 대출 비용을 낮춰, 낮은 이자와 빠른 대출 승인, 유연한 상환 조건 등이 장점이다.

5) NFT뱅크의 NFT 자산관리

NFT뱅크는 가입 고객의 NFT 거래 내역, 투자 수익, 자산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이 보유한 NFT 자산의 실시간 시세분석과 유리한 매도시점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글루와의 NFT 담보 대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글루와(Gluwa)는 대퍼랩스(Dapper Labs)와 협력하여, 대퍼랩스의 NFT 플랫폼 '플로우(Flow)'를 이용해 개발되는 NFT의 크레딧코인 신용기록을 이용해 신용정보에 기반한 투자나 담보대출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7)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교환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음웹툰을 카카오웹툰으로 개편하면서 카카오웹툰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식교환권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벤트 당첨자에게 비상장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NFT를 활용하였는데, 주식교환권 NFT를 얻으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 6개월 이후, 정해진 시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식 1주와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비상장주식이다 보니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명의개서 방법이 복잡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NFT로 구현한 것이다. 실제 상장 후 교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보니 분실·보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NFT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관
계자가 설명한 바 있다.¹⁰⁵⁾

8) 엔젤리그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주식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는 NFT를
활용하고 있다. 엔젤리그의 특정 기업 클럽딜에 참여해 조합원이 되었다면 NFT 디지털
카드를 발급해 조합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조합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NFT 카
드를 수집하고 간편하게 자신들의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⁶⁾ 기존에는 개인 투자
자의 가입 확인 문서를 1,000명의 조합원에게 일일이 개별 발송하고 유실 시 문서를 재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카드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Klaytn)에 영구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 역시 클럽을 통해 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확인서를 NFT화하여 바로 디지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¹⁰⁷⁾ 엔젤리그 관계자는 “엔젤리그 조합 가입 증명을 클럽의 NFT 디지털 카드
를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덜고 조합원들의 편리성도 강화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¹⁰⁸⁾

5. 컬렉터블

1) 개요

기존 컬렉터블 시장의 주요한 문제인 인증 문제, 사기, 금융 통제 등을 해결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NFT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블록
체인 기술과 희소성에 기반한 NFT 컬렉터블 시장은 현재 NFT 시장 거래액의 75%를
차지하며 NF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경우 스포츠 선수의 프로필

105) 카카오엔터 주주 증명서? ... 비상장주식에 부는 NFT 바람(MTN 뉴스, 2021.8.1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1081215445390794>

106) 카카오엔터 주주 증명서? ... 비상장주식에 부는 NFT 바람(MTN 뉴스, 2021.8.1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1081215445390794>

107) 클럽, 비상장주식 조합 가입 증명서 답는다(PAXNET news, 2020.8.12.),
<https://paxnetnews.com/articles/64128>

108) 엔젤리그 “비상장 주식 조합 증명서 NFT로 제공”(이데일리, 2021.4.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8486629016448&mediaCodeNo=257>

사진 및 경기 활약상을 담은 라이브카드(영상)를 NFT화하여 거래소에서 판매 및 재판매 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포토카드, 미공개 사진 또는 영상, 사인 등 연예인 굿즈를 NFT화하여 판매 및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대퍼랩스의 ‘NBA 톱샷’

대퍼랩스의 ‘NBA 톱샷(TOP SHOT)’은 경기 플레이 모습이나 하이라이트를 15초 영상으로 담아 NFT 트레이딩 카드로 제작한 것이다. 각 NFT에는 비디오 영상 뿐 아니라 해당 선수의 경기 통계나 플레이 분석, 하이라이트 설명, 코트 내 촬영 영상 등 각종 관련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¹⁰⁹⁾

3) 라바랩스의 ‘크립토펅크’

크립토펅크는 NFT라는 개념이 막 생겨났을 때 실험적으로 발행된 초기 NFT로, 라바랩스가 2017년 6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1만개의 크립토펅크 NFT를 발행하였다. 크립토펅크는 서로 다른 외모, 성격, 의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희귀할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¹¹⁰⁾

4) 수집형 NFT인 ‘이더락’

‘이더락(EtherRock)’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첫 번째 수집형 NFT 시각물로, 2017년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암석 그림 100개가 발행되었다. 이더락은 사고파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으며, 발행처 홈페이지 상에는 “100개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¹¹¹⁾

109) TOP SHOT 홈페이지, <https://nbatopshot.com/>

110) 크립토펅크는 어떻게 NFT 히트상품이 됐나 (ZDNetKorea,2021),
<https://zdnet.co.kr/view/?no=20210920145626>

111) EtherRock 홈페이지, <https://etherrock.com/>

5) 대한체육회의 ‘2022 베이징올림픽 팀코리아 NFT’

대한체육회는 핏어스(사업 대행)를 통해, PFP(profile picture) NFT, 디지털 3D 큐브 카드, 디지털 피규어, 디지털 아트 등으로 구성된 ‘2022 베이징올림픽 팀코리아 NFT’를 발행하였다.¹¹²⁾

6) 샌드박스게이밍의 ‘메타 토이 게이머즈(MTG)’

샌드박스게이밍은 e스포츠 프로 게임단 PFP NFT인 ‘메타 토이 게이머즈(MTG)’ 발행하였다. 메타 토이 게이머즈 프로젝트에 참여한 홀더에게는 세계 대회 초대 및 항공권, 홈구장 및 클럽하우스 행사 시 VIP 룸 및 숙박권, 샌드박스게이밍의 프리미엄 PC방 ‘포탈(PORTAL)’ 무료 이용권, 각종 행사 초청권 등 등급별 오프라인 특전 및 주요 마케팅과 비즈니스 활동뿐만 아니라 선수 트레이딩 등 선수단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대회 성적에 따른 상금, 스킨 수익에 연동되는 혜택 등 거버넌스 참여 기회 부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7) 코인북의 ‘Suddenly NFT Trading Card’

코인북(Coinbook)은 일본 아이돌 그룹 ‘SKE48’의 사진들을 담은 ‘Suddenly NFT Trading Card’라는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를 발행하였다. NFT 트레이딩 카드는 연예인의 이름, 공연명, 발행 매수, 구매자 등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재된 사용자 간에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 정보가 추가되며, 기록을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카드의 진위를 보장하고 있다.¹¹³⁾

112) [베이징올림픽]팀코리아 NFT, 개막 앞두고 뜨거운 관심(이데일리, 20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8406632227240&mediaCodeNo=258>

113) Coinbook Co., Ltd. “SKE48 12th Anniversary Fes 2020 ~ 12 Performances All at once ~” SKE48 collaboration “Suddenly NFT Trading Card” will be on sale from October 3rd(Japan NEWS, 2020), <https://re-how.net/all/638366/>

6. 실물자산

1) 개요

NFT 기술 특유의 고유 ID 부여 및 추적 식별기능을 활용하여, 실물자산(물품)을 연계한 NFT의 발행을 통해, 판매 또는 중고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실물자산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2) 스탁엑스의 '볼트NFT'

세계 1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가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을 스탁엑스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NFT로 하고 있다. 운동화 리셀(resell)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탁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로, '볼트NFT(Vault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다.¹¹⁴⁾

3) 나이키의 '크립토킱스'

나이키는 '크립토킱스(CryptoKicks)'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술(ERC-721, ERC-1155)을 활용해 스니커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구매자가 블록체인에 등록된 '크립토킱스' 신발을 구매할 경우 실물 상품과 함께 가상의 토큰을 받게 되며, 해당 토큰은 10 비트의 고유한 식별부호로 이뤄지며 이후 10자리 소유주 식별부호를 연계시킴으로써 잠금이 해제(Unlock)된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발이 판매되면 가상 토큰의 소유권은 실제 신발과 함께 구매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진품 식별 기능과 더불어 크립토킱스는 가상 신발을 '양육(Breed)'할 수 있는 기능 존재이 있다. 설명서에는 "디지털 신발을 키우거나, 다른 디지털 신발과 섞어 새로운 종족을 만들 수도 있다"며 "새로 키운 디지털 신발은 실제로 제공되는 나이키 제조규격에 맞춰 주문 생산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14) 스탁엑스 홈페이지, <https://stockx.com/nfts>

그림 23 나이키의 크립토킵스 특허



< 출처: 중앙일보(2021)115) >

4) 사토시 스튜디오의 스니커즈

사토시 스튜디오(Satoshi Studio)는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이 들어 있는 라벨 홀더를 제품(스니커즈)에 부착해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Arianee 블록체인에서 구입, 수집, 판매, 재활용 등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제품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게 된다.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은 스마트 계약의 소유권을 자신의 Arianee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디지털 ID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 QR코드를 통해 정품여부 확인 및 공급업체, 재료, 원산지, 모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즉시 Arianee 블록체인에 디지털 ID가 기재된다.¹¹⁶⁾

115) "1억짜리 나이키 한정판 맞습니다" 암호화폐 이어 NFT 시대(중앙일보, 2021.5.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9845#home>

116) 사토시 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s://satoshi-studio.com/pages/blockchain-solution>

5) LVMH 등의 '아우라'

LVMH(루이비통), 리치몬트(까르띠에), 프라다는 구매 이력을 확인하거나 진품을 인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컨소시엄 아우라(AURA)를 설립했다. 이 컨소시엄은 아우라를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서 상품 이력과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각 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아우라 블록체인에 기록된 고유한 디지털 코드를 부여받고, 상품 구입 고객은 아우라 플랫폼을 통해 출처, 재료, 소유권 증명, 품질 보증서, 관리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¹¹⁷⁾

6) 불가리의 NFT 시계

불가리는 두께 1.8mm로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계로 알려진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Bulgari Octo Finissimo Ultra)'를 2022년 4월 선보였다. 시계 다이얼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전 세계 10개 한정판인 이 시계가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되었는지를 비롯해 시계와 관계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시계 구매자는 해당 시계를 소재로 만든 NFT를 받게 되는데, NFT를 통해 정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장받게 된다.¹¹⁸⁾

7) 돌체앤가바나의 NFT 컬렉션

돌체앤가바나(D&G)의 NFT 컬렉션 '콜레치오네 제네시(Collezione Genesi)'가 2021년 8월 베니스에서 열린 Dolce&Gabbana couture event에서 공개되었다. NFT 마켓 UNXD와 협업해 선보인 이 NFT 컬렉션은 모두 돌체앤가바나의 디자인 시리즈인 알타 모다, 알타 사토리아, 알타 조엘레리아 라인에 속하는 것으로, 디지털 작업과 물리적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¹¹⁹⁾ 실물과 NFT를 모두 소장한 이들에게는 돌체앤가바나가 기획한 이벤트를 독점해 누릴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었고, 출시 후 총 1885.73이더리움(약 67억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돌체앤가바나는 자체 NFT 커

117) 루비이통·프라다·까르띠에, 진품 인증에 블록체인 활용...컨소시엄 '아우라' 합류(TOKENPOST, 2021.4.21.), <https://www.tokenpost.kr/article-58767>

118) Bulgari Makes World's Thinnest Watch, Plus NFT, for €400,000(Bloomberg, 2022.4.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4-04/bulgari-makes-world-s-thinnest-watch-plus-nft-for-400-000>

119) Collezione Genesi(UNXD2021.9.20.), <https://unxd.com/drops/collezione-genesi>

뮤니티 'DG패밀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DG패밀리 박스 NFT를 구매하면 실제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¹²⁰⁾

8) 브라이틀링 시계의 NFT 보증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브라이틀링은 2013년 이후 생산된 시계에 대해 프리미엄 서비스와 거래 용이성, 추적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NFT를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계의 제품 정보와 보증 상태, 전체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 시계의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브라이틀링의 NFT는 시계 보증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반 소유권 증명을 함으로써 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다양한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¹²¹⁾

9) 태그호이어의 'TAG Heuer Connected Calibre E4 smartwatch'

태그호이어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TAG Heuer Connected Calibre E4 smartwatch)의 배경화면에 NFT 이미지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태그호이어 커넥티드 앱에서 렌즈 워치페이스를 통해 NFT 월렛을 선택하여 원하는 NFT를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워치의 배경화면에 NFT 이미지가 표시되는 구조이다. 즉, 태그호이어는 자신이 구매한 NFT 자산을 스마트워치의 배경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 및 디지털 자산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다.¹²²⁾

10) 파네라이의 'Radiomir Eilean Experience Edition'

파네라이는 아리아니(Arian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50개 한정판 시계(Radiomir Eilean Experience Edition)에 NFT를 부여하였다. 파네라이는 모든 구매자가 NFT를

120) NFT로 몸값 높인다...명품 브랜드의 '럭셔리 테크' 활용법 [더 하이엔드](중앙일보, 2022.7.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339#home>

121) BREITLING 홈페이지, <https://www.breitling.com/us-en/blockchain/>

122) TAG HEUER 홈페이지,

<https://magazine.tagheuer.com/en/2022/06/15/tag-heuer-connected-the-perfect-match-for-nfts/>

구매할 수 있도록 독특한 암호화폐 지갑 형태로 Radiomir Eilean 위치에 연결된 50 Panerai Genesis NFT 중 하나를 제공한다. 이 NFT는 아티스트가 파네라이를 위해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작품으로, 디지털 자산은 한정판 시계에 직접 연관된 특별한 콘텐츠의 잠금 해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판 시계 구매자에게는 특수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고유 스탬프가 기록된다. 파네라이는 한정판 시계를 구매한 NFT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와 이벤트, 신제품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파네라이는 NFT를 통한 전략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시계에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을 제공해 시계의 귀증함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¹²³⁾

11) SSG닷컴의 ‘SSG개런티’

SSG닷컴과 신세계인터넷내셔널이 전개하는 디지털보증 제도(SSG개런티)는 온라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쓱닷컴이 판매하는 명품에 관해 정품을 인증해주는 품질 보증서로 NFT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다. 상품정보, 구매이력, 보증기간, 보안 정보 등의 내용을 담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며, 각기 다른 시리얼 넘버가 부여된 명품마다 고유한 디지털 보증서를 제공하여 복제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향후 제품의 소유자를 변경하고 보증서를 양도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 중고 거래나 리세일(재판매) 시 정품을 보증하고 도난 제품의 재판매도 방지할 계획이다.¹²⁴⁾

12) Arianee와 IBM의 디지털 패스포트

Arianee와 IBM은 2021년 7월에 가치 있는 상품에 대한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s)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명품을 구매할 때 소유자는 진품과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NFT를 받게 되는데, 이 NFT는 원료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다. 브랜드는 제품의 모든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NFT는 순환 경제를 위한 재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²⁵⁾

123) Panerai 홈페이지,

<https://www.panerai.com/kr/ko/about-panerai/news-and-events/nft-experience.html>

124) SSG닷컴 홈페이지, <https://www.ssg.com/event/eventDetail.ssg?promId=1100702155>

그림 24 Arianee와 IBM의 디지털 패스포트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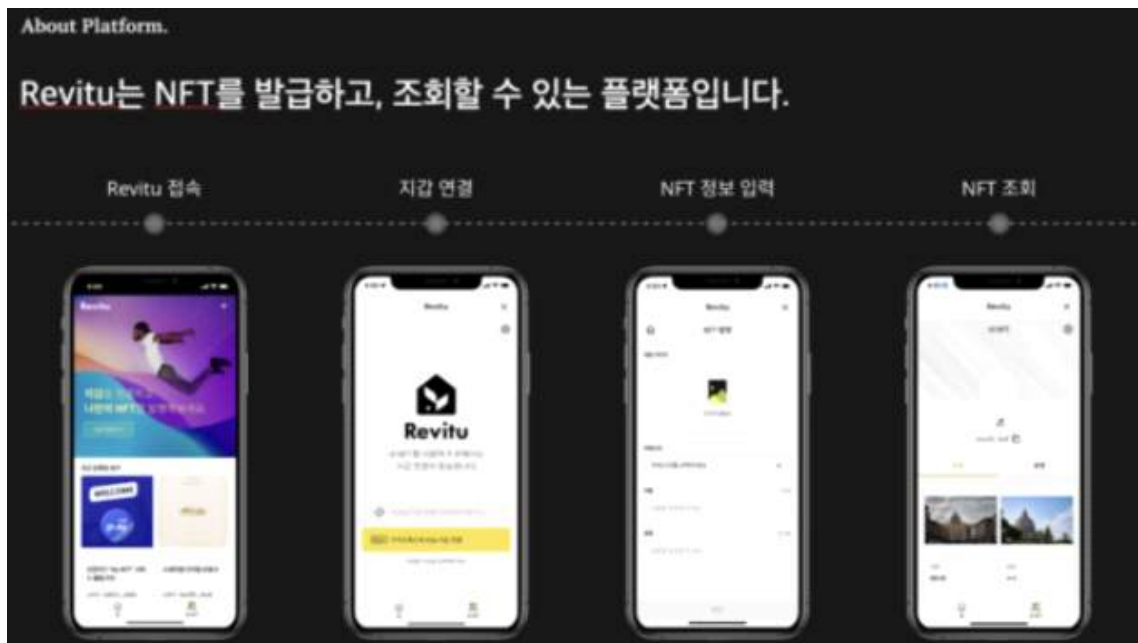


< 출처: MBA MCI >

13) 블록오디세이의 ‘레비추’

블록오디세이는 NFT 발행 서비스 ‘레비추(Revitu)’를 통해 명품, 부동산 등 희소성 높은 실물 자산에 대한 디지털 소유권 발행·조회·거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실물자산 NFT 발급에 그치지 않고 스캐너스 정품인증과 물류, 유통 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5 레비추 운영방식



< 출처: 이코노믹리뷰(2022)¹²⁶⁾ >

125) Demystifying the NFTS in a Nutshell, <https://mbamci.com/demystifying-nfts-in-a-nutsh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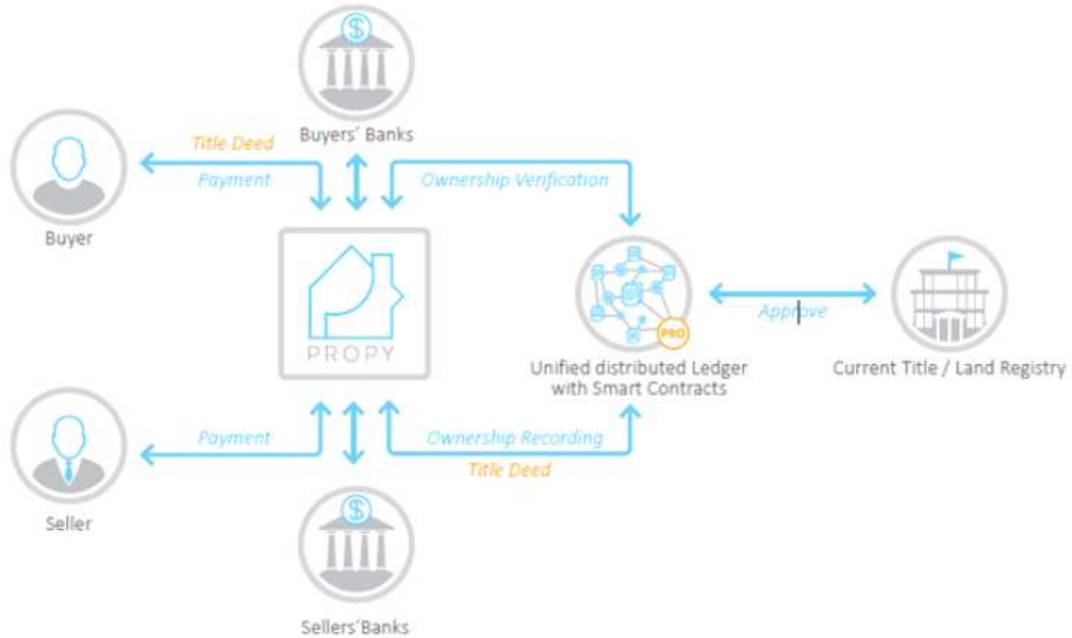
126) 5년내 나스닥 상장, 블록체인 업계 액센츄어될 터(이코노믹리뷰, 2022),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155>

14) 프로피의 실물 부동산 판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로피(Propy)는 2021년 현실 부동산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 개념을 도입하여 우크라이나 아파트를 NFT로 판매하고 NFT를 이용해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다. 2020년 6월, 스튜디오 아파트(아파트 실물 자산뿐 아니라, 유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디지털 예술 작품까지 포함)를 NFT로 경매하였고, 소유권 이전까지 22분이 소요되었다.

프로피는 모든 스마트 계약과 미국 내 모든 부동산 주택을 토큰화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법적 틀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은 미국 버몬트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이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법적 효과를 가진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타이틀 이전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온라인상에서 NFT만 거래하면 타이틀을 이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 법적 기구(US-based legal entity)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하고, 이 회사의 소유주만 NFT 구매자로 변경하여, 타이틀 이전 등의 복잡한 과정이 생략 가능한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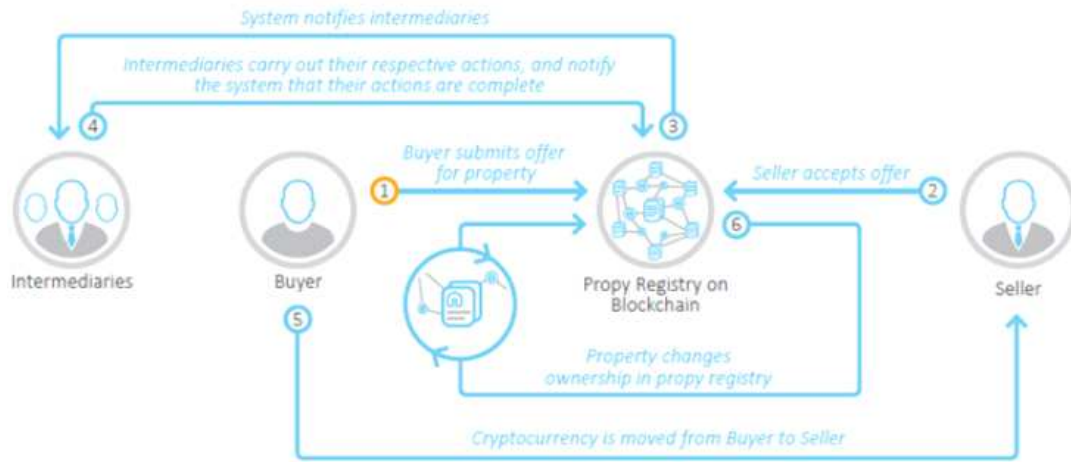
그림 26 Propy Transaction Platform v.1 (Propy Whitepaper)



< 출처: Medium(2018)¹²⁷⁾ >

127) #7. Propy — 부동산 거래의 미래는?(Medium, 2018), <https://medium.com/@kblockresearch/6-propy-%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9D%98-%EB%AF%B8%EB%9E%98%EB%8A%94-4a21bfb2795d>

그림 27 Propy Transaction Platform v.2 (Propy White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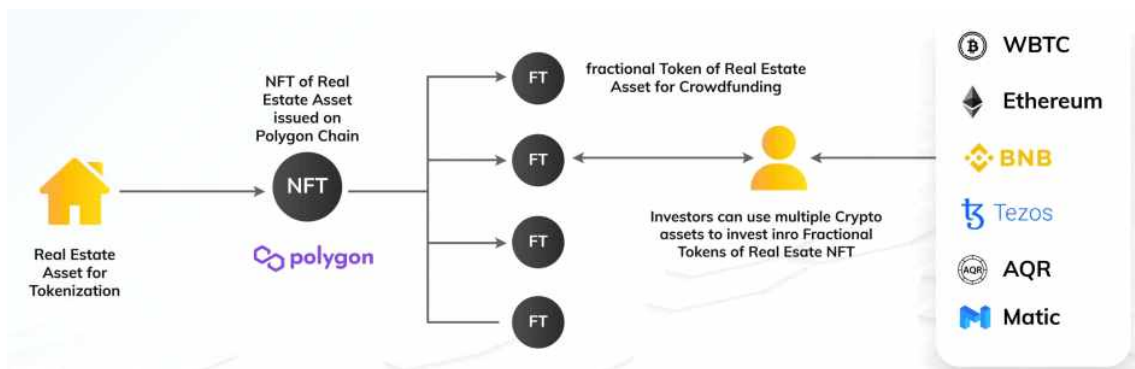


< 출처: Medium(2018)¹²⁸⁾ >

15) AqarChain의 부동산 거래

AqarChain은 실물 부동산 자산을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화하여 중개인 없이 디지털 거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부분 소유권을 통해 저렴한 주택에서 초호화 주택, 상업용 자산 등의 일부 지분의 소유를 통해 임대료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¹²⁹⁾

그림 28 AqarChain의 실물 부동산의 NFT화 및 거래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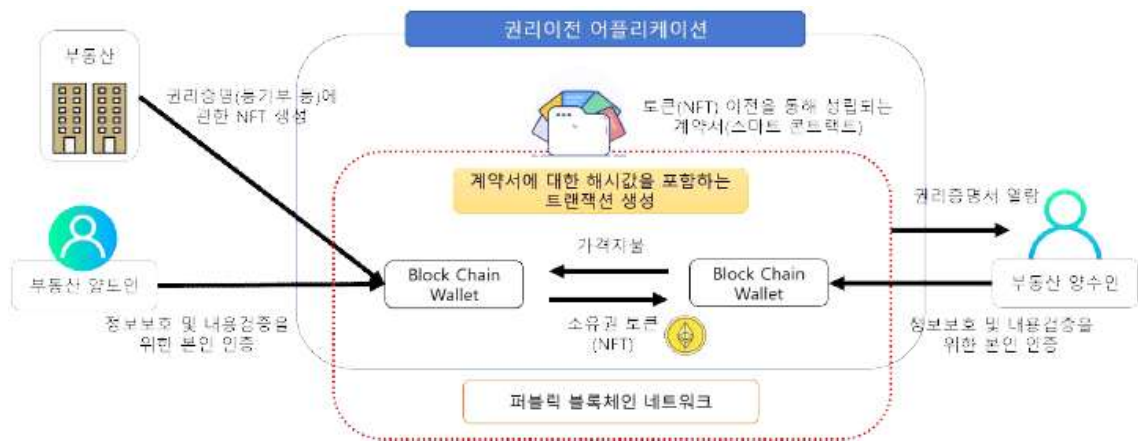
< 출처: AqarChain Presentation¹³⁰⁾ >

128) #7. Propy — 부동산 거래의 미래는?(Medium, 2018), <https://medium.com/@kblockresearch/6-propy-%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9D%98-%EB%AF%B8%EB%9E%98%EB%8A%94-4a21bfb2795d>
 129) AqarChain 홈페이지, <https://www.aqarchain.io/>
 130) Aqarchain-Presentation,

16) LIFULL의 부동산 공시

일본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업인 'LIFULL'은 일본의 빈집과 소유자 미상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NFT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고, 2019년 NFT를 활용한 빈집 또는 소유자 미상의 부동산에 대해 공시를 통해 거래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법을 실증하였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의 권리 이전의 이력관리, 계약서 및 등기부를 가록한 NFT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월렛(Wallet)을 통해 NFT를 거래하고 소유권 정보 등을 업로드하여 참여자에게 공유 및 부동산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열람(참여자 인증 필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¹³¹⁾

그림 29 LIFULL의 부동산 NFT 거래 프로세스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

17) 콜롬비아의 토지등록 시스템

콜롬비아 국가토지국은 최근 리플(Ripple)의 자회사인 리플엑스(RippleX)의 리플 XRPL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지등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리플엑스는 자체 NFT 표준을 XRPL 소프트웨어에 적용시키는 제안을 발표하면서 NFT 생성에 XRPL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 저비용, 친환경, 탈중앙화 등 이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콜롬비아 국가토지국은 향후 10만 건 이상의 토지 계약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등록된 계약 및 자산은 QR코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¹³²⁾

<https://aqarchain.oss-me-east-1.aliyuncs.com/pitch-deck/Aqarchain-Presentation-English.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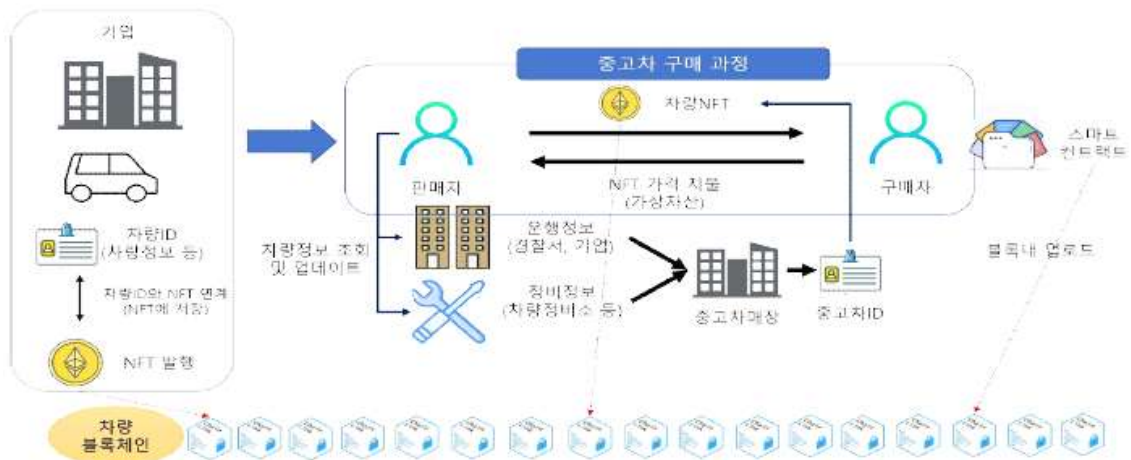
131) 민경식외2, 전게서, 26쪽.

132) 리플, 자체 NFT 성능 테스트...콜롬비아 토지등록 시스템에 XRPL 활용(코인리더스, 2022.7.6.),

18) 도요타의 중고차 거래

일본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와 블록체인 기업인 Datachain은 협업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전자 계약의 편의성 향상 및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자동차 제조이력, 정비 이력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해당 차량의 NFT를 발행하고, 실물 차량과 차량 NFT에 대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불하는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시스템에서는 NFT를 통해 판매자, 구매자가 차량 정보 조회 및 권리 이전 등 해당 차량 정보의 진위여부 검증이 가능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기업, 경찰청, 정비소 등에서 제공한 차량정보를 확인·열람하고 구매와 이전 시 정보를 갱신한 신규 NFT로 발행하고 구매 관련 계약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하여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거래 시스템이다.¹³³⁾

그림 30 도요타의 중고차 NFT 거래 프로세스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

19) 한성자동차의 인증중고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2022년 7월 8일, 인증중고차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문서, 디지털 보증서 및 NFT를 도입했다. 한성자동차에서 도입한 NFT는 '암호화폐'의 기능보다 그림, 영상, 문자 등의 디지털 파일을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고객이 구매한 인증중고차의 디지털 보증서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며, 디

<http://www.coinreaders.com/38507>
133) 민경식외2, 전계서, 26쪽.

지털 보증서는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든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¹³⁴⁾ 기존의 종이인증서 대신 디지털화된 인증서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관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전자인증서는 쉽게 복제되고 수정될 수 있으며 보관 및 회수가 어렵지만,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화된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서버 저장과 기록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¹³⁵⁾

20) 블링커스의 ‘뱅크오브와인’

블링커스는 와인 및 주류의 NFT를 통한 디지털 자산화 비즈니스 모델인 ‘뱅크오브와인(Bank of Wine)’ 플랫폼을 2022년 4월 개시하였다. 블링커스는 국내 주류법상 개인이 와인 및 주류를 거래할 수 없는 문제에 주목해 블록체인 기반의 현물 와인 NFT 교환권을 발행, 와인에 대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³⁶⁾

정품 인증된 투자 가치가 높은 주류 상품을 엄선하고, 주류에 대응하는 NFT를 한병에 하나의 NFT만 발행하며, NFT로 발행된 현물 와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와인 금고와 수령 가능한 오프라인 은행을 통해, NFT를 통한 안전한 거래 및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물 와인을 수령한 경우 기존 NFT는 경험 인증이 가능한 M-NFT(Memory Fungible Token)¹³⁷⁾로 대체되어 와인 경험을 제공한다.¹³⁸⁾

21) 롯데홈쇼핑의 ‘LOV-F’

롯데홈쇼핑은 2022년 5월 모바일 앱을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인 NFT샵을 오픈하였다. 향후 가상모델, 가상패션 등을 활용한 NFT 콘텐츠를 실물 상품과 연계해 판매할 예정이며, 업계 최초로 가상 디지털 의류 브랜드 ‘LOV-F(life of virtual fashion)’를 론

134) 벤츠 '인증중고차' NFT 발행된다..."디지털 소유권 확인 용도로 활용"(디지털데일리, 2022.7.8.),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41810>

135) 벤츠 인증중고차, 중고차 최초 디지털 보증서·NFT 발행(산업경제뉴스, 2022.7.10.), <http://www.biznews.or.kr/news/article.html?no=13135>

136) 와인 NFT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시장 진출(한국일보, 2022.7.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408580003771>

137) MFT는 Memory-Fungible Token으로, 교환(Redeem)한 와인과 함께한 고객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기억을 대체할 토큰으로, 주로 해당 주류 빈 병 또는 글라스가 회전하는 그래픽 형태에 회원이 기입한 정보를 결합하여 발급됨, 뱅크오브와인 홈페이지, <https://bankofwine.co/faq-detail>

138) 뱅크오브와인 홈페이지, <https://bankofwine.co/faq-detail>

칭하여 LOV-F에 대한 상품 소유권을 NFT로 보증하고, 실물 상품과 연계해 판매할 예정이다.¹³⁹⁾

22) Gaudiy의 ‘데이터 소유 전자책’

일본 Gaudiy사는 NFT를 이용하여 전자책 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하는 매커니즘을 개발하였다.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받은 권리는 ‘데이터 소유 전자책(data-owned electronic books)’으로 평가되면서, NFT로 발행된다. 전자책을 소유하면서 데이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종이책처럼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NFT 발행을 통해 ‘전자책 내용에 저자 사인 추가’, ‘초판 도서 한정 판매’, ‘판매 후 주요 부분 추가 또는 변경’ 등 다양한 변형도 가능하며,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전자책의 상품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31 Gaudiy의 ‘데이터 소유 전자책’



< 출처: techrunch(2021)¹⁴⁰⁾ >

139) 롯데홈쇼핑, 내년 '메타버스 플랫폼' 연다…NFT 마켓도 론칭(전자신문, 2022.1.13.), <https://m.etnews.com/20220113000009>

140) Gaudiy가体験ミュージアム「約束のネバーランド」GFハウス脱獄編でNFTを活用したキャンペーンを実施(techrunch, 2021), <https://jp.techcrunch.com/2021/07/08/gaudiy-yakusokuno-neverland-nft-campaign/>

7.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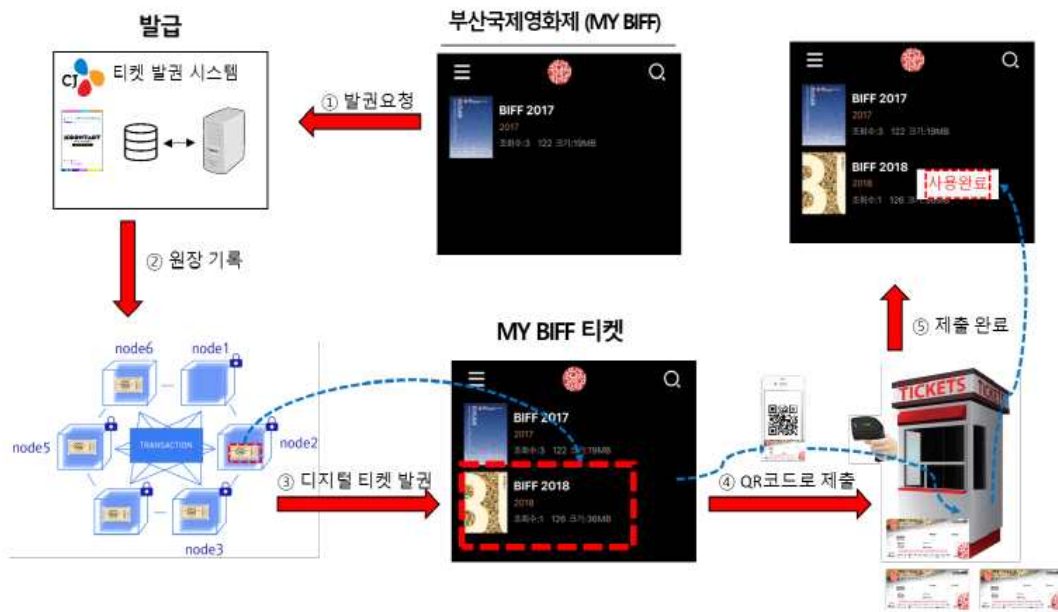
1) 개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NFT를 활용해, 자사의 상품(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활용되고 있다.

2) 부산국제영화제의 NFT 티켓

2021년 10월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 티켓에 NFT가 접목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압포, 위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QR코드 인증과 티켓 검수를 이중으로 함에 따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⁴¹⁾

그림 32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NFT 티켓 발급 과정



< 출처: 채널CJ >

141) [인터뷰] 영화제 티켓이 NFT 기술을 만난 이유는? CJ올리브네트웍스 박이삭 님(채널CJ, 2021.11.25.), <https://cjnews.cj.net/%EC%9D%B8%ED%84%B0%EB%B7%B0-%EC%98%81%ED%99%94%EC%A0%9C-%ED%8B%B0%EC%BC%93%EC%9D%B4-nft-%EA%B8%B0%EC%88%A0%EC%9D%84-%EB%A7%8C%EB%82%9C-%EC%9D%B4%EC%9C%A0%EB%8A%94-cj%EC%98%AC%EB%A6%AC%EB%B8%8C/>

3) 현대카드의 ‘언더스테이지 NFT 티켓’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UNDERSTAGE)’에서 열리는 공연에 NFT를 적용하는 ‘언더스테이지 NFT 티켓’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공연 티켓의 일부를 NFT 티켓으로 판매함에 있어, 싱어송라이터 이랑이 사인한 실물 포스터와 함께 이랑이 직접 제작한 아트워크를 NFT로 만들어 제공하였다.¹⁴²⁾

4) 기아의 ‘기아 EV NFT’

기아는 자사 전기차 모델을 활용해 디자인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기아 EV NFT’ 6개 작품을 판매하였다. 수익금 전액을 해양 환경보호를 연구하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 기부하였으며, NFT 구매자에게는 기아 전기차 중 1개 차종을 6박7일간 체험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였다.¹⁴³⁾

5) LG생활건강의 NFT 캐릭터

LG생활건강은 브랜드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빌리프(화장품 브랜드) 세계관인 ‘빌리프 유니버스’ 속 캐릭터를 NFT로 제작하여 오픈씨에서 공개 및 판매하였고, 특전으로 ‘뉴메로 에센스 75ml’를 제공하였다.¹⁴⁴⁾

6) 현대백화점의 NFT아트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국내 유명 NFT 아티스트 5명과 협업해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인 동대문과 강남 삼성역을 주제로 한 NFT아트 5종을 NFT로 제작하여 추첨을 통해 무료로 증정하였다. 각 아티스트별로 노멀 에디션(Normal Edition) 50개와 스페셜 에디션(Special Edition) 1개씩 총 255개의 NFT가 발행되었다.¹⁴⁵⁾

142) UNDERSTAGE NFT Ticket 홈페이지, <https://nftticket.hyundaicard.com/collection/langlee>

143) 기아,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 NFT ‘기아 EV NFT’ 출시(현대자동차그룹 뉴스룸, 2022), <https://www.hyundai.co.kr/news/CONT00000000000017408>

144) LG생활건강 홈페이지, <https://www.lghnh.com:984/news/press/view.jsp?seq=3588&title=NFT>

145) 현대백화점면세점, 서울 주제로 한 NFT 자체 제작(매일경제, 2022.3.21.),

7) 신세계백화점의 NFT영상

신세계백화점은 미국 3차원(3D) 예술가 베레니스 골먼과 함께 제작한 NFT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개시하였다. NFT의 이름은 'Spring vibes(봄의 정취)'로, 꽃이 피어 나는 10초 길이의 5종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200개씩 총 1,000개가 배포되었다. 동 NFT는 재거래는 가능하나, 2차 창작이나 변형을 금지하고 있다.¹⁴⁶⁾

8) BGF리테일의 히어로 NFT

BGF리테일은 오픈씨에서 모든 작품을 완판한 NFT 전문 작가 레이레이와 손잡고 히어로 NFT 3종에 대해 총 314개를 발행하였다. NFT를 받으려면 CU에서 상품을 산 뒤 포인트를 적립해야 하며, 포켓CU에 생기는 응모권으로 원하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¹⁴⁷⁾

9) 버거킹의 디지털 수집품

버거킹은 'Keep It Real Meals'라는 콘셉트로 디지털 수집품 컬렉션을 출시하였다. 고객은 주문할 때마다 NFT화된 디지털 콘텐츠 세 가지 중 하나를 받을 수 있고 모두 수집할 경우 실제 수집품이나 햄버거 1년 무료권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¹⁴⁸⁾

10) 제네시스BBQ의 '치박이' NFT

제네시스BBQ는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성 NFT 1만 개를 발행하였다. 마스코트 '치박이' 이미지를 활용한 NFT를 증정하는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254799/>

146) 신세계그룹 홈페이지, <https://www.shinsegaegroupnewsroom.com/75810/>

147) CU, 편의점 최초 NFT 제작(전자신문, 2022.2.24.), <https://m.etnews.com/20220224000013>

148) Burger King Launches NFT Campaign 'Keep It Real Meals' With Digital Collectibles Sweets from the Market(ultcoin365, 2021),

<https://ultcoin365.com/burger-king-launches-nft-campaign-keep-it-real-meals-with-digital-collectibles-sweets-from-the-market/>

이벤트로, 소유 고객 한정으로 특별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 제공할 예정이다.¹⁴⁹⁾

11) 파리바게뜨의 '제주마음샌드 NFT'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XYZ는 파리바게뜨와 협력해 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NFT '제주마음샌드 NFT'를 발행하였다. 제주마음샌드는 제주도에서만 한정수량으로 판매되는 파리바게뜨 상품으로,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NFT가 제공되며, NFT 보유 고객에게는 선물 제품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8. 기타

1) 개요

NFT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있어 기존에 NFT를 분류하던 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NFT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 소유권 발행·조회·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NFT명함, SNS 프로필, NFT 증명서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 네스트리의 NFT 포털서비스

네스트리는 NFT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NFT 포털 서비스(NFT Aggregator)를 출시하였다.¹⁵⁰⁾ NFT Aggregator는 다양한 NFT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NFT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NFT 콜렉터나 투자자는 NFT를 직접 소유하기까지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를 모니터링하며, NFT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NFT Aggregator는 이와 같은 행위 없이 한 번에 NFT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49) BBQ, '치박이' NFT 관심에 5000개 선 발행(이데일리, 2022.2.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32231504&mediaCodeNo=257>

150) 네트리스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estree_io/222678652710

록 지원한다. 현재 가장 유명하고 거래량이 많은 오픈씨와 Foundation NFT 거래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으며, 추후에는 정보 포털로써 초보자들을 위한 NFT의 기초 가이드부터 NFT의 신규 정보 및 심층 분석, 인사이트 등의 전문적인 뉴스를 글로벌 뉴스 포털들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¹⁵¹⁾

3) 애니파이브의 '씹캣'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인 애니파이브는 창작물 보호를 위해 NFT로 권리화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협업 과정을 통해 자산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씹캣(Thinkcat)'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을 2022년 상반기에 1차 오픈하고 하반기에는 캐릭터, 사진, 안무, 음악 등 일반인, 아티스트를 겨냥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플랫폼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창작·기술 데이터를 플랫폼에 업로드할 때 NFT를 활용해 전자지갑 '씹캣포켓'을 생성해 저작권 권리가 부여된다.

지식재산 자산화를 위해 사업기획·마케팅, 투자, 코디네이션, 에이전싱, 글로벌 사업화 등 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를 연계 지원. 지식재산 조사 분석, 특허·상표 출원 등록, 라이선싱 기술거래, 특허 유지관리 등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 온라인 협업공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해결한다.

그림 33 애니파이브의 '씹캣'



151) 네스트리, NFT 포털(NFT Aggregator) 베타 서비스 런칭(아시아경제, 2022.3.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2109575017727>

152) 애니파이브 "NFT로 창작물 보호"...'씹캣' 플랫폼 내달 공개(전자신문, 2022.5.17.), <https://www.etnews.com/20220517000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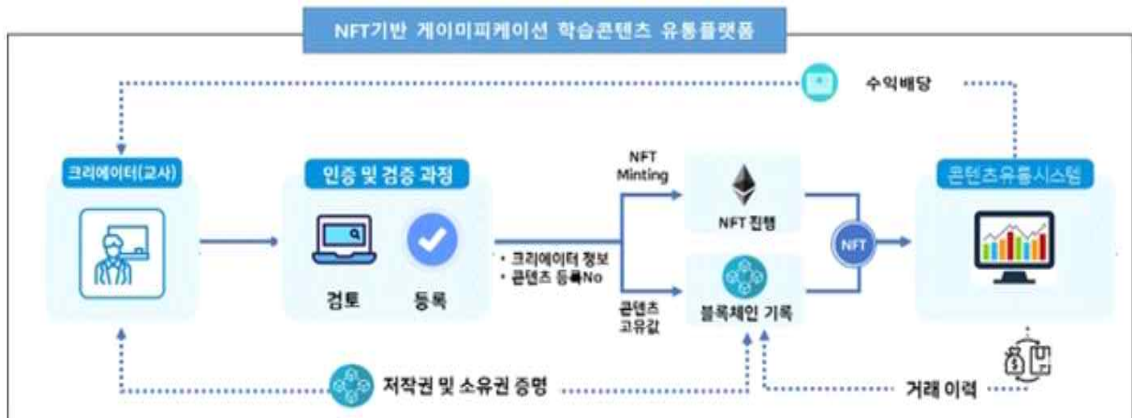
4) 세종텔레콤의 교육 콘텐츠 유통플랫폼

세종텔레콤은 클라우드 기반 학습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큐리어드와 협업하여 NFT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텔레콤과 큐리어드는 NFT 기술을 활용해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에 대한 진본성과 거래 투명성을 제공,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양사는 플랫폼 내 시스템 구조를 학습 콘텐츠 등록, NFT 발행, 학습 콘텐츠 유통, 학습 콘텐츠 이력 데이터 보관 및 관리 등 총 4단계로 분류해 개발하여, 학습 콘텐츠의 이력을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기록하고, 콘텐츠 사용에 따른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자동 배당되도록 한다.

그림 34 세종텔레콤의 교육 콘텐츠 유통플랫폼



〈출처: 디지털데일리(2022)153〉

5) NFT 멤버십

최근 NFT를 멤버십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NFT 멤버십은 위변조 및 추적이 어렵고, 순환 증가, 분할 거래 가능, 현금 유동성, 운반·통관 무제한 등의 장점이 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세븐일레븐 NFT'를 클립(Klip)에 보유한 고객이 세븐일레븐 앱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링크 태그에 터치하여 결제하면 Klay(가상화폐)를 리워드 지급

153) 세종텔레콤, 교육 콘텐츠 NFT 유통 플랫폼 구축나서(디지털데일리, 2022.7.28.), http://m.ddaily.co.kr/m/m_article/?no=243325

급하는 오프라인 NFT 멤버십을 2022년 5월 선보였고,¹⁵⁴⁾ 메타파티 멤버십은 클러버와 파티러버들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라 클럽파티, 풀파티 등 다양한 파티와 페스티벌에 초대되는 등 지속적인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파티 멤버십 NFT 카드'를 2022년 7월 발행하였으며,¹⁵⁵⁾ 현대자동차는 NFT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이오닉 시티즌십'을 운영하고 NFT 보유자들에게 NFT 홀더 전용 디지털 공간에 대한 입장 권한 및 아이오닉 6에 대한 흥미로운 디지털 콘텐츠와 아이템(디지털/실물) 제공 등이 포함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¹⁵⁶⁾

6) NFT 명함

NFT 명함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명함의 디지털 파일(JPG, GIF, MP4)과 명함 정보(텍스트)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송되는 명함은 단순히 수신인이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사진 파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 명함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NFT 명함은 종이 명함과 달리, 명함 정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직접 수정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명함을 보내거나 연하장, 홍보물을 보낼 때 명함 소지자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에어드랍 기능을 가지고 있다.¹⁵⁷⁾

7) SNS 프로필 서비스

SNS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신이 보유한 NFT를 프로필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NFT의 고유성에 기반하여 자신이 소유한 NFT를 활용하면 온라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데, 트위터는 2022년 1월 유료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에 NFT 프로필 기능을 추가해 자신의 이더리움 지갑에 있는 NFT를 프로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년 5월에는 메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보유한

154) 올링크, '세계 최초' 오프라인 NFT 멤버십 선보여(프리스탁뉴스, 2022.5.10.),
<http://www.pre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49>

155) 메타파티, 파티 특화 멤버십 NFT 카드 선보여(이투뉴스, 2022.7.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73>

156) 현대, NFT 멤버십 프로그램 공개(오토뷰, 2022.7.18.),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77312&news_section=com_info

157) What about NFT Business Card? | The Business Card can actually be collected in your wallet(CryptoStars, 2022.7.5.),
<https://blog.cryptostars.is/what-about-nft-business-card-the-business-card-can-actually-be-collected-in-your-wallet-7cdca7d941f8>

NFT를 전시하는 기능을 테스트 중이며, 지난 7월 7일 일본 라인 메신저는 자사의 NFT 플랫폼인 '라인 NFT'에서 소유 중인 NFT를 프로필에 설정하는 체험판 기능을 시작하였다.¹⁵⁸⁾

8) NFT 증명서

최근에는 대체불가능토큰을 증명·신원조회 같은 일상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호서대는 2022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학·석·박사 졸업생 2,830명 전원에게 NFT로 발행한 학위증을 수여했으며, 향후 성적증명서 등 제반 증명서도 NFT 적용 계획도 밝혔다. 성균관대도 2022년 2월 공모전 수상자에게 NFT상장을 수여했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졸업생 111명에게 블록체인 졸업장을 발급한 바 있다.¹⁵⁹⁾ 이외에도 라온화이트햇은 2022년 6월 20일, 중앙대학교와 분산ID(DID) 신원인증,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교내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단계로 오늘 8월 학부 졸업생 약 2천명을 대상으로 NFT 학위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DID 신원인증 및 자격증명 등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후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연동을 통해 온라인으로 학위증 등의 확인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¹⁶⁰⁾

158) "세상에 하나뿐인 프로필 만든다" 라인이 카카오보다 먼저 도입한 '이 기능'은(매일경제, 2022.7.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7/602975/>

159) 졸업장·성적표도 대체불가능토큰으로 수여...일상 파고드는 NFT(한겨레, 2022.4.22.),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39984.html>

160) 중앙대, NFT 학위증 발급...라온화이트햇과 협력(ZDNet, 2022.6.20.), <https://zdnet.co.kr/view/?no=20220620084353>

II. NFT 분쟁사례

1. 지식재산 관련 주요 분쟁사례

1) [중국]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¹⁶¹⁾

(1) 사건개요

NFTCN의 한 사용자가 예술품 창작자의 저작권 승인 없이 예술품을 도용해 NFT를 발행한 사건에서 2022년 4월,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예술품의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NFT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만화가 마첸리(马千里)가 창작한 “나는 똥똥한 호랑이가 아니다(我不是胖虎)” 시리즈에 대한 독점적 저작권을 수여받은 치처회사(奇策公司)(이하, ‘원고’라 함)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한 이용자가 “나는 똥똥한 호랑이가 아니다” 시리즈 중 하나인 “똥똥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 NFT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플랫폼 제공자(이하, ‘피고’라 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여침해책임(우리법 상 방조책임)을 주장하며, 침해 방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¹⁶²⁾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나는 똥똥한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저작물 시리즈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며,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 시리즈 중 하나와 동일한 저작물을 “똥똥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라는 사본을 복제하여 NFT 디지털 저작물로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NFT 거래 대상은 디지털 사본 그 자체이며, 디지털 사본의 거래는 재산권의 매매에 해당한다.

둘째, NFT로 거래에 제공하도록 이용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원본이나 복제본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셋째, 따라서 NFT 거래 행위는 현실 복제물을 수반하는 발행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리 저작권법 상 전송에 해당하는 중국 저작권법의 정보네트워크전파(信息网络传播权)행위로 보아야 한다.

161) 김기현, 항저우 인터넷법원, 중국 첫 NFT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5.13.

162) 판결의 사실관계는 서새남,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플랫폼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 인정, 저작권동향 2022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5.18.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넷째,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저작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전송권) 침해행위가 된다.

다섯째, NFT 플랫폼은 거래대상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이 있으며, 수수료(Gas Fee)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섯째, 따라서 NFT 플랫폼 제공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기여침해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항저우인터넷법원은 피고가 NFT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유무와 침해 등에 대한 심사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의 기여침해책임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해당 NFT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고 원고에게 4,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판결은 NFT 플랫폼에서 디지털 저작물이 거래되는 경우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침해책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NFT 플랫폼 제공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판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림 35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센터뉴스(2022) >

(2) NFT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저작물과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

① 디지털 사본의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준물권으로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22조).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 역시 물건이 아니며 디지털 사본에 대한 물권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권리가 있는 경우 재산권의 인정은 가능하므로, 거래대상인 NFT 디지털 사본의 재산권은 인정될 수 있다.

② 디지털 사본 거래의 법적 성격

NFT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사본은 물건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디지털 사본의 소유권의 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NFT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거래하기 위해 거래행위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면, 전시권이나 발행권은 유체물을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NFT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거래하는 경우 침해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

③ 대상판결의 의의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작권법의 해석론으로 NFT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제공한 자에게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대상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NFT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을 거래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NFT 플랫폼제공자의 방조책임¹⁶³⁾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이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의 방조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음을 전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2조 이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설령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이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원칙이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확립된 바 있어 이를 2003년 개정으로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한 것인데,¹⁶⁴⁾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이 아닌, 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형사상 방조죄 또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2010년 대법원 판결¹⁶⁵⁾로부터 줄곧 인정되어 온 것인데, 판례는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

163) 정진근, NFT 등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2-1호, 한국법제연구회, 2022. 2. 28. 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164) 안갑철·정완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제27권 4호, 한국비교법학회, 2020, 172쪽.

16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판결.

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¹⁶⁶⁾에서는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 후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정범의 범죄행위가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논쟁의 초점은 책임제한의 요건으로 옮겨갔다. 2019년 대법원¹⁶⁷⁾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위의 링크행위의 판례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요건이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6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

167)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③ NFT 플랫폼제공자의 방조책임 인정 여부

그렇다면, NFT 플랫폼 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범위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NFT 플랫폼 제공자의 관리·통제 범위는 기존 웹하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NFT의 기반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은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네트워크에의 참여와 탈퇴 간에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므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평가될 수 있으며, 다수의 거래참여자가 원장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저장할 수 있음으로 인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⁶⁸⁾ 즉, NFT와 블록체인은 플랫폼의 탈중앙화를 기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념상 어폐가 있다. 일례로 라리블처럼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크로스(Cross)’에서 지난 1월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술작가 그룹인 ‘BCA(BlockCreatArt)’는 당시 “크로스에 올라온 작품들 중 상당수가 무단 도용된 작품들”이라며 총 58개의 NFT를 거래소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크로스는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응수한 바 있다.¹⁶⁹⁾

특히, NFT 플랫폼은 저장공간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 저장소로서 분산형 파일 시스템(InterPlanetary File System, 이하 ‘IPFS’라 함)¹⁷⁰⁾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NFT 플랫폼이 이용하는 표준인 ERC-721, ERC-1155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가 없다.¹⁷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NFT 플랫폼 제공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침해사실을 인지한 후 NFT 플랫폼 제공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제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 판단을 위해 앞서 설명한 NFT 거래와 관련된 3개의 계층 구조를 토대로 NFT 플랫폼 사업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가장 하위의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참여자의 합의에 의

168) 박민정·채상미·이명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 Management 25(2), 2018, 136쪽.

169) “무단 도용에 속수무책... NFT 거래소는 저작권 ‘무덤’”, 국민일보 2021. 06. 04일자.

170) IPFS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분산된 P2P 파일 시스템으로, IPFS를 사용하면 P2P 파일 공유를 통해 분산 방식으로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수신할 수 있음

171) 정진근,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112쪽 및 122쪽 참조.

하지 않는 한 플랫폼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는 NFT 플랫폼 제공자 역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이 없다. 이는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속성에 의한 것이다.

둘째, 마켓 또는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이 침해된 게시물에 연결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삭제할 수 있다. 이러한 삭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에 참여한 노드들에 저장되어 있기는 하나, 서비스 계층에서의 서비스 또는 상품의 삭제는 새로운 참여자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한다. 새로운 참여자가 되려는 자들이 당해 서비스 또는 상품의 검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NFT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콘텐츠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은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의 관리·통제 권한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NFT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하는 저장소에 복제되어 있다면 NFT 플랫폼 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외부저장소로서 IPFS와 같은 저장소에 게시물에 복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NFT 플랫폼 제공자의 관리·통제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NFT와 관련된 ERC-721 규약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IPFS의 API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IPFS의 시스템 구조에서 IPFS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NFT 플랫폼은 IPFS와 같은 외부의 분산형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 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중간계층인 서비스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이 침해된 게시물에 연결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링크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 및 효과를 갖는다. 즉, 서비스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하위계층인 블록체인 계층과 상위계층인 콘텐츠 계층에서 NFT 플랫폼 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NFT 플랫폼에서 불법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NFT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 계층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게시물에 연결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삭제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NFT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하는 저장소에 복제되어 있다면, 저장소에 복제된 저작물의 삭제행위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4) 대상 판결의 시사점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의 판결은 NFT 거래 대상과 거래행위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NFT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NFT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저작권법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이 없는 중국 저작권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플랫폼이 저작물 디지털 사본의 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생태계를 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해석론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에르메스 vs. 메종 로스차일드¹⁷²⁾

(1) 사건개요

메종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작가가 에르메스의 ‘메타버킨(MetaBirkin)’ NFT 컬렉션을 판매한 것에 대해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2022년 1월,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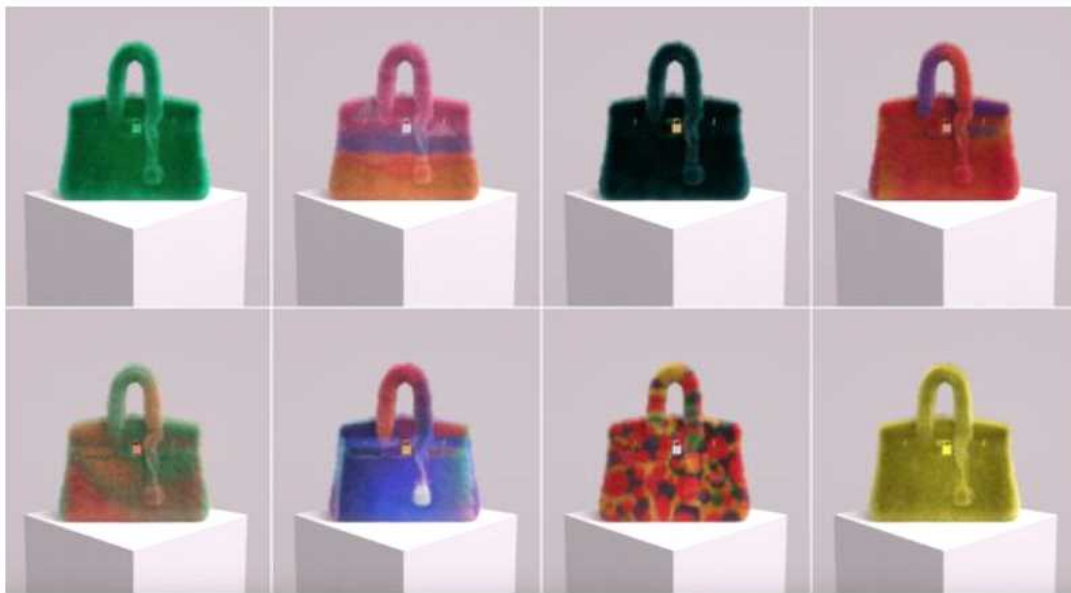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의 행위가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에르메스가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고급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로스차일드는 모피로 덮은 메타버킨즈 NFT 아트를 창작한 것은 에르메스가 고가의 가죽 가방을 제조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에르메스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각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에르메스는 이런 주장에 대해 메타버킨즈라는 명칭은 단순한 작품 제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NFT를 식별하고 출처를 나타내는 수단, 즉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는 점, 버킨백의 식별력이 높다는 점, 실제 혼동의 사례가 있다는 점(실제 엘르 등 유명 패

172) "가상운동화 팔지 마" 화난 나이키...불붙는 NFT 저작권 분쟁(중앙일보, 202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859>

선 잡지들이 에르메스가 로스차일드와 협업하여 버킨백을 이용한 NFT를 발행했다는 기사를 게재), 에르메스가 향후 NFT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2022년 5월 18일, 법원은 로스차일드의 디지털 이미지 생성 및 판매가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일 수 있으므로,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의 균형을 위해 Rogers test¹⁷³⁾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로스차일드의 각하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로스차일드가 이미지를 인증하기 위해 NFT를 사용한다고 해서 Rogers test의 적용 가능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⁷⁴⁾

그림 36 로스차일드가 제작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



〈 출처: 중앙일보(2022)¹⁷⁵⁾ 〉

(2) 사건검토

해당 사안을 국내법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173) Rogers test의 요건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 사용이 (1) 예술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2) 작품의 출처 또는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오인하도록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Rogers test는 명백하게 표현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사용

174) In the bag (for now): Hermès survives motion to dismiss in MetaBirkin NFT lawsuit(LEXOLOGY, 2022.6.1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14effd9-0466-42fb-a817-1bb62a00e6aa>

175) "가상운동화 팔지 마" 화난 나이키...불붙는 NFT 저작권 분쟁(중앙일보, 202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859>

우선 에르메스는 ‘BIRKIN’(상표등록 제40-0594299) 및 해당 버킨백의 형상에 대한 도형상표(상표등록 제40-1601036호)의 권리자이므로,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 NFT를 발행한 행위가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디지털 미술 작품 NFT의 명칭으로 ‘Birkin’을 사용한 것과 해당 작품에 위 도형상표와 동일·유사한 가방의 형태를 사용한 것이 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 등(제18류)과 위 디지털 아트 작품이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① ‘Birkin’을 디지털 아트 작품 NFT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책이나 연극 등의 제목은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MetaBirkins라는 명칭은 버킨백을 그린 작품에 대한 제목 내지 설명이라고 이해되므로, 로스차일드가 위 등록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해당 작품에 버킨백 도형상표와 동일·유사한 가방의 형태를 포함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의 객체가 되는 요소들이 해당 작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상표적 사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나아가 상품의 동일·유사성과 관련하여서는, 위 등록상표들이 현실 상품만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 미술 작품 NFT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유사 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유명 브랜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존재함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메타버킨 NFT를 발행한 행위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목 및 나목 소정의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 파목 소정의 성과도용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동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¹⁷⁶⁾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고, ②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와 혼동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에르메스 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최근의 판례 사안에서 법원은

176)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버킨백이 국내에서 핸드백 상품과 관련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¹⁷⁷⁾한 바 있다. 또한, 혼동가능성은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메타버킨 NFT와 버킨백의 출처 혼동가능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이어서 메타버킨 NFT가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¹⁷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버킨백의 형태가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앞서 본 관련 판례에서는 이를 부정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저명상표 희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목 소정의 성과도용행위¹⁷⁹⁾는 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②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위 관련 판례에서도 버킨백의 형태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고, 메타버킨 NFT가 버킨백을 이용한 방법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 NFT를 발행한 행위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미국] 나이키 vs. 스타엑스

(1) 사건개요

온라인 리셀 플랫폼 스타엑스(StockX)가 허가 없이 나이키 신발의 이미지를 NFT로 제작해 판매한 것에 대해 나이키는 2022년 2월, 뉴욕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나이키는 스타엑스의 ‘볼트NFT(Vault NFT)’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

17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178)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79)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스탁엑스는 공정이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볼트NFT는 스탁엑스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실물 운동화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¹⁸⁰⁾ 또한,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NFT가 나이키 제품을 추적하는 디지털 영수증으로 잘못 표현되고 있으며, 나이키 상표와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가상제품으로, 실물 운동화에 대한 권리 외에도 스탁엑스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탁엑스는 현재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착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소유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자사의 NFT가 물리적 제품 거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촉진하는 방법일 뿐이며, NFT 판매 페이지에 스탁엑스의 상표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다른 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원칙(권리소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¹⁸¹⁾

한편, 스탁엑스는 실제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을 스탁엑스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NFT로 한다는 개념으로, 운동화 리셀(상품을 옷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것)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탁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 모델로,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림 37 스탁엑스에서 거래되는 나이키 제품의 ‘볼트NFT’



< 출처: 중앙일보(2022)¹⁸²⁾ >

180) "가상운동화 팔지 마" 화난 나이키...불붙는 NFT 저작권 분쟁(중앙일보, 202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859>

181) Digital Good v. Digital Receipt: The Dispute Over StockX's Use of Nike Trademarks in NFTs(JDSUPRA, 2022.5.10.),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gital-good-v-digital-receipt-the-7074394/>

182) "가상운동화 팔지 마" 화난 나이키...불붙는 NFT 저작권 분쟁(중앙일보, 2022.2.6.),

2022년 5월 10일, 나이키는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스탁엑스 플랫폼에서 4개의 위조 신발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⁸³⁾

(2) 사건검토

해당 사안에서 스탁엑스는 나이키가 판매한 실물 운동화와 연계하여, 해당 운동화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NFT로 발행한 것 이외의 쟁점은 없다고 가정할 때, 국내법에 비추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NIKE’(상표등록 제40-0710438) 및 나이키의 로고(상표등록 제40-0701416)는 모두 국내에 상표등록 되어 있고, 디지털 콘텐츠 등과 관련된 상품(제9류)을 지정해 상표등록을 받았으므로 이를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하여 상품화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나이키의 실물 운동화를 적법하게 구입한 뒤 재판매함에 있어서 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물품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 이후 해당 상품의 사용, 양도 등 행위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나이키로부터 실물자산인 운동화를 구매한 스탁엑스가, 운동화 자체가 아닌, 운동화에 대한 ‘NFT’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므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위 NFT는 결국 실물 운동화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NFT 발행이 나이키 운동화의 재판매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여지도 있고, 실물 운동화를 판매함으로써 그에 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NFT의 발행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어떤 부가적인 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나이키가 주지·저명한 상품·영업표지이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큰 의문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수요자들로서는 해당 NFT와 나이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짐작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859>

183) Nike escalates StockX NFT dispute; Hong Kong Customs in major seizure swoop; PONY portfolio sale - news digest(WTR, 2022.5.13.),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article/nike-escalates-stockx-nft-dispute-hong-kong-customs-in-major-seizure-swoop-pony-portfolio-sale-news-digest>

가능성이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상품·영업주체 혼동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스타엑스의 볼트NFT 발행이 사실상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체화된 가치와 명성을 무단히 이용하려는 의도와 무관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식별력 손상 및 성과도용도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스타엑스의 NFT 발행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및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스타엑스의 NFT 발행 행위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표권 침해의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4) [미국] 펄프픽션 NFT 사건

(1) 사건개요

할리우드 영화사 미라맥스는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감독이 1994년 개봉한 영화 ‘펄프픽션(Pulp Fiction)’의 각본과 미공개 장면 등을 NFT로 판매하려는 것은 계약위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라며 2021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⁸⁴⁾

1993년 타란티노 감독은 미라맥스와 영화 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계약을 체결했고, 타란티노 감독은 미라맥스에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에 대해 광범위한 사용권 (all rights (including all copyrights and trademarks) in and to the Film (and all elements thereof in all stages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now or hereafter know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 to distribute the Film in all media now or hereafter known (theatrical, non-theatrical, all forms of television, home video, etc.)...)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픽션’의 자필로 쓴 각본 초고를 디지털 이미지로 구성한 NFT 컬렉션을 출시했고, 해당 NFT는 오픈씨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미라맥스는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타란티노 감독은 각본에 대한 모든 인쇄 및 출판권을 자신이 보유했기 때문에 NFT 발행 및 마케팅,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⁵⁾

184)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and Visiona Romantica, Inc.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o. 2:21-cv-08979)

185) Pulp Fiction NFT Lawsuit (Miramax V. Tarantino, Et Al.): A Preview Of Coming Attractions(Forbes, 2022.7.25.), <https://www.forbes.com/sites/legalentertainment/2022/07/25/pulp-fiction-nft-lawsuit-miramax-v-tarantino-et-al-a-preview-of-coming-attractions/?sh=30246ae36ca2>

그림 38 타란티노의 펄프픽션 NFT



< 출처: ZDNet(2021)¹⁸⁶⁾ >

(2) 사건검토

해당 사안을 국내법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미라맥스는 국내에서 영문상표 ‘Pulp Fiction’을 디지털 콘텐츠 등과 관련된 상품(제9류)을 지정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제3자가 NFT와 관련하여 위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라맥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 타란티노에게 저작권 중 일부 권리¹⁸⁷⁾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밖에 상표권에 관한 유보조항이 없는 이상 타란티노가 다양한 형태의 NFT를 발행하며 무단히 ‘Pulp Fiction’을 포함하는 상품명을 붙인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NFT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명칭이 단지 어떤 작품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에는 앞서 에르메스 및 나이키 사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화의 각본이나 영상물 등에 대한 NFT 발행은 해당 저

186) "펄프픽션 NFT 팔지마"...미라맥스, 쿠엔틴타란티노에 소송(ZDNet, 2021.11.18.),

<https://zdnet.co.kr/view/?no=20211118095737>

187) "soundtrack album, music publishing, live performance, print public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creenplay publication, 'making of' books, comic books and novelization, in audio and electronic formats as well, as applicable), interactive media, theatrical and television sequel and remake rights, and television series and spinoff rights."

작물에 관한 복제, 전송 등의 이용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그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전송권 등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저작권 중 일부만이 타란티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계약 해석, 즉 당사자간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NFT 발행이라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가 타란티노에게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타란티노에게 유보된 ‘출판권’에 NFT 발행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해당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등 권리 일체가 미라맥스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있고, 타란티노에게는 저작권 중 일부 권리들만이 제한적·열거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타란티노가 미라맥스의 허락 없이 펄프픽션과 관련된 NFT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타란티노의 펄프픽션 NFT 발행은 미라맥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5) [미국] 릴야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

(1) 사건개요

2022년 1월 27일, 래퍼 릴야티(Lil Yachty)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FT 플랫폼 Opolous가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음악스트리밍에 대한 로열티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NFT를 발행한다는 홍보를 통하여 약 650만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불공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⁸⁸⁾

188) Lil Yachty hits music NFT platform Opolous with trademark and right of publicity suit(FRANKFURT KURNIT KLEIN & SELZ PC, 2022.1.29.), <https://ipandmedialaw.fkks.com/post/102hhhm/lil-yachty-hits-music-nft-platform-opolous-with-trademark-and-right-of-publicity>

(2) 사건검토

Opulous가 유명 래퍼 Lil Yachty와의 협업, 로열티 수익 분배 NFT 발행을 거짓으로 홍보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¹⁸⁹⁾에 따른 유명인 등의 식별표지 무단 사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Opulous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거짓 홍보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펀드를 조성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것이다.

6) [미국] BAYC 패러디 사건

(1) 사건개요

2022년 6월 24일, BAYC(Bored Ape Yacht Club) NFT를 제작한 유가랩스(Yuga Labs)는 BAYC NFT를 패러디한 'RR/BAYC' NFT를 제작하여 발행한 Ryder Ripps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⁹⁰⁾ 유가랩스 측은 Ryder Ripps가 소비자를 속여 RR/BAYC라는 위조 NFT를 1,00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유가랩스가 BAYC NFT를 판매함에 있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RR/BAYC NFT를 광고하고 판매하였는데, 이 상표 역시 유가랩스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RR/BAYC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Ryder Ripps는 패러디라고 주장하며 예술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¹⁾

189)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90) Yuga Labs, Inc. v. Ripps et al 2:2022cv04355 (C.D. Cal.).

191) Fake Bored Ape Yacht Club NFTs Sold by Artist, Yuga Labs Claims(Bloomberg Law, 2022.6.28.),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fake-bored-ape-yacht-club-nfts-sold-by-artist-yuga-labs-claims>

(2) 사건검토

해당 사안을 국내법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상표법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유가랩스가 국내에 'BAYC'라는 상표를 출원하긴 했지만 아직 등록 전이기 때문에 Ryder Ripps가 'RR/BAYC'라는 이름으로 NFT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표권 침해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등록될 경우를 상정하여 살펴보면, 'RR/BAYC'와 'BAYC'는 요부가 'BAYC'로 동일하고 전체적으로도 유사하여 상호 유사한 상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록 'RR/BAYC'가 디지털 아트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되었긴 하나, 그 사용 양태를 보면 각 작품별로 'RR/BAYC'라는 제목 뒤에 일련번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용 출처표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즉 상표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Ryder Ripps의 위 NFT 발행은 유가랩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BAYC NFT의 각 디지털 아트 작품들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일부만을 변형할 경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복제권과 전송권 등 침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RR/BAYC NFT의 각 작품들은 BAYC가 갖고 있는 창작적인 요소, 주된 특징들은 대체로 그대로 모방한 채 부수적인 요소들에 사소한 변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Ryder Ripps가 주장하는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은 국내 관계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이 아니고, RR/BAYC NFT의 경우에는 BAYC NFT 작품들과 대비하였을 때 원작의 창작적 특징들을 상당부분 모방한 점, 원작과 별개로 그것만이 갖는 독립된 창작적인 가치를 찾기가 어려운 점, 상업적으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적용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Ryder Ripps의 위 NFT 발행은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다목 소정의 행위유형(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과 관계된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해당 상품·영업표지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데, 법원은 주지의 정도에 관하여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입증의 문제이나, 설령 주지성의 기준 범위를 NFT 거래자 내지 수요자들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지성 나아가 저명성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과도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도 가능한데, BAYC

NFT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Ryder Ripps가 이를 RR/BAYC NFT에 이용한 방식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성과도용행위는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Ryder Ripps가 고의적으로 BAYC NFT와 유사한 형태의 RR/BAYC NFT를 발행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BAYC NFT와 동일하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NFT로 착오하여 이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¹⁹²⁾을 얻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Ryder Ripps의 RR/BAYC NFT 발행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7) [미국] 오픈씨의 ENS 도메인 분쟁 사건

(1) 사건개요

2022년 7월, 오픈씨는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후, RIAA로부터 신고된 주요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 Atlantic Records, Capitol Records, Warner Music Group, Palophone, Virgin Music 등) 및 개인(Sony Music Entertainment CEO Rob String, Columbia Records CEO Ron Perry, Alamo Records CEO Todd Moscovitz, UMG CEO Lucian Grainge 등) 등을 지칭하는 ENS(Ethereum Domain Name Service)¹⁹³⁾ 도메인 목록을 삭제하였다.

RIAA는 최근 소비자들이 아티스트가 보증하는 컬렉션을 구매했다고 믿도록 하는 사기 사이트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RIAA.eth, universalmusic.eth, atlanticrecords.eth, mitchglazier.eth(RIAA CEO 이름), robstringer.eth(Sony Music CEO 이름) 등 문제가 되는 도메인 이름 판매는 상표의 가치를 희석화시키고, 소

192)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193) ENS는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상에 사용하는 복잡한 코인 전송용 주소(예:0x247C2e8976f6f18C6aCE1654dfb86E3Bd0d14)를 알기쉬운 주소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임

비자들로부터 혼동가능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그러한 도메인이름의 판매는 사이버 스쿼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⁴⁾

(2) 사건검토

해당 사안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상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동 사안을 국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비추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② 상표적으로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상표가 현실 상품만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다면(① 관련), 해당 상표를 ENS 도메인에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표적 사용 여부와 관련(② 관련)하여서는, ENS 도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하는 이더리움 지갑주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하여 사용되어 출처 표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¹⁹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¹⁹⁶⁾ 그러나 동조 제4호는 여기서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¹⁹⁷⁾는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

194) RIAA Takes Down ‘Infringing’ .ETH Domain Auctions from OpenSea(2022.7.14.),

<https://torrentfreak.com/riaa-takes-down-infringing-eth-domain-auctions-from-opensea-220714/>

19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196)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197)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아목 소정의 ‘도메인이름’에 이더리움 지갑주소를 대체하는 개념인 ENS 도메인 이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위 아목이 신설되기 이전에 법원은, 도메인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도메인을 선점하고 그 양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사이버스쿼팅 행위는 그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및 다목 소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¹⁹⁸⁾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ENS 도메인에 타인의 상표나 성명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목 및 나목,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목 소정의 성과도용행위 역시,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그저 타인의 상표나 성명 등이 포함된 ENS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다소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ENS 도메인에 타인의 상표나 성명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식재산 관련 기타 분쟁사례

1) [미국] 사이버 핑크스 NFT 컬렉션 사건

질리안 요크(Jillian York)는 오픈씨에 거래 품목으로 등록된 NFT 컬렉션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작품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였다. 요크는 NFT 발행을 허락한 적 없으며, 예술 작품을 NFT로 무단 발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NFT를 발행한 히테쉬 말비야(Hitesh Malviya)는 요크를 포함한 다른 아티스트에게 연락하여 문제의 NFT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19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그림 39 말리야가 발행한 NFT 컬렉션



< 출처: 오픈씨 >

2) [미국]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 NFT 사건

유명 캐릭터 ‘개구리 페페’를 테마로 한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는 랜덤으로 생성된 7,000개의 개구리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 NFT 프로젝트로, 약 400만 달러 상당의 NFT가 판매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원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청하자, 오픈씨는 관련 NFT 7,000개를 삭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NFT를 구매한 1,9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0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 NFT



< 출처: 서울경제(2021)199 >

199) 슬픈 개구리 NFT 삭제 당해... '개구리 페페' 저작권 침해 주장(서울경제, 2021.8.18.),

3) [미국] 퀴니 NFT 발행 사건

디지털 아티스트 퀴니(Qinni)가 사망한 뒤, NFT 소셜 마켓 앱인 트윈치(Twinci)에서 SNS에 공개된 퀴니의 작품이 NFT로 거래되었다. 이에 유족은 NFT 발행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트윈치 측에 항의하였고, 트윈치는 고인을 사칭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NFT 작품을 거래 목록에서 모두 제거했다.

4) [한국] 이종섭·박수근·김환기 화백 작품 경매사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황소(이종섭)’, ‘두 아이와 두 엄마(박수근)’, ‘전면점화-무제(김환기)’ 작품의 원본을 디지털화하여 NFT 작품 경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진위 논란 및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 2021년 6월, 경매를 취소하였다.

환기재단과 박수근 화백의 유족 등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삼는 가운데,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까지 발생되자,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작품 진위와 저작권 소유의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경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림 41 두 아이와 두 엄마, 황소,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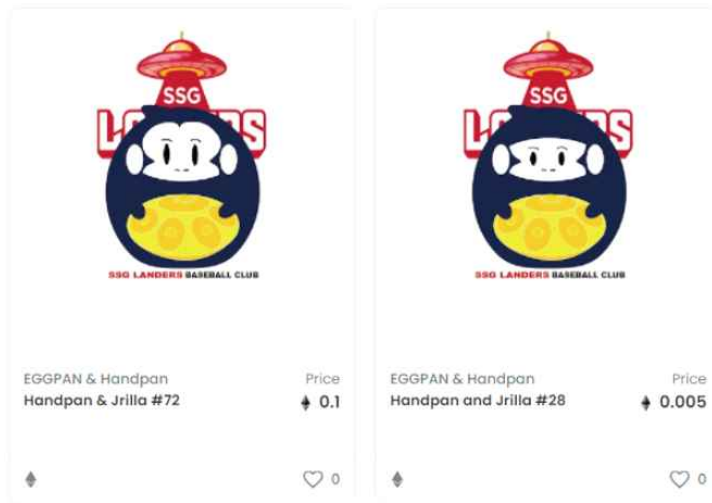
< 출처: 아이티비즈(2021)200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JO41W3>
200) 워너비인터내셔널, ‘박수근·이종섭·김환기’ 화백 작품을 NFT로 출품, (아이티비즈, 2021.5.31.),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32>

5) [한국] 신세계푸드 제이릴라 사건

오픈씨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신세계푸드 캐릭터인 제이릴라를 도용한 디지털 작품을 판매하였다. 오픈씨에 민팅된 제이릴라 NFT는 0.1이더리움(약 38만원)에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세계그룹의 야구 구단인 SSG랜더스의 엠블럼을 활용한 디지털 작품도 1이더리움(3153.23달러, 한화 378만원)에 판매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릴라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한 신세계푸드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현재 미국 측 특허법인을 통해 오픈씨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²⁰¹⁾

그림 42 오픈씨에 기재된 제이릴라 관련 NFT



< 출처: 오픈씨 >

6) [한국] 라이언게임즈 v. 공유게임즈

라이언게임즈의 대표작 ‘소울워커’ 지식재산으로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를 개발했던 중국의 공유게임즈는 ‘소울리본(SOUL REBORN)’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게임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NFT 카드 및 게임 아이템 등을 사전 판매하였다.

이번 라이언게임즈와 공유게임즈의 분쟁은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NFT, P2E(Play and Earn) 개념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 사례로, 공유게임즈는 ‘소울워커 아카데미아’가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NFT, P2E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P2E, NFT 게임은 게임 콘텐츠를 즐기면서 이용자들이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는 개념이 더해지는 것일뿐, 콘텐츠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플

201) 38만원에 판매 중인 '정용진 캐릭터 NFT'...신세계 "특허법인 통해 삭제 요청"(매일경제, 2022.2.2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14653/>

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라이언 게임즈는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NFT, P2E를 도입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²⁰²⁾

7) [한국] ‘미스터 미상’ 작품에 대한 페이크 민팅 사건

국내 유명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의 작품이 오픈씨에서 도용되어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용된 작품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82이더리움(약 3억 4000만원)에 팔렸는데 익명 신원자가 원본 파일을 복사해 다시 NFT로 민팅한 것이다. 다만, 작품 도용 사실이 플랫폼에 조기에 신고되어 실질적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²⁰³⁾

그림 43 페이크 민팅의 대상이 되었던 미스터 미상의 #07. Subway station



< 출처: 서울신문(2021) >

202) 작자 허락없이 NFT, P2E 게임 만든다고? IP 계약 주의보(게임동아, 2022.2.16).
<https://game.donga.com/102167/>

203) 폭발적으로 커지는 NFT거래 시장... 탈세·저작권 침해 가능성(서울신문, 2021.9.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3004001>

8) [한국] 이건용 화가의 퍼포먼스 영상 NFT화 사건

2021년 12월, 공유경제 미술품 투자기업 피카프로젝트는 이건용 화가의 작업 모습에 대한 NFT(영상 1편, 사진 2개) 출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건용 화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작품과 퍼포먼스 영상을 NFT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작가의 그림을 동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팔면 저작권 위반이지만, 작가가 아산갤러리에서 작업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NFT로 제작하려고 했던 것이어서 저작권이 아산갤러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오히려 작가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건용 화가 관련 NFT 출시는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⁰⁴⁾

3. 기타 NFT 관련 분쟁사례

1) [영국] 보스 뷰티즈 절도 사건

여성 권리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NFT 컬렉션 ‘보스 뷰티즈(Boss Beauties)’ 절도 사건에서 2022년 5월, 영국 고등법원은 NFT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NFT를 재산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다.

우먼 인 블록체인 토크(Women in Blockchain Talks)의 설립자인 라비니아 오스본(Lavinia Osbourne)은 보스 뷰티즈의 NFT 컬렉션 2개의 작품을 디지털 지갑에서 도난당했으며, 도난당한 작품이 오픈씨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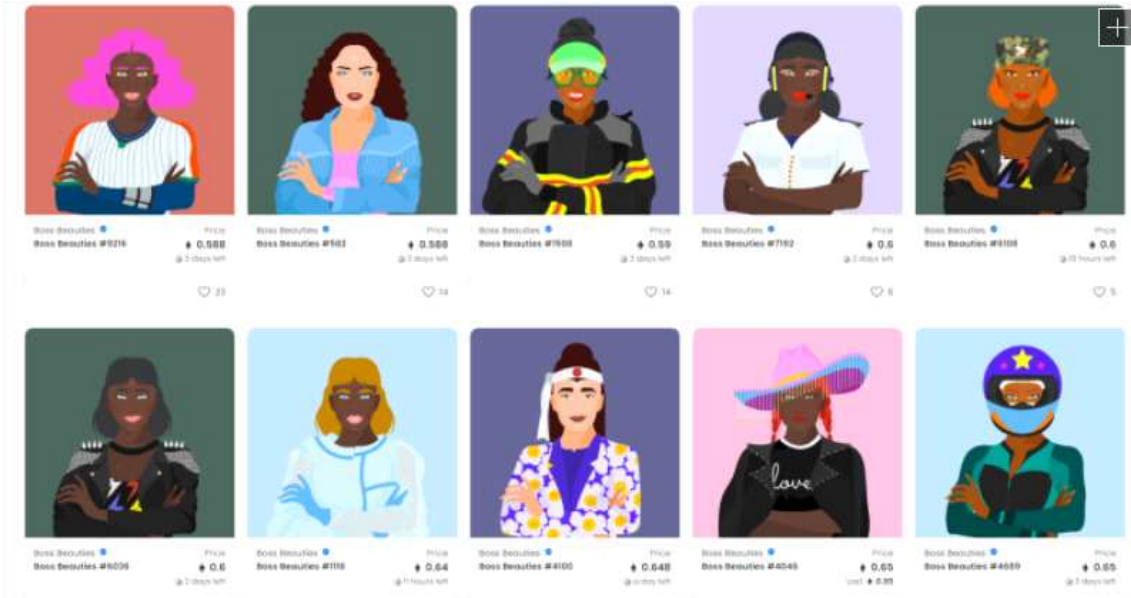
영국 고등법원은 NFT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오픈씨의 운영사인 오존 네트워크(Ozone Networks) 계정에 금지명령을 내려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오픈씨에게 도난당한 NFT를 소유한 두 계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 판결에 따라, 오픈씨는 보스뷰티즈 680과 691 NFT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기초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는 구매 당시 계약 내용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계약법과 지식재산권법이 적용될 것이며 관련 업계가 NFT 시장에서의 각종 사기 범죄에 대처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²⁰⁵⁾

204)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품 NFT 논란...”작가 동의도 안 구해(연합뉴스, 2021.12.5.).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5045500005>

205) [NFT 기상도] “NFT는 사유 재산”...재산권 보호 길 열리나(뉴스드림, 2022.5.20.),
<http://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5>

그림 44 보스뷰티즈 NFT 컬렉션



< 출처: Blockstreet(2022)²⁰⁶⁾ >

2) [싱가포르] BAYC NFT 판매 금지 사건

BAYC NFT #2162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2022년 5월, 싱가포르 법원은 NFT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Janesh는 NFTfi 플랫폼을 통해 BAYC NFT #2162을 담보로 제공하고 chefpierre.et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익명의 NFT 수집가(이하, chefpierre)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chefpierre는 Janesh가 대출상환일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자, BAYC NFT #2162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Janesh는 chefpierre가 대출 연장 계약에 위반하여 NFT를 압류하였으며, 해당 NFT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NFT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줄 것을 청구하였다.²⁰⁷⁾

이에 싱가포르 법원은 NFT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2162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2162의 판매 및 소유권 이전을 중단하라고 판결하였다.

206) 영국, NFT 절도 사건에 '법적 재산' 판결, Blockstreet(2022.5.19.),

<http://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2050911031324362>

207) OpenSea Disables Trading for Bored Ape #2162 Amid Ongoing Court Case in Singapore(nftgators, 2022.5.20.),

<https://www.nftgators.com/opensea-disables-trading-for-bored-ape-2162-amid-ongoing-court-case-in-singapore/>

그림 45 BAYC #2162



< 출처: THE BLOCK(2022) >

3) [한국] 게임물관리위, 파이프스타즈 심의 거부 사건

게임물관리위는 파이프스타즈 NFT 거래 시스템에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했으나,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파이프스타즈 서비스를 금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파이프스타즈는 이용자들이 게임내 콘텐츠를 플레이하여 NFT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파이프스타즈 이용자는 게임에서 벌어들인 가상자산을 타 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게임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처분해 돈을 벌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²⁰⁸⁾

208) 스카이피플, 블록체인 NFT 게임 재개...가처분 소송 승소(파이낸셜뉴스, 2021.6.24.),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057419285>

제5장 NFT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

I. 개요

NFT에서 야기되는 지식재산권 쟁점은 대체로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한다. 상표 분야에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관계가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이 관계가 있고,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측면에서 NFT의 쟁점은 대체적으로 보호대상과 규제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NFT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상은 상표와 디자인, 글자체, 표지, 성과, 저작물 등이다. 상표는 상표법 제2조에 따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글자체는 동법 제2조에 따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별의 글자꼴로 정의된다.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에 따라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상표의 희석, 인적 식별표지 등에 대하여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NFT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은 상표권 및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NFT 플랫폼제공자를 통해 NFT의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NFT 플랫폼제공자의 책임 문제 역시 관련이 없을 수 없다.

II. NFT 발행 · 거래 과정에서의 상표권 쟁점

1. 문제제기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 관련 문제에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NFT 관련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NFT로 발행하면서 해당 상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상표권과 관련한 NFT 분쟁 사례로, 미국에서 메종 로스차일드가 제작한 ‘메타버킨’ NFT로 인해 에르메스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데 대해 메종 로스차일드는 수정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사건, 스타엑스가 나이키 신발의 이미지를 활용한 NFT로 인해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데 대해 스타엑스는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원칙을 주장한 사건, 신세계푸드가 보유한 상표권에 사용된 캐릭터인 제이릴라를 도용해 NFT를 발행한 사건 등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분쟁 사건 외에도 오픈씨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델, 보잉, 버라이즌 등의 상표권이 사용된 NFT가 판매되고 있으며, 아마존, 디즈니, 아디다스, 벤틀리, 라코스페, 나이키, 넷플릭스 등 유명 브랜드는 로고가 그대로 NFT화되어 판매되고 있거나, 픽셀로 제작된 NFT가 판매되고 있는 등²⁰⁹⁾ NFT 발행 및 거래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NFT의 발행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89조)”고 하여,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적극적 효력),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209) OpenSea: how trademark infringement is rampant on the biggest NFT marketplace(WTR, 2022.6.20.),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article/opensea-how-trademark-infringement-rampant-the-biggest-nft-marketplace>

제105조 제1항)”고 하여 금지권을 규정하고 있다(소극적 효력).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으로서의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그 사용을 금지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이처럼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하며, 정당한 권원이 없어야 하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3. 상표적 사용 여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NFT를 발행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의 사용 즉,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11호). 우리 법원은 “특정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① 상품과의 관계, ②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의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③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④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¹⁰⁾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

210) 대법원 2003. 4. 11. 선고2002도445 판결.

장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²¹¹⁾고 보고 있다. 즉,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NFT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단순히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²¹²⁾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현실 상품만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를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우리 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에 따를 경우 품질, 형상 등이 상이하여 상표법상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상표가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제9류)처럼 가상상품이 속하는 디지털 콘텐츠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의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해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경우도 상표적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도 “상표법 제66조(現, 제10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²¹³⁾고 판시한 바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나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NFT를 홍보하는 인터넷화면, 인터넷주소창 등에 타인의 등록 상표를 게시하는 행위가 광고적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4.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①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

21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212)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21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및 ②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③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며(상표법 제90조 제1항),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저촉되거나 성과도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상표법 제92조). 또한, 판례에 따라 권리가 소진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도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NFT의 활용범위가 디지털 콘텐츠 뿐 아니라, 운동화, 와인, 명품 등 실물자산의 유통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자와 실물자산을 연계한 NFT를 활용한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물자산과 연계되어 NFT로 발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권리소진의 원칙은 상품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상표권자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완전히 행사된 것으로 소진되고 이후 상표권자는 그 상품이 추가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법원 역시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²¹⁴⁾고 판시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소유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²¹⁵⁾

이처럼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NFT로 발행하여 현실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활용하는 경우 권리소진에 해당할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상품간 밀접성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보호해야 하는지,²¹⁶⁾ 상표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1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215) 상표권 계약위반과 권리소진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2020.9.10.),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4085>

216) 특허청,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2022.3.24.

III. NFT 발행 · 거래 과정에서의 디자인권 쟁점

1. 문제제기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관련 문제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서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하에서는 NFT의 발행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디자인권의 효력 및 침해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디자인권의 효력 및 침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고 하여, 디자인권자만이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적극적 효력),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고 하여 금지권을 규정하고 있다(소극적 효력). 즉,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지정물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범위에 있어야 한다.

3.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구현된 디자인이 현실의 물품과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와 실시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

인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유사 의미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디자인 제도의 목적, 취지에 입각하여 여러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²¹⁷⁾ 한편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유사’라 함은 2개의 디자인을 비교할 때에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이들의 결합이 표현된 디자인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²¹⁸⁾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2021)에 의하면, 물품의 유사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이때 ‘동일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 법원은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 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²¹⁹⁾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2021)에서는 동일물품을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유사물품을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도란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 목적’을, ‘기능’이란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작용 등을 말하며,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 심사실무 및 판례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을 부정경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경업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이 다른 물품과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물품혼동설, 즉 일반수요자의 물품에 대한 혼동 여부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²²⁰⁾ 따라서

217)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9, 400-402쪽.

218) 이현희, 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189쪽.

219) 대법원 2001.6.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20) 김병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5호, 2014, 212쪽.

현실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을 NFT에 연계된 콘텐츠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보호법 상의 '실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에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2021)에 의하면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화상의 형태, 용도 또는 기능의 동일·유사, 혼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화상의 형태의 유사성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유사판단기준에 따르나, 디자인등록출원된 방식은 화상디자인과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각각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이 실제적으로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동일·유사한 경우 또는 혼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화상디자인이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IV. NFT 발행·거래 과정에서의 부정경쟁행위

1. 문제제기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서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사이버스쿼팅,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성과도용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상표권과 관련한 NFT 분쟁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메종 로스차일드가 제작한 ‘메타버킨’ NFT로 인해 에르메스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데 대해 메종 로스차일드는 수정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사건의 경우, 에르메스는 상표권 침해 주장 외에도 자사가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고급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타엑스가 나이키 신발의 이미지를 활용한 NFT로 인해 나이키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데 대해 스타엑스는 공정이용 및 최초판매원칙을 주장한 사건의 경우, 스타엑스의 NFT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 NFT의 발행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사이버스쿼팅,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성과도용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1) 개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가목²²¹⁾ 및 나목²²²⁾에 의

221)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22)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한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혼동초래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²²³⁾

2) 구성요건

(1) 주지성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주지성이라고 하는데, 외국제품의 상품표지라도 무방하지만, 상표, 상호 등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사용됨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 전이라도 간행물, 광고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지성은 침해 시에 갖추어져야 한다.²²⁴⁾ 또한, 주지성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상표 등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으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주지성의 판단자료로는 상표의 사용기간, 영업의 규모나 점포의 수, 판매수량과 판매망, 광고의 종류·방법·빈도, 광고비 지출액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지성의 대상은 상품이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는 상품표지는 상품의 유통성으로 인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업표지는 영업은 특정시설 및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지성의 판단시기는 후발 경쟁자가 자기의 상표 등 표지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타인의 표지(선사용자의 표지)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후발 경쟁자의 표지가 사용에 의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하여 선사용자의 표지에 대한 역사용 금지청구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부정경쟁방지 법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23) 하홍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5-6쪽.

224) 하홍준, 상계보고서, 39쪽.

상 보호대상표지는 상표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에 의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이며, 만약 후발경쟁자의 표지 사용 전에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후발경쟁자의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의 표지 사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법적인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²²⁵⁾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²²⁶⁾고 판시한 바 있으며,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²²⁷⁾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특정 브랜드의 물품 형태나 아티스트의 인지도 등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25) 하흥준, 상계보고서, 64-65쪽.

226)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도267 판결.

227) 대법원 1996.9.6. 선고 96도139판결.

(2) 혼동행위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뿐만 아니라, 양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광의의 혼동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상품주체 본위로서 상품자체는 부차적이고, 규제대상인 상품표지에 대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동’이란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종의 상품 또는 영업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란 반드시 현실의 혼동을 초래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혼동위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유는 법은 혼동의 표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혼동의 표시행위의 결과 오인이 생기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혼동의 주체는 주지성의 주체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시의 혼동은 상품자체 또는 상품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협의의 혼동뿐만 아니라, 상품주체 간 경영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광의의 혼동도 포함되며, 부정경쟁방지법 상 출처의 혼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후원관계가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표시 선택의 동기, 표지에 나타난 악의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혼동에는 반드시 현실의 혼동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의 구체적 위험까지도 포함된다.²²⁸⁾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시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²²⁹⁾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

228) 하홍준, 전제보고서, 69-70쪽.

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³⁰⁾고 판시한 바 있다.

3) 사례의 적용

NFT와 연계된 콘텐츠나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식별력이 강한 표지가 사용되었다하더라도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와의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업의 다각화에 따라 다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어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후원관계의 혼동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NFT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업이나 유명 아티스트가 직접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특정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가 NFT와 연계된 콘텐츠 등에 사용되거나 연관관계 또는 후원관계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NFT 발행자와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의 주체 사이에 협업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오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킨’ NFT 컬렉션을 둘러싼 에르메스와 메종 로스차일드 간 소송에서도 에르메스는 엘르 등 유명 패션 잡지들이 에르메스가 로스차일드와 협업하여 버킨백을 이용한 NFT를 발행했다는 기사를 내는 등 실제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²³¹⁾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이키와 스타엑스 간 분쟁과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역시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엑스가 ‘볼트 NFT’를 홍보 및 판매하는 자사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광고 등에서 나이키의 등록상표 및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여 소비자들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²³²⁾고 주장하는 등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

229) 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도8459 판결.

230)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231) In the bag (for now): Hermès survives motion to dismiss in MetaBirkin NFT lawsuit(LEXOLOGY, 2022.6.1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14effd9-0466-42fb-a817-1bb62a00e6aa>

232) 나이키는 2021년 12월 13일 디지털 아트 스튜디오 RTKFT를 인수하면서 NFT 시장 진입을 시사했고 2022년 1월 18일경 “나이키 가상 스튜디오(Nike Virtual Studios)”의 출범 소식을 자사 직원들에게 전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10월 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상 물품, 즉 신발류를 나타내는 컴퓨터 프로그램(downloadable virtual goods, namely computer programs featuring footwear)”과 “신발류를 비롯한 가상 물품을 제공하는

동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저명상표 희석행위

1) 개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²³³⁾에 의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저명상표 희석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등을 하여 타인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혼동초래행위와의 차이점은 혼동초래행위가 소비자 혼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희석행위는 상표와 관련된 식별력 또는 신용(good will)을 약화시키는 희석화(dilution)²³⁴⁾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²³⁵⁾ 즉, ‘혼동초래행위’는 소정의 표지가 상품·영업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요구하지만,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출처의 혼동이나 경쟁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해석상 요구되는 소위 ‘저명성’보다는 약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지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²³⁶⁾

매장 서비스(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virtual goods, namely footwear)”를 지정상품·서비스명으로 명시한 상표 여섯 건을 출원한 시점부터 이미 나이키는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키 상표 및 운동화 이미지 도용해 NFT 출시한 온라인 리셀 플랫폼, 상표권 침해로 피소(한국디자인진흥원, 2022.3.30.), <https://www.designdb.com/?menuno=1280&bbsno=7125&siteno=15&act=view&ztag=r0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OTg5IiBza2luPSJwaG90b19iYnNfMjAxOSI%2BPC9jYWxsPg%3D%3D#gsc.tab=0>

233)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234) ‘희석화’란 상표권자의 상표와 출처의 혼동(confusion)이나 경쟁관계(competition)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유명상표의 경우 이종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유명상표의 이미지, 광고 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희석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임

235) 하홍준, 전계보고서, 6쪽.

2) 구성요건

(1) 주지성

저명상표 희석행위의 보호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를 의미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는 혼동초래행위의 주지성을 의미한다.

(2) 희석행위

희석행위는 ‘식별력 손상행위’와 ‘명성 손상행위’로 구별된다. ‘식별력 손상행위’란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를 부당하게 이종상품 또는 영업에 사용하여 당해 표지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KODAK(카메라) 상표를 피아노에 사용하는 경우, SONY(가전제품)를 초콜릿 등에 사용하는 경우, Johnnie Walker(위스키)를 담배에 사용하는 경우, Dunhill(담배)을 안경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명성 손상행위’란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를 품질이 조악하거나 저가의 상품에 사용하거나 또는 저급의 영업에 사용하여 당해 표지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예로는 Dunhill(담배)을 품질이 조악하고 저가의 안경에 사용하는 경우, 식품인 라면에 유명한 농심을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 OB(맥주)를 살충제에 사용(“젊음이 있는 곳에 OB가 있다” → “바퀴벌레가 있는 곳에 OB가 있다”)하는 경우, 4711(독일의 유명한 향수 상표)을 분뇨수거회사의 전화번호로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²³⁷⁾

즉, 저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을 감소하게 하거나, 저명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설사 이종의 상품에 사용되어 혼동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희석화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희석화의 금지를 통한 유명상표의 보호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에 따른 피해의 예방 및 치유라는 공익적 고려보다는 유명상표소유자의 유·무형의

236)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카합1488 판결.

237) 하홍준, 전제보고서, 108-109쪽.

재산상 이익의 보호 측면과 유명상표에 체화된 고객흡인력과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제 3자의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표장의 유사성, 원고 표장의 식별력의 정도, 원고 표장 사용의 배타성의 정도, 원고 표장의 인식의 정도, 피고가 원고 표장과의 연상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의 표장 사이의 실제의 연상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³⁸⁾고 판시한 바 있으며,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 상품이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이 감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주지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²³⁹⁾한 바 있다.

3) 사례의 적용

일반적으로 NFT와 연계된 콘텐츠 등에 사용된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즉 상표 희석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저명성 판단의 주체인 일반 소비자 전체에 알려져 있어야 하므로,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해,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뉴스 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당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가 그 표지를 부정한 목적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당해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표 희석화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킨’ NFT 컬렉션을 둘러싼 에르메스와 메종 로스차일드 간 소송에서도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NFT를 마케팅·판매·유통하는 과정에서 에르메스의 허락 없이 ‘메타버킨’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버킨’²⁴⁰⁾ 유명 상표 고유

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240) 에르메스는 2005년 미국 특허상표청에 ‘BIRKIN’ 상표(등록번호 2,991,927)를 등록했고 2011년에는 버킨백 특유의 외형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등록번호 3,936,105)로 등록

의 럭셔리 이미지에 편승함으로써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가 희석되었다²⁴¹⁾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이키와 스타엑스 간 분쟁의 경우에도 나이키는 스타엑스의 볼트 NFT의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되었다²⁴²⁾고 주장하는 등 저명상표 희석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사이버스쿼팅

1) 개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홈페이지 등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²⁴³⁾에 의한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할 수 있다.

‘사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상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손실 및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개정전에는 혼동초래행위 또는 유명상표 희석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²⁴⁴⁾,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241) In the bag (for now): Hermès survives motion to dismiss in MetaBirkin NFT lawsuit(LEXOLOGY, 2022.6.1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14effd9-0466-42fb-a817-1bb62a00e6aa>

242) Digital Good v. Digital Receipt: The Dispute Over StockX's Use of Nike Trademarks in NFTs(JDSUPRA, 2022.5.10.),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gital-good-v-digital-receipt-the-7074394/>

243)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역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244) “도메인 이름 ‘webplus.com’은 ‘WEB+’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고,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도메인의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상표권자는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와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²⁴⁵⁾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스쿼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 등 표지에 대해서는 당해 상표 등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영업에의 사용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제3호).²⁴⁶⁾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사이버스쿼팅 행위주체는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의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비록 상표권 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게 널리 인식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마스터 카드(MasterCard)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위 회사가 ‘mastercard.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지법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 그리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에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자들로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고,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도, 그 실질은 최초에 입력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고 판시함

245)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246) 하홍준, 전계보고서, 7-9쪽.

되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도메인이름을 빼앗으려는 행위인 역 무단점유(reverse domain name hijacking)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보호대상

사이버스쿼팅의 보호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표지이며, 이에 대한 개념은 혼동초래행위에서의 주지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로서 도메인이름의 정의에 적합한 표지만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함)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모든 도메인이름을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한 상표 등은 개정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대상의 범위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등'으로 한정할 이유는 사이버스쿼팅 행위의 주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상표 등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사이버스쿼팅의 주된 대상은 널리 알려진 상표 등 표지에 한정되기 때문이고 보호대상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에 근거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의 범위를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목적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인터넷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동법 개정시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부정한 목적

사이버스쿼팅의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목적(in bad faith)이다.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²⁴⁷⁾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²⁴⁸⁾도 사이버스쿼팅의 성립요건으로 부정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ACPA는 부정한 목적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목적은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을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⁹⁾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247) 1999년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상표법을 개정한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248)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249) 하홍준, 전계보고서, 149-150쪽.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사이버스쿼터들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하고 도메인이름 취득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되팔려는 행위, 도메인이름 등록원칙인 선점수 선등록(first-come, first-served)원칙을 악용하여 경쟁업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사이트의 출처, 후원, 연관관계에 관하여 혼동가능성을 야기하는 행위, 의도된 사이트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때 도메인이름의 단어의 철자를 상표와 극히 유사하지만 의도적으로 틀리게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²⁵⁰⁾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달리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있다.

3) 사례의 적용

NFT 활용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상에 사용하는 복잡한 코인 전송용 주소를 알기 쉬운 주소로 대체한 ENS 도메인이름 역시 기존의 인터넷주소의 도메인이름 관련한 사이버스쿼팅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에 RIAA의 주요 회원사인 Universal Music Group, Atlantic Records, Capitol Records, Warner Music Group, Palophone, Virgin Music 등의 상표권 및 회원사 대표의 이름을 사용을 ENS 도메인이름의 판매가 사이버스쿼팅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오픈씨는 해당 ENS 도메인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한 바

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있다.²⁵¹⁾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를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홈페이지 등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은 대상표지일지라도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 상에 사용하는 복잡한 코인 전송용 주소를 알기쉬운 주소로 대체한 ENS 도메인이름 역시 기존의 인터넷주소의 도메인이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²⁵²⁾는 ‘도메인 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상의 ‘코인 전송용 주소’를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5.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

1) 개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NFT의 발행에 대한 유명인의 동의나 해당 유명인과의 제휴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²⁵³⁾에 의한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명인

251) RIAA Takes Down ‘Infringing’ .ETH Domain Auctions from OpenSea(2022.7.14.),

<https://torrentfreak.com/riaa-takes-down-infringing-eth-domain-auctions-from-opensea-220714/>

252)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53)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는 제품·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불법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유명인 등의 재산적 손실이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적절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초상 등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로 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²⁵⁴⁾ 다만,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유형화하였다.

2) 구성요건

(1) 보호대상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의 보호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는 혼동초래행위의 주지성을 의미하며, 경제적 가치는 해당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²⁵⁵⁾ 식별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정도로 캐리커처, 초상화, 목소리 등으로 유명인이 특정된다면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54)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255)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개성은 ‘고객 흡입력’이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시함, 서울서부지방법원 4.27 선고 2016가합33974 판결.

(2) 무단사용행위

유명인들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의 구성요건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 권리자의 성과가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채권자는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위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위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한 다음,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고, 갑 회사가 발매한 특별 부록은 을 회사가 발행하는 위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관계도 인정되므로, 갑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²⁵⁶⁾고 판시한 바 있다.

3) 사례의 적용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팬아트의 경우 실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래퍼 릴야티(Lil

²⁵⁶⁾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Yachty)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NFT 플랫폼 Opolous에서 사용한 사례²⁵⁷⁾나, 전직 프로그래머인 임요환의 초상을 도용하여 NFT 홍보에 활용된 사례²⁵⁸⁾와 같이, 단순 팬 아트가 아닌 이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정경쟁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NFT 거래시장에서 PFP(Profile Picture)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의 성명 및 초상 등을 활용한 NFT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발행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인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6. 성과도용행위

1) 개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²⁵⁹⁾에 의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13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것으로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 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 등 기존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외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한정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²⁶⁰⁾ 이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일반화한 규정으로

257) Lil Yachty hits music NFT platform Opolous with trademark and right of publicity suit(FRANKFURT KURNIT KLEIN & SELZ PC, 2022.1.29.),

<https://ipandmedialaw.fkks.com/post/102hghm/lil-yachty-hits-music-nft-platform-opulous-with-trademark-and-right-of-publicity>

258) 임요환 'NFT' 초상권 침해 당했다..김가연, 공식입장(조선일보, 2022.5.15.),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2/05/15/A5IG3UOYLV6CYBPY7FARTRM404/

259)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60) 예를 들어 아바타, 게임아이템, 운동경기 통계자료 등의 무단이용행위, 출처혼동 유발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정경쟁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2012.7., 1쪽

이해된다. 따라서 성과도용행위의 해석에 따라서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²⁶¹⁾

2) 구성요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란 이익의 발생을 목표로 한 투자 또는 성과물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자본이나 시간 등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을 의미한다. 이때 타인이란 자신의 성과에 대한 타인의 부당한 무임승차 행위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 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라면 보호의 주체가 된다. ‘투자나 노력’의 상당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재판례의 축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성과’는 투자·노력의 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이 배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에 한하며, 나아가 이 조문은 그 모용행위를 불법행위로 이해하는 프랑스의 기생행위론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⁶²⁾ 즉 무임승차의 대상을 경제적 가치로 보고, 그 모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절약(économie injustifiée)’에서 위법성의 근거를 찾음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 포섭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⁶³⁾

성과도용행위는 그 행위 주체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 행위자의 영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본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자가 자신의 주된 영업 행위와 관련 없이 제3자를 위하여 중개 또는 알선을 하였다면 본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라면 그것이 경제적 이득을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과도용행의 적용은 부정경쟁행위자의 이득 발생이 아니라 보호 주체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이때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인 의미나 침해 발생에 따른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판례의 형성을 기다려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원 없이 권리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를 이용하는 행위이다.²⁶⁴⁾

이와 관련하여 우리법원은 “카목(現,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

261) 하홍준, 전계보고서 10쪽.

262) 윤선희·김지영, 부정경쟁방지법, 법문사, 2012, 19쪽 참조.

263) 하홍준, 전계보고서, 174-175쪽.

264) 하홍준, 상계보고서, 176쪽.

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²⁶⁵⁾고 판시한 바 있다.

3) 사례의 적용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현행 특허법,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NFT로 발행한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크립토펡크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²⁶⁶⁾는 개별적인 작품에 창작자가 의도한 바와 기여도에 따라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²⁶⁷⁾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제너레이티브 아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26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266) 제너러티브 아트는 사전적인 의미로 '생성의', '발생의'라는 뜻의 Generative와 예술을 뜻하는 Art가 결합하여 '생성예술', '발생예술', '생성적 예술'을 의미함

267) 박지원, NFT를 통해 유통되는 제너러티브아트의 저작물성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2-08,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4.6.,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0631>

V. NFT 발행 ·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1. 문제제기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인지, 실물 형태인지로 구별된다. 또한, NFT로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NFT 플랫폼의 콘텐츠 저장방식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별도의 서버(저장공간)에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및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경우 등에는 전송권 또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작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송권 또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NFT의 발행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저작재산권 침해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복제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본이 오프체인 NFT 내에서 복제되지 아니한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원본의 복제 없이는 NFT로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NFT 발행 행위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²⁶⁸⁾ 특히 온라인상 복제와 공유가 용이한 디지털 아트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침해 유형의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 요건인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²⁶⁹⁾

실물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경우라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히 디지털화하였다면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 아니므로 복제

268) 김병일, NFT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 JOURNAL Vol.4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9., 10쪽.

269)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3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0352>

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고, 원본에 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의 유형이 디지털 형태인지, 실물 형태인지와는 상관없이 NFT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NFT와 연결하거나 별도의 서버(저장공간)에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저작물과 관련 있는 메타데이터를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판매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링크 연결이 필수적인데, 링크 연결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링크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²⁷⁰⁾ 특히, NFT는 저작물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토큰으로 저작물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공중에게 제공하더라도 전송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한다.

3.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하면서, 작가명에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²⁷¹⁾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되지만(저작권법 제13조제2항)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된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

270) 대법원은 링크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271)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3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0352>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라고 함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익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물의 무단이용자가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작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⁷²⁾

또한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된 부분의 변경이 있고, 일반 대중이나 수요자가 이용된 저작물의 일부가 저작물 전체인 것으로 오인하고,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²⁷³⁾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취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²⁷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28조) 사망한 유명 작가의 실물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여 NFT를 발행하는 것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침해정지 청구 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한다.

272)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

273)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3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0352>

274)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4. 위작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위작을 제작하여 이를 NFT화한 경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조합해 만든 위작을 NFT화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²⁷⁵⁾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위작을 제작할 경우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특정 작가의 에디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여 에디션 넘버를 허위로 기재하여 NFT 아트로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화풍을 본떠서 특정 작가의 이름으로 NFT 아트를 제작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²⁷⁶⁾

또한 위작을 NFT로 발행하여 NFT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법원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⁷⁷⁾ 즉,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저작물의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작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27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276)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31., 각주16.,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no=50352>

27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등.

VI. NFT 플랫폼의 OSP 책임

최근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승인 없이 예술품을 도용해 NFT를 발행한 사건에서 플랫폼제공자에 대해 저작물의 권리유무 및 침해 등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방조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²⁷⁸⁾

블록체인의 특성 상 NFT의 거래는 특정 플랫폼 없이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이 만든 가상의 네트워크 역시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되고 있는 NFT는 대부분은 오픈씨와 같은 NFT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NFT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기능하지만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NFT 플랫폼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NFT 콘텐츠의 저장장소

일반적으로 토큰에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거래 내역 관련 정보만을 담고, 메타데이터와 실제 디지털 자산은 연결 정보만을 담으며,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와 실제 콘텐츠를 온체인에 저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에 대용량 데이터를 올릴 경우 블록체인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수수료 비용이 높기 때문에 NFT 토큰만 블록체인 온체인에 저장하고,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P2P 네트워크의 일종인 IPFS 등 블록체인 외부의 별도의 저장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오픈씨, 수퍼레이 등 대다수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론상 영구 저장이 가능한 IPFS에 디지털 자산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침해물을 특정하여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콘텐츠를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즉, NFT 플랫폼제공자가 콘텐츠에 대해 기술적 관리통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NFT 플랫폼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장장소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78) 김기현, 항저우 인터넷법원, 중국 첫 NFT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5.13.

2. NFT 플랫폼제공자의 법적 책임

1) 디지털 콘텐츠를 연결하는 경우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다. 작품 이름, 작품 설명, 원본에 대한 링크, 로열티 비율, 복제의 수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① 콘텐츠의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추출하여 작품을 등록하는 과정, ② NFT로 민팅하는 과정, ③ 플랫폼에 NFT를 올리는 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의 경우, 콘텐츠의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추출하여 작품을 등록하는 과정 및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는 복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랫폼에 NFT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콘텐츠를 플랫폼에 직접 올리지 않고 접근 주소만을 링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조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NFT 플랫폼이 속한 저장소에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도 복제 및 전송 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²⁷⁹⁾

이에 대해 NFT 플랫폼은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개인이 올린 NFT를 삭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²⁸⁰⁾ NFT 플랫폼 약관에 “NFT 아트의 적법성과 진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²⁸¹⁾

NFT 플랫폼제공자의 관리 및 통제 권한에 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는 IPFS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삭제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 및 통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NFT에 연결된 콘텐츠를 저장하는 IPFS에 연결하는 링크서비스 제공자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NFT 플랫폼제공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NFT 플랫폼제공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NFT 플랫폼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 관련하여, 블록체인 네트워

279) 정진근, NFT 등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Focus Review 제22-1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2.28., 23쪽 참조.

280) NFT시장 급성장, 커지는 위작·저작권 분쟁(코인데스크 코리아, 2021.4.1.),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13>

281)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31.,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50352>

크는 참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플랫폼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NFT 플랫폼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NFT 플랫폼제공자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게시물을 연결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새로운 참여자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에서 NFT 플랫폼제공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의 관리 및 통제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NFT 플랫폼제공자가 제공하는 저장소에 복제되어 있다면 NFT 플랫폼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IPFS와 같은 저장소에 게시물이 저장된 경우라면 NFT 플랫폼제공자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IPFS는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외부의 저장소이나 NFT 플랫폼과 연결됨으로써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NFT 플랫폼을 IPFS라는 콘텐츠 복제 및 전송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다.²⁸²⁾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NFT 플랫폼에서 불법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NFT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 부분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게시물에 연결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삭제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NFT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하는 저장소에 복제되어 있다면, 저장소에 복제된 저작물의 삭제행위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2) 위조품인 실물자산을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이상 파일 게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추정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달리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는 정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품인 경우에는 실물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나이키와 스타엑스의 분쟁에서²⁸³⁾ 나이키는 스타엑스가 위조품과 연계된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282) 정진근, 전제서, 24-25쪽 참조.

283) 스타엑스는 실제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을 스타엑스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NFT로 한다는 개념으로, 운동화 리셀(상품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것)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타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로,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 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소멸하는 형태로 '볼트(Vault) NFT'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나이키는 스타엑스가 자사의 허가 없이 나이키 신발의 이미지를 NFT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고 2022년 2월 뉴욕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²⁸⁴⁾ 이처럼 위조품을 NFT로 발행하여 유통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 NFT 플랫폼제공자의 방조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아디다스와 이베이 사건²⁸⁵⁾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009년 9월 아디다스가 지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픈마켓은 본질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형성돼 있어 운영자가 사전에 판매자가 등록하려는 상품 명세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오픈마켓에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는 이상 파일 게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추정되는 디지털 저작물과 달리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는 정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품인 경우에는 실물을 받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²⁸⁶⁾ 이에 대해 대법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

284) Nike escalates StockX NFT dispute; Hong Kong Customs in major seizure swoop; PONY portfolio sale - news digest(WTR, 2022.5.13.),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article/nike-escalates-stockx-nft-dispute-hong-kong-customs-in-major-seizure-swoop-pony-portfolio-sale-news-digest>

285) 아디다스는 이베이코리아(변경 전 이베이지마켓)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gmarket)에서 아디다스의 '짜퉁'인 위조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짜퉁을 검색해 지마켓에 작통 목록(운동복, 운동화, 가방, 재킷, 티셔츠 등)을 통보하면서 향후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마켓에서 검색되고 판매되자, 아디다스는 "지마켓에서 위조품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지마켓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개별 판매자의 위조품 판매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아디다스 상표를 사용한 상품 전부에 대한 판매가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 "오픈마켓서 '짜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오마이뉴스, 2013.1.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6876

286) 대법 "오픈마켓서 '짜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오마이뉴스, 2013.1.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6876

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²⁸⁷⁾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조품을 NFT로 발행하여 유통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NFT 플랫폼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87) 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VII. 현행법 적용의 한계

저작권법은 제외²⁸⁸⁾하더라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전통적으로 상품과 물품이라는 현실에 기반하여 작용하고 있다. 현실에 기반한 법제도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보호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 즉, 저명상표가 아닌 상표, 유명인이 아닌 인적 식별표지,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보호가 어려울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NFT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로서의 사용 즉,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순히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NFT 미술작품에 타인의 등록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NFT 미술작품 자체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일종의 팝아트 상품이나 인테리어 작품처럼)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가상상품과 현실상품 간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혼동(견련관계 포함)을 일으킬 정도로 상품간 밀접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이나 안내 또는 상표권 침해로 보고 상표권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에르메스와 로스차일드의 사건에서와 같이 상표패러디 등에서의 상표사용의 경우 일정부분 상표 희석화²⁸⁹⁾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양자의 이익형량(상표권자의 법익과 일반적 표현의 자유)을 고려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만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

288) 저작권법의 경우, 20세기말 인터넷산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시작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6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공중전송권 도입),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WIPO 저작권조약의 국내이행을 시작하여 2000년 1월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동 조약상의 공중전송권을 전송권의 형태로 도입하였고, 2003년 7월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의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2004년 3월 24일에 WIPO의 저작권조약에 가입하여 6월 24일부터 가입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2005.3.2.),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KAR2004013576>

28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희석화에 의한 침해란 타인의 저명한 상표의 강한 식별력과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저명상표의 고객흡인력 내지 판매력 등을 저명상표와 무관한 다른 상품에 이용하여 저명상표에 화체된 식별력이 약화되거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말함

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경우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NFT 플랫폼제공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엄격히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책임부과가 곤란할 수 있다. 현재 개별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여 면책하고자 하고 있으며,²⁹⁰⁾ 기술적으로는 IPFS의 API에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는 없는 상황이다.²⁹¹⁾ 현실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에 기반한 NFT 속성상 플랫폼제공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의 해석에 따라 NFT 플랫폼제공자의 면책요건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NFT 구매자와 정당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²⁹²⁾

또한, 이러한 블록체인의 속성에 기반한 NFT의 기술적 특성은 ‘불법저작물의 몰수·폐기’에서도 완전한 몰수와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삭제’ 또는 ‘폐기’가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달리 개념화되거나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 현실상품의 해당 상표를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제9류) 등 가상상품에 속하는 디지털 콘텐츠류 상품을 지정해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²⁹³⁾가 증가하고 있다.²⁹⁴⁾ 이러

290) 예를 들면 “NFT 판매자의 에이전트로서 NFT를 판매하지만 우리회사는 NFT 관련해서 스마트 계약의 특성이나 성격이나 작동 가능성 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면책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291) NFT 발행시 이용되는 대표적인 분산형 저장매체인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는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시간에 참여 대상 컴퓨터를 IPFS에 참여시켜서 원하는 파일이 검색되고 포워딩 될 때마다 불특정 중간노드들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할당된 디스크 용량이 꽉 차기 전에는 해당 데이터를 지우지 않는 동작 구조를 가짐. IPFS의 API에는 자신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만 있을 뿐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 전체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노드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함수는 없음. 위와 같은 IPFS의 시스템 구조는 IPFS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IPFS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실시하는 OSP 책임 요건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IPFS와 같은 구조의 분산형 저장매체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OSP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음

292)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의 저작권자 매트 퓨리는 자신이 제작한 개구리 이미지가 개구리 캐릭터를 주제로 한 ‘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에 무단 사용되었다며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에 해당 프로젝트의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오픈씨는 개구리 캐릭터를 주제로 하는 ‘Sad Frog District’ 프로젝트를 삭제하였으며, 해당 작품이 사라짐에 따라 이미 NFT를 구매했던 약 1,900여명이 손해를 입었으나, NFT의 기술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삭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

293) 크록스의 경우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즉 디지털 자산, 디지털 수집품, NFT 신발 의류, 가방 및 악세서리에서 블록체인 기반 SW 기술 및 스마트 계약으로 생성된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상품, NFT 생성, 관리, 판매 등을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SW(제9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고, 토즈는 온라인과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의 상품, 트기 향수, 화장품, 선글라스, 가방, 지갑, 신발;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토큰 및 NFT 생성, 관리, 저장, 송수신, 교환을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SW(제9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불가리의 경우도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상품, 즉 시계, 보석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온라인

한 등록상표의 확장이 자칫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가상공간에서 상표의 파노라마적 사용을 억제하여 메타버스, NFT 등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확장현실(XR)²⁹⁵산업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NFT를 발행한 행위가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의 ‘광고적 사용’ 행위로 상표 사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역시 메타버스, NFT 등 산업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근원적 차원에서 상표권자의 권리와 관련 산업발전과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NF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대두는 지식재산권이 현실이라는 전통적인 영역 외에도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NFT 기술과 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상표의 사용 및 침해유형, 물품의 유사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 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선제적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종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그 동안의 발생하는 문제 및 사례의 점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및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제9류), NFT에 연결된 디지털코드, 라벨, 태그 및 칩이 포함된 시계 및 보석(제14류), NFT에 연결된 디지털 티셔츠, 라벨, 태그 및 칩이 포함된 핸드백, 배낭, 가방, 지갑(제18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함

294) 2020년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신청된 NFT 관련 상표 출원이 20건이었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출원 수가 1,263건이며 2022년 1월 한달간 이루어진 출원 수는 450건임, U.S. NFT Trademark Applications Surge in 2022(Korea IT Times, 2022.2.17.),

<http://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20>

295) 가상/증강현실(VR/AR)을 통칭

제6장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NFT 활용방안

I. NFT 발행·거래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해소방안

1. 현황 및 필요성

NFT의 고유한 특성인 위조의 어려움을 통한 희소성 유지, 거래내역 추적의 용이성, 부분 소유권 가능, 거래 용이성 등에 기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NFT를 통해 확산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세계 NFT 거래액은 전년 약 8,200만달러에서 215배 성장한 176억달러(약 21조 6,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NFT에 투자해 벌어들인 이익은 총 54억달러(6조 6,000억원)로, 470개 이상의 가상화폐 지갑이 NFT 투자로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²⁹⁶⁾ 예컨대, 비플의 디지털 아트인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는 약 6,934만 달러(한화 약 785억 원)에 낙찰되는 등 NFT로 인해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NFT와 연결되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재산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같이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인 NFT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또는 현실의 콘텐츠와 연결된다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화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경매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유족 측의 항의로 중단된 경우, 당사자의 허락 없이 NFT가 발행되었다는 저작권자의 삭제 요구로 이미 판매된 NFT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려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외에도 NFT와 관련하여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플랫폼제공자의 책임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NFT 관련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상품의 인도를 청

296) 한달 거래액이 7조원…NFT, '대체불가' 매력 뒤흔다(이데일리, 2022.27.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32228224&mediaCodeNo=257>

구할 수 있는 권리를 NFT로 발행하면서 해당 상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자인권 관련해서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서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등에서 물품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정경쟁행위 관련해서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등에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홈페이지 등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사이버스쿼팅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NFT의 발행에 대한 유명인의 동의나 해당 유명인과의 제휴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 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각의 개별 법을 통해 침해여부를 판단하거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NFT 발행 및 거래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으로 NFT의 메타데이터에 지식재산 정보를 기재하거나 지식재산 정보를 NFT화하여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해소방안

1) NFT의 메타데이터에 지식재산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

NFT 발행 및 거래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으로 NFT의 메타데이터에 지식재산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크립토키티, 소래어, BAYC 등 NFT로 발행되고 있거나 NFT를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ERC-721로 발행되고 있다. ERC-721로 발행되는 NFT는 일반적으로 토큰에 특정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거래 내역 관련 정보만을 담고, 메타데이터와 실제 디지털 자산은 연결 정보만을 담는다. 메타데이터는 NFT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파일로, 디지털 자산의 제목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NFT 발행에 대한 정보, 디지털 자산이 저장되어 있는 링크주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6 NFT Metadata

Contract Address	Item Metadata
0x8c5aCF6dBD24c66e6FD44d4A4C3d7a2D955AA ad2	Token Metadata { "symbol": "Mintable Gasless store", "image": "https://d1iczm3wxxz9zd.cloudfront.net/613b908d 613b908d 000000000/8619324028261876385436750160835360531676033165 31676033165 "animation_url": "", "royalty_amount": 500, "copyright_transfer": true, "address": "0x8c5aCF6dBD24c66e6FD44d4A4C3d7a2D955AAad2", "tokenId": "86193240282618763854367501608353605316760331 "resellable": true, "original_creator": "0xBe8Fa52a0A28AFE9507186A817813eDC1 "edition_number": 1, "description": "<p>A beautiful bovine in the summer sun "auctionLength": 43200, "title": "The Clearest Light is the Most Blinding", "url": "https://metadata.mintable.app/mintable_gasless/86193240 240 "file_key": "", "apiURL": "mintable_gasless/", "subtitle": "bovine from South Texas", "name": "The Clearest Light is the Most Blinding", "auctionType": "Auction", "category": "Art", "edition_total": 1, "gasless": true }
Token ID 86193240282618763854367501 608353605316760331651808345700 084608326762837402898	
Token Name The Clearest Light is the Most Blinding	
Original Image https://d1iczm3wxxz9zd.cloudfront.net/613b908d-19ad-41b1-8bfa0e016820739c/000000000000000/86193240282618763854367501608353605316760331651808345700084608326762837402898/ITEM_PREVIEW1.png	
Original Creator 0xBe8Fa52a0A28AFE9507186A817813eDC1454E004	

< 출처: Juliet M. Moringiello and Christopher K(2021)²⁹⁷⁾ >

297) Juliet M. Moringiello and Christopher K. Odinet, THE PROPERTY LAW OF TOKENS, Florida Law Review Vol.74, November 1, 2021, p.24.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파일로, 디지털 자산의 제목과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NFT 발행에 대한 정보, 디지털 자산이 저장되어 있는 링크주소 등으로 이루어진 메타데이터에 추가적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링크주소를 기재하여 NFT 발행 및 거래에서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권리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등록정보가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www.cros.or.kr)'을 통해 등록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 또는 등록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링크주소를 메타데이터에 포함시킬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 또는 확인하여 안전한 NFT 유통환경 조성 및 지식재산권 분쟁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해소할 없는 허위 기재 및 미등록 권리의 보호 부재, 약간의 비용(gas fee) 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한 NFT 유통환경 조성 및 지식재산권 분쟁방지라는 취지 하에서 허위 기재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 기재 문제는 관련 법률의 검토 및 개정을 통해 규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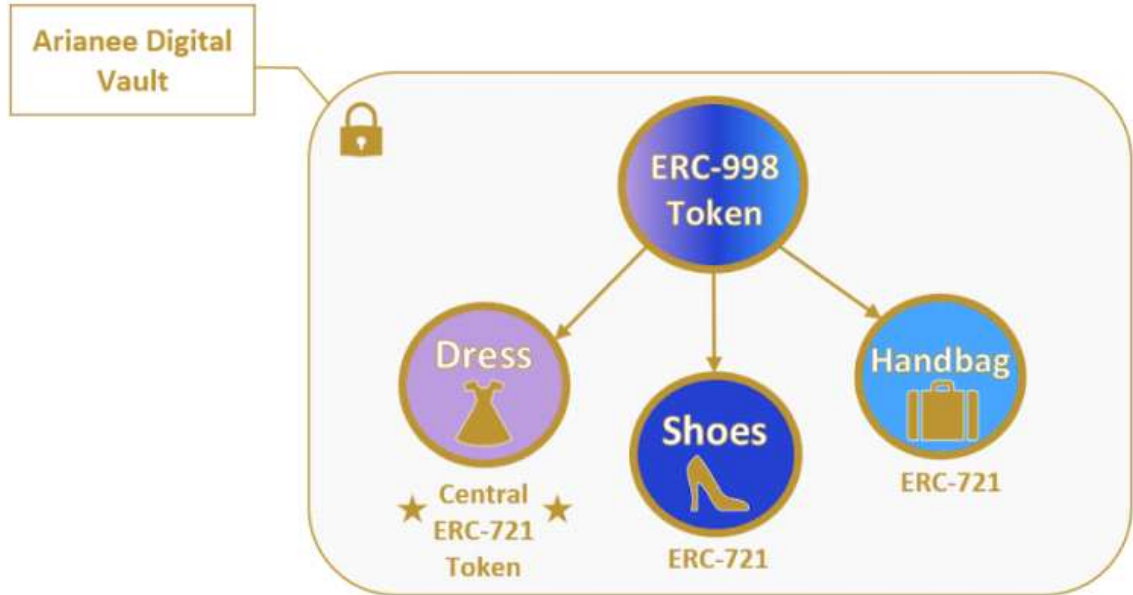
2) 지식재산 정보를 NFT화하여 연동시키는 방안

NFT 발행 및 거래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으로 지식재산 정보를 NFT화하여 연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표준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제안된 ERC 중에는 여러 ERC-721과 ERC-20 토큰으로 구성할 수 있는 ERC-998이 있다. ERC-998은 두 가지 방식으로 토큰을 조합할 수 있으며, 조합 가능 NFT 기반의 캐릭터에 FT/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적용하는 하향식(top-down)이 있고, 그 반대로 NFT에 조합 가능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적용하는 상향식(bottom-up)이 존재한다. NFT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ERC-998은 최종 승인은 되었으나, 활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이며, 설계(Draft) 단계로 개념만 제시된 상태이다.²⁹⁸⁾

298) Composable Tokens: How ERC-998 Works(Ariane, 2018.7.11.),
<https://medium.com/arianee/an-exploratory-look-into-erc-998-composable-tokens-a057cd4f8c1a>

그림 47 ERC-998 토큰



< 출처: Arianee(2018) >

특허청에 의해 발행되는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해 발행되는 저작권등록증 등을 ERC-721로 발행하고, NFT로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의 ERC-721을 조합하여 ERC-998로 발행한다면 NFT 발행 및 거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제시한 NFT의 메타데이터에 지식재산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에 비해 허위 기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NFT로 활용하지 않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NFT로 발행해야 하거나 요청에 의해 해당 건에 대해서만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비용 소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II. 지식재산 출원·등록 시스템에서의 NFT 활용방안

1.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구성된 특허행정 내에서 NFT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 관계 등을 기재, 보관하고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대법원이 등기를 관리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부동산등기 기록은 62,876,643건이 관리되고 있다.²⁹⁹⁾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탑재하면 이후 위·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확보되어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관리 노력과 비용 측면에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블록체인 등 기술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이외에도 이와 대등하게 위·변조 방지 등 정보보호 강화의 기능이 있는 다른 기술들을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비용적 측면, 개발 및 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블록체인 등을 등기, 등록, 공탁 등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살피고, 해외나 국내 타 기관의 활용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등기의 특성이 블록체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등기 자체가 법원에 권리관계를 기록해 보관함으로써 기록이 상실되고 위·변조되는 것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³⁰⁰⁾

이러한 사례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제도에 적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앙화 시스템의 일부를 탈중앙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나 상호 운용성, 거버넌스,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기술적용과 관련한 장애물과 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DLT 등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등록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하며, 등록이나 사법단계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³⁰¹⁾

이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방법 등에서 한발 더

299)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맞춤형 등기정보-데이터 시각화 참조(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https://data.iros.go.kr/cr/dv/selectCrDvDataInfograpDetl.do?ris_menu_seq=0000000016&rdata_seq=1&search_start_date=201809&search_end_date=201909(2022.7.30. 최종방문)

300) 블록체인 기반 법원 등기 서비스 나올까...대법원 검토 착수(디지털투데이 2022.4.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550>

301) WIPO, 「Blockchain for IP ecosystem - White Paper」, WIPO, 2022, p.31.

나아가,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등록원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활용방안

현재의 지식재산 출원·등록 시스템 그 자체를 변경하여 NFT를 적용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지나, NFT를 추가적으로 시스템에 도입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 등록과정에서 등록원부의 발행과 함께,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NFT를 발행하고 이를 동시에 '(가칭)지식재산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성된 NFT는 권리자의 개인지갑과 지식재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등록되며 해당 NFT에는 권리의 명칭, 기술의 개요, 등록번호, 권리자에 대한 정보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지식재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NFT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 존재하는 NFT 토큰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되나, 소유자의 정보는 지갑주소로 명시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하여 구매를 원하는 NFT를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거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이더리움과 NFT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출원·등록 시스템을 향후의 거래와 연동하는 것을 예상하여 구상한 시나리오로서,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지식재산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IPO에서 발행한 「Blockchain for IP ecosystem - White Paper(WIPO, 2020)」에서도 지식재산 등록에 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³⁰²⁾

백서에서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블록체인 지식재산 레지스터(IP register)'를 소개하고 있다. 창조적 또는 혁신적 자산과 그 생성의 세부사항을 블록체인에 입력하는 것은 소유자가 자신의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상품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기록 및 신뢰할 수 있는 생성 증명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탈취나 침해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생성시기와 필요한 경우 권리관계 정보 및 관

302) 2018년부터 WIPO의 표준위원회에서 AI,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지식재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여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블록체인 백서에서는 IP 생태계, IP 가치사슬, IP 밸류체인 및 IP 전체의 구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잠재적인 블록체인의 활용사례 및 사용을 위해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할권 요건을 쉽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등록된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미등록 권리라하더라도 안전하게 상호연결된 지식재산 레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³⁰³⁾ 이 블록체인 지식재산 레지스터에서는 각 특허청이 노드가 되는 것이며, 노드 간 상표와 디자인의 등록정보가 생성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노드에 등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지식재산 자산과 그 생성내역을 블록체인에 업로드 하면 타임스탬프 기록의 등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생성증명이 가능해진다.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유용 및 침해, 예를 들어 게놈 시퀀싱에 의해 생성된 배열 데이터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셋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³⁰⁴⁾

사례로, 노드에 올려진 정보는 실시간으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블록체인에 등록되며, 이러한 정보는 EUIPO의 'TMB 디자인뷰'라는 검색 서비스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상표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지식재산 레지스터는 현재 프로덕션 모드로 운용 중이며 유럽회원국 중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의 경우 상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허청이 상표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각 판매자들이 상표권을 전제로 물건을 판매할 때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정상적인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임을 확인시켜주는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판매자가 판매할 물품이 등록된 홈페이지 URL을 호주 지식재산청에 등록하면, 호주 지식재산청에서 이를 검수하여 해당 URL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방식이다.

등록된 권리에서의 활용 외에도 미등록상표나 미등록디자인권 등에 대하여 블록체인이나 NFT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등록상표 등의 경우 한편으로 저작권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이나 입증 등에 활용하게 된다면 소송 등에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증에 있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다.³⁰⁵⁾

또한 일부 영역에서의 DLP 사용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지식 또는 관련 유전자원에 관한 선행기술의 인식에 있어 법적 확실성

303) WIPO, *Op. cit.*, p.32.

304) *Ibid*, p.32.

305) 상표 출원 등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여러 시점에서 출원인은 상표 사용의 증거 및 획득한 식별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표의 실제 사용에 대한 증거 및 사용 빈도, 날짜가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U SPTO에 기록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상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혼동 가능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Julie Tolek, The Use Of Blockchain In Trademark And Brand Protection(JDSUPRA 2021.6.22), <https://www.jdsupra.com/legalnews/the-use-of-blockchain-in-trademark-and-1929008/>

을 높이는 것이 제안되었고, 이는 기존의 오프체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되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위한 개별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전통지식 보유자들이 문화, 보존, 형평성 또는 다른 이유로 공개된 지식재산에 대한 1차적인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국제적 시스템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특허심사관에게 이러한 선행기술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³⁰⁶⁾

상기에서 지식재산 출원·등록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능성이나 여러 사업모델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원·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또는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을 투입하여 탈중앙화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아직까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청의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연결하였을 때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306) WIPO, *Op. cit.*, p.32.

III. 우선권 증명 절차에서의 NFT 활용방안

1. 현황 및 필요성

일부 기업의 경우 NFT를 자격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음웹툰을 카카오웹툰으로 개편하면서 카카오웹툰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식교환권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벤트 당첨자에게 비상장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NFT를 활용하였는데, 주식교환권 NFT를 얻으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 6개월 이후, 정해진 시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식 1주와 교환할 수 있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비상장주식이다 보니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명의개서 방법이 복잡하여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NFT로 구현한 것이다. 실제 상장 후 교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보니 분실·보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NFT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관계자가 설명한 바 있다.³⁰⁷⁾

스타트업 주식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도 NFT를 활용하고 있다. 엔젤리그의 특정 기업 클럽딜에 참여하여 조합원이 되었다면 NFT 디지털 카드를 발급하여 조합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조합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NFT 카드를 수집하고 편하게 자신들의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³⁰⁸⁾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의 가입 확인 문서를 1,000명의 조합원에게 일일이 개별 발송하고 유실 시 문서를 재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에 영구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 역시 클럽을 통해 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 가입확인서를 NFT화하여 바로 디지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⁰⁹⁾ 엔젤리그 관계자는 “엔젤리그 조합 가입 증명을 클럽의 NFT 디지털 카드를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덜고 조합원들의 편리성도 강화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³¹⁰⁾

307) 카카오엔터 주주 증명서? ... 비상장주식에 부는 NFT 바람(MTN 뉴스, 2021.8.1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1081215445390794>

308) 카카오엔터 주주 증명서? ... 비상장주식에 부는 NFT 바람(MTN 뉴스, 2021.8.1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1081215445390794>

309) 클럽, 비상장주식 조합 가입 증명서 답는다(PAXNET news, 2020.8.12.), <https://paxnetnews.com/articles/64128>

310) 엔젤리그 “비상장 주식 조합 증명서 NFT로 제공”(이데일리, 2021.4.1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8486629016448&mediaCodeNo=257>

그림 48 엔젤리그의 비상장주식조합 가입 증명카드 예시



〈 출처 : PAXNET news(2020) 〉

이러한 사례처럼 NFT의 경우 고유한 인식값이 존재하는 성격 때문에 특정한 자격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용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특허행정 분야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활용방안

NFT의 특성을 토대로 특허행정 중 우선권 증명에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간 우선권 증명 서류를 교환함에 있어서 전자적인 교환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NFT 등을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또는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Blockchain for IP ecosystem - White Paper(WIPO, 2020)」에서 우선권 증명 서류 교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특허청은 특허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공통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전 세계 특허청이 정보에 대한 동일한 수준 및 제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단간의 추적성과 향상된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은 특허승인의 요청과정에서 최초 출원청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여러 나라의 특허청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³¹¹⁾

출원인들은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나라에 동일한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자로 소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현

311) WIPO, *Op. cit.*, p.32.

재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 DAS, 이하 'DAS'라 한다)를 통하여,³¹²⁾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권 증명과 관련한 서비스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DAS 서비스 흐름도 및 이용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원인이 최초 출원 특허청에 WIPO 접근코드 발급을 신청(2020. 7. 1. 이후 국내출원의 경우 WIPO접근코드(DAS코드)가 출원번호와 함께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별도의 발급신청 불필요) ② 최초 출원 특허청에서 DAS 시스템에 우선권 관련 정보를 저장한 후 그 결과를 확인 ③ 최초 출원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WIPO 접근코드를 발급(우리 청의 경우 접근코드가 발급된 이후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④ DAS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속 출원 특허청에 출원 시, 해당 우선권 주장 필수 정보(선출원의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와 접근코드 정보를 제공하면 우선권 증명서류의 서면제출절차가 면제 ⑤ 후속 출원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공한 우선권 관련 정보, 접근코드를 통하여 WIPO 측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요청 ⑥ WIPO는 해당 출원번호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최초 출원 특허청에 요청하여 수신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후속 출원 특허청에 전달 |
|--|

이러한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특허출원 및 우선권 증명서류를 저장하는 분산형 '스마트 지식재산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지식재산 레지스트리를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하여 출원인은 다른 국가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사람의 개입 없이도 출원인의 동의가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특허청 간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미공개 서류가 교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의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감하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문서의 경우 비(非)블록체인 솔루션의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로컬(사용자의 PC)에서 해시되어 조작된 문서를 쉽게 식별하거나, 실제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³¹³⁾

312)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s, DAS)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 파일 교환 시스템으로서 회원국간 미공개 서류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313) WIPO, *Op. cit.*, p.138-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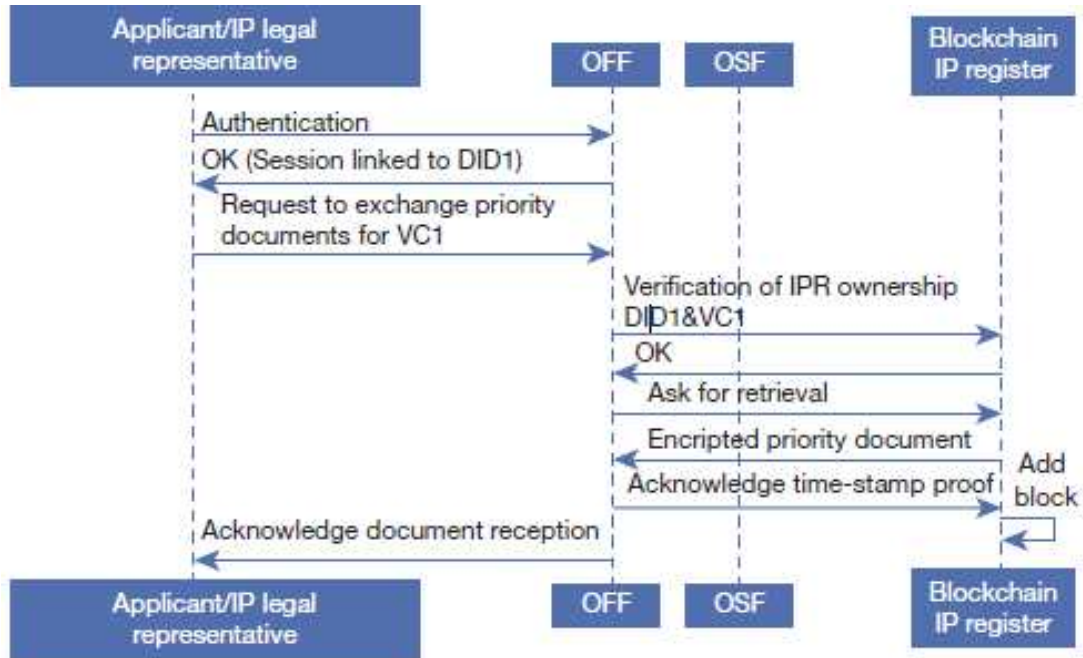
표 4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있어서 블록체인 활용 프로세스 및 유용성

- 공유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블록체인 내에 저장하여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할 모든 관련정보를 표기하고, 서로 다른 특허청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
- 정보의 해시값을 트랜잭션에 추가하고, 서명된 다음 합의에 의한 검증을 위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송
- 서명의 경우 우선권을 가진 자가 로컬로 서명하거나(웹브라우저의 확장 사용), 위임하여 법적가치, 보안 및 사용 편의성을 조정
- 각 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선택한 국가에 대하여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송부
- 네트워크 컨센서스가 수용되면 서명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등록
- 우선권 증명 서류를 발급한 특허청은 공유 데이터의 정확한 타임스탬프 및 다른 특허청에 의해 수신되었음을 확인하는 증서(receipt)를 수령.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증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통하여 타임스탬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출원인이 선택한 특허청의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받게 되며 표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인증하고 검증할 수 있음. 해당 문서는 블록체인으로 검색된 소유권 증명 정보와 함께 특허청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
- 각국의 특허청은 자국의 특허현황을 공개하고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가능

결국, 각국 특허청이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서로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전송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은 타임스탬프를 특허권의 증거로 사용하고,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오프체인 방식으로 확인된 문서를 전송함으로써, 암호화된 특허 데이터의 해시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지식재산 레지스트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는 WIPO의 DAS와도 연계될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여러 특허청과 출원인의 시간 및 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³¹⁴⁾

314) WIPO, *Op. cit.*, p.140.

그림 49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선권 증명 서류 교환 예시



< 출처 : WIPO(2020) >

한편 DAS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교환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WIPO 접근코드(Access Code)가 발행되고 있다. 해당 코드는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청은 출원번호, 출원일자, WIPO 접근코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내에서 WIPO 접근코드의 위·변조 사례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WIPO 접근코드의 발급에 NFT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V.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NFT 활용방안

1. 현황 및 필요성

최근 NFT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NFT와 연계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NFT로 촉발된 환경변화를 지식재산과 연계 및 참조하여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라이선스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한 분산형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가져올 수 있다. 추적이 가능하고 검증가능한 소유권과 로열티의 정확한 분배를 도입하여 권리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여 중개자의 개입을 줄일 수도 있다.³¹⁵⁾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웹툰, 웹소설 등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NFT로 발행하여 자사 중심의 NFT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NFT 수탁을 비롯하여 NFT 담보대출, NFT 자산관리, NFT 은행 등의 사업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³¹⁶⁾ 이러한 사업이 제안되면서 NFT 가치산출이나 가상자산 예치 등 연계된 서비스에 대한 검토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한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국내에 출원되는 지식재산권은 약 60만건에 달하지만 그 중 1/3은 사업화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식재산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한편, 각 지식재산의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거래를 통하여 또 다시 새로운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에 NFT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내 지식재산 종합플랫폼인 '아이피샵'에서는 지식재산 투자를 통하여 획득한 소유권을 NFT로 변환하여 거래할 수 있고,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의 실물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실질 가치 기반의 NFT물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 창출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이피샵은 다양한 지식재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 채널로 운영되며, 각 채널에 등록된 개별 지식재산 상품은 다수의 분할된 지식재산 소유권 형태로 거래되며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유한 조각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로도 회원들끼리 거래할 수 있고, NFT물로 소유권을 옮겨 코인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다.³¹⁷⁾

315) WIPO, *Op. cit.*, p.32.

316) 해외 NFT 금융상품 등장...텔리오, NFT 담보대출 서비스 제공 예정(파이낸셜뉴스 2022.5.2.), <https://www.fnnews.com/news/202205021414206388>

317) [인터뷰] "음원·웹툰·NFT까지...건강한 IP투자로 산업적 선순환 이끌 것"(아주경제 2022.3.31.), <https://www.ajunews.com/view/20220331135525811>

또 다른 예로서, 콜레트릭스(Colletirx)는 지식재산권 머천다이징 분야에 NFT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콜레트릭스를 한국시장에 소개한 바 있다. 콜레트릭스는 지식재산 경제를 디지털화하여 원천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천 지식재산권자는 NFT 거래 시 영구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 사망 후에도 평생동안 자신의 창작품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실제 상품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인기를 기반으로 하여 NFT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콜레트릭스의 관계자는 토큰마다 가치가 달라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NFT를 활용하여 실제 상품들의 지식재산 사업을 비롯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지식재산과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분야에 접목하여 향후 하나의 생태계를 구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³¹⁸⁾

2. 활용방안

그동안 유동화(securitization)³¹⁹⁾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지식재산 유동화를 통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NFT가 지식재산의 소유권,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유동화 시장의 확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동화의 구현은 지식재산의 권리(이용권, 소유권, 저작권 등)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NFT로 분할·기록해 거래하는 방식이다.³²⁰⁾

한편, NFT는 해당 재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증함으로써 거래와 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에 지식재산과 결합한 NFT가 지식재산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³²¹⁾

이러한 개념을 실무에서 적용한다면 첫째, 기술이전 관점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NFT를 발행한다면, 기술수요자들이 손쉬운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NFT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투자적 관점에서 조각투

318) NFT 기술을 지적재산권(IP)과 머천다이징 사업에 접목한 '콜레트릭스' 한국 첫 선(전자신문 2019.5.10.), <https://www.etnews.com/20190510000084>

319)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비유동성 자산)을 증권(securities)으로 전환해 현금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권화라고도 한다.

320) 박재영,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이슈와 논점」 제19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3면.

321) NFT는 그 자체보다는 디지털화된 재화 및 그 재화를 소비하는 플랫폼(마켓 플레이스, 메타버스)이 결합되어 투자·거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의미가 있으며, 최근 시장은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성장하고 있다, 박재영,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이슈와 논점」 제19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3면.

자나 분산투자의 관점에서 NFT를 활용하여 수익증권처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처럼 NFT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NFT 대상 디지털 자산 지식재산을 구매자들에게 허락하는 방법이 그 파급효과와 경제적 영향력 뿐 아니라 지식재산의 분산을 통한 실질적 탈중앙화가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의 NFT 프로젝트들도 NFT의 데이터 소유권뿐만 아니라 NFT 이미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및 상업적 활용 권리도 과감히 허락한다면 프로젝트 주체와 참여자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릴 것³²²⁾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의 불분명한 부분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지털 토큰인 NFT가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률상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 되고, 지식재산과 결합한 NFT가 증권성을 띠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³²³⁾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구체적인 대응은 불분명하다. 한편 유명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NFT 거래 플랫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이 더 이상 NFT 사업의 성공요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유명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NFT를 확보해 경매에 붙이는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최근에는 지식재산 확보가 보편화된 만큼 다른 경쟁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³²⁴⁾ 예컨대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된 NFT를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수요자가 NFT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NFT가 다른 플랫폼에서까지 유연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확장성이 없는 상황에서 NFT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322) [DKL의 IP전문법률] 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3.0②(IT조선, 2022.3.27.),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25/2022032501289.html

323) 참고사례로,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에 대하여 증권성을 인정하기로 하여, 향후 각종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규제영역으로 확대·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하였기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뉴데일리경제 2022. 4. 20.),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4/20/2022042000231.html>

324) 우후죽순생기는 NFT 거래 플랫폼, '유명 IP'가 능사가 아니다(디지털 데일리, 2021.12.21.),

http://m.ddaily.co.kr/m/m_article/?no=227861

V.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NFT 활용방안

1. 현황 및 필요성

예술품의 경우, 위작이나 모작, 불법 복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와 변형이 용이하고, 아무리 복제하여도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항상성을 지니기 때문에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예술품의 진품 여부와 저작권 및 소유권이 매우 중요한 미술 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러한 특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패션업계에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품 유통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최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네이버 자회사인 리셀 플랫폼 크림의 짝퉁 공방전은 큰 이슈를 낳기도 했다.³²⁵⁾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에서 명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여, 위조품을 걸러내기 위한 정품 인증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예술품과 패션업계를 중심으로, 원본 증명 및 위·변조 방지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가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NFT의 등장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품 또는 상품의 위변조 방지 및 비가역 거래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NFT 활용을 통해 예술품, 상품 등의 생성, 구매, 유통 과정에 대한 이력 등을 블록체인에 암호화된 해시값으로 저장하여, 작품, 상품 등의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고유성 및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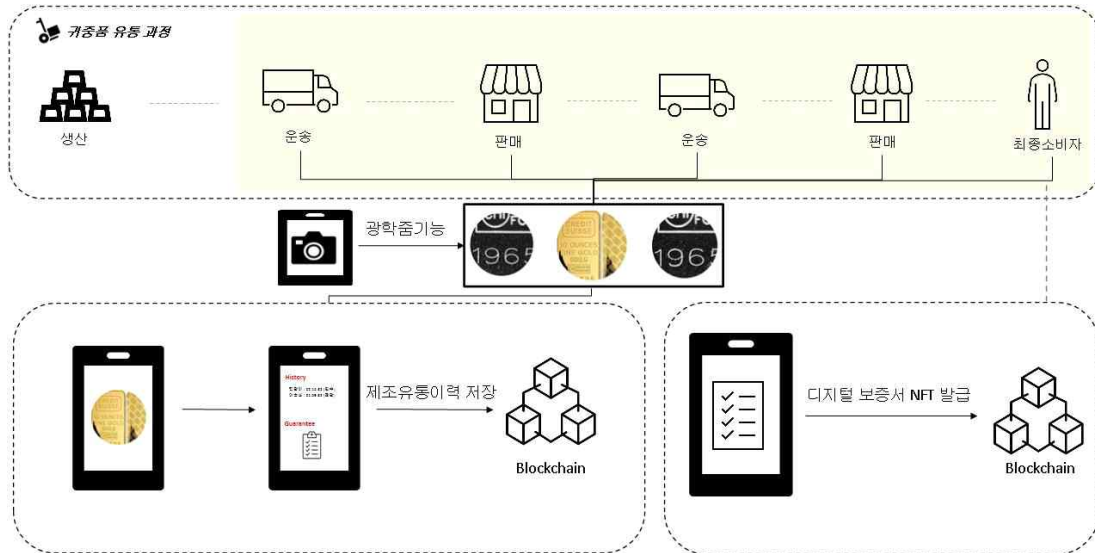
2. 활용방안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마이크로 텍스처(Micro Texture)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마이크로 텍스처는 마치 지문처럼 표면에 있는 특징을 연산, 저장, 조회하는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을 인식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화에 대해 검증하고, 이때 표면에 있는 특징점은 유통과정에서 디지털 지문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비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작동원리는 ① 사물의 표면에 지문과 유사한 고유의 특징점 존재 확인, ② 확대이미지로부터 디지털 특징점 추출, ③ 특징점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DB에 저장, ④ 유통과정에서 취득된 표면 특징점 정보는 DB에 저장된 정보와의 매칭하여 분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조유통이력을 블록체인 시스

325) 무신사, 짝퉁 명품 팔았다...크림 "제조사에서 가품 확인"(매일경제, 2022.4.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295398/>

템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보증서를 NFT로 발급하는 방안이다.

그림 50 마이크로 텍스처 방식의 실물자산적용 시나리오



< 출처 : 위변조 방지 방안(윤석빈) >

최근 디지털 예술품 분야나 패션업계에서는 NFT를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서(보증서)로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상품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NFT가 예술품 및 디지털 콘텐츠에 활용된 사례로 아티프로젝트(ARTi PROJECT)가 있다.³²⁶⁾ 아티프로젝트의 플랫폼에서는 예술품의 생성, 구매, 유통 과정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 서버에 암호화된 해시값으로 저장해서 영구, 불변하게 위변조 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티프로젝트는 한국NFT공인인증원과 함께 예술품의 디지털화와 이를 NFT화하여 소유권을 등록하고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티프로젝트는 누구나 예술품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인 'ARTi-X / Markget place'를 구축하고, 누구나 소액으로 예술품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아티 플랫폼은 NFT 인증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작품의 진의 여부를 심의하고 인증함으로써 NFT 마켓에 검증되지 않은 무부별한 아이템들이 등록되지 않도록 필터링 인증시스템을 활용한다. 인증된 예술작품은 소유권의 의변조를 막기 위한 NFT 기술을 적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해시값을 갖는 고유토큰을 발행하고, 대체 불가능한 고유토큰을 블록체인에 등록 저장된다.

326) 아티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artiproject.com/kor/index.html>

LVMH(루이비통), 리치몬트(까르띠에), 프라다는 구매 이력을 확인하거나 진품을 인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컨소시엄 아우라(AURA)를 설립했다. 이 컨소시엄은 아우라를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서 상품 이력과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각 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아우라 블록체인에 기록된 고유한 디지털 코드를 부여받고, 상품 구입 고객은 아우라 플랫폼을 통해 출처, 재료, 소유권 증명, 품질 보증서, 관리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³²⁷⁾ 즉, 이들은 자사의 실물 제품 안에 전자칩을 삽입하고 이와 연동되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NFT로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토시 스튜디오(Satoshi Studio)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이 들어 있는 라벨 홀더를 제품(스니커즈)에 부착해 판매하는데, 이를 통해 Arianee 블록체인에서 구입, 수집, 판매, 재활용 등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제품의 상호작용을 기록하게 된다. 근거리 무선 통신 칩은 스마트 계약의 소유권을 자신의 Arianee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디지털 ID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 QR코드를 통해 정품여부 확인 및 공급업체, 재료, 원산지, 모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즉시 Arianee 블록체인에 디지털 ID가 기재된다.³²⁸⁾

국내의 경우, 온라인몰 쓱닷컴이 명품 구매자들에게 ‘SSG 개런티’를 발행하고 있다. SSG개런티는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로 고객이 구매한 명품이 정품임을 인증한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발란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보증서를 통해 상품 진품 여부를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실물자산을 연동한 NFT 활용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경우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NFT를 활용하는 분야는 비단 디지털 예술품이나 패션업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2021년 10월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영화제 티켓에 NFT가 접목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압표, 위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QR코드 인증과 티켓 검수를 이중으로 함에 따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³²⁹⁾

NFT는 소유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C2C 모델, B2C 모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블록체인이 있을 경우, 블록체인은 프로세스상의 중간에서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NFT가 명품 및 중고거래에 활용되었을 때 위변조에

327) 루비이통·프라다·까르띠에, 진품 인증에 블록체인 활용...컨소시엄 ‘아우라’ 합류(TOKENPOST, 2021.4.21.)
<https://www.tokenpost.kr/article-58767>

328) 사토시 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s://satoshi-studio.com/pages/blockchain-solution>

329) [인터뷰] 영화제 티켓이 NFT 기술을 만난 이유는? CJ올리브네트웍스 팍이삭 님(채널CJ, 2021.11.25.),
<https://cjnews.cj.net/%EC%9D%B8%ED%84%B0%EB%B7%B0-%EC%98%81%ED%99%94%EC%A0%9C-%ED%8B%B0%EC%BC%93%EC%9D%B4-nft-%EA%B8%B0%EC%88%A0%EC%9D%84-%EB%A7%8C%EB%82%9C-%EC%9D%B4%EC%9C%A0%EB%8A%94-cj%EC%98%AC%EB%A6%AC%EB%B8%8C/>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구매자 이익보호에 대한 부분, 신뢰성과 이력 정보에 대한 투명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정품 구매자에게 품질보증서를 블록체인으로 제공하거나, 제품의 생산·유통이력을 관리함에 있어 NFT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다만, 기존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로 변경하는 경우, 교체비용 및 기존 제공 서비스와의 호환성 검토를 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제7장 결론

국내외에서 NFT의 지위에 관한 규범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NFT는 각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상 저장된 토큰으로, 희소성 및 대체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다.

NFT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NFT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법적인 문제에 대해 특허상표청과 저작권청에 공동연구를 요청하였고, 공동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 착수하였다. 국내에서는 NFT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의 접근 외에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발간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NFT 관련한 지식재산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FT의 활용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NFT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NFT 분쟁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NFT 관련 지식재산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상표 관련하여,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NFT 관련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상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NFT로 발행하면서 해당 상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었다.

디자인 관련한 문제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서 구현된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등에서 물품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관련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사이버스키텡,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성과도용행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및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주지 상품의 표지·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품/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저명 상품 표지 및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등에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홈페이지 등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사이버스키킹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NFT의 발행에 대한 유명인의 동의나 해당 유명인과의 제휴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유명인등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한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 NFT 발행자의 웹사이트 등에 타인의 상표, 디자인, 표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NFT와 연계된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는 경우, 위작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에서 전송권 또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었다.

플랫폼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는 NFT의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NFT의 특성 및 구조, 활용사례 등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NFT의 메타데이터에 지식재산 정보를 기재하거나 지식재산 정보를 NFT화하여 연동시키는 방안, ② 지식재산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 등록과정에서 등록원부의 발행과 동시에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NFT를 발행하고 이를 동시에 '(가칭)지식재산 블록체인 플랫폼'에 등록시키는 방안, ③ 우선권 증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NFT의 경우 고유한 인식값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활용하여 우선권 증명에서 WIPO 접근코드를 NFT로 발행하는 방안, ④ 지식재산 금융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NFT를 지식재산의 소유권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술이전 및 조각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 ⑤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원본 증명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마이크로 텍스처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NF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대두는 지식재산권이 현실이라는 전통적인 영역 외에도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NFT 기술과 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상표의 사용 및 침해유형, 물품의 유사성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여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선제적 규제는 위협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선제적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종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그 동안의 발생하는 문제 및 사례의 점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NFT를 활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남경보 역(맷 포트나우·큐해리슨 테리), NFT 사용설명서, 여의도책방, 2021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9

성소라·롤프 회퍼·스콧 맥러플린, NFT 레볼루션, 더 퀘스트, 2021

윤선희·김지영, 부정경쟁방지법, 법문사, 2012

김병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5호, 2014

박민정·채상미·이명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의 법적 쟁점 -GDPR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Journal of Inforamtion Technology Application & Management 25(2), 2018

안갑철·정완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제27권 4호, 한국비교법학회, 2020

스트라베이스, NFT관련 시장 및 정책동향 분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2

이현희, 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정진근,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하홍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4.28.

김기현, 항저우 인터넷법원, 중국 첫 NFT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5.13.

김민정, NFT 거래 사례로 본 플랫폼 확장 가능성, KISA REPORT volume 10,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김병일, NFT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 JOURNAL Vol.4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9.

김시호, NFT와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생태계, KISA REPORT volume 07,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김현경, 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8.11.

노경탁, NFT, 메가트렌드가 될 것인가, 유진투자증권, 2021.10.5.

민경식외2,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KISA INSIGHT,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10.

박경신, 미술시장에서의 NFT 열풍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1-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12.31.

박경신·오진해·임형주·전재림,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2022.6.

박지원, NFT를 통해 유통되는 제너러티브아트의 저작물성 검토, COPYRIGHT ISSUE REPORT 2022-08,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4.6.

서새남,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플랫폼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 인정, 저작권동향 2022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5.18.

성덕근, NFT의 현황과 쟁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2-01호, 한국법학원 2022.4.29.

이중엽·이강효, 소유의 귀환, NFT 기술과 서비스 동향, 주간기술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9.29.

정진근, NFT 등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Focus Review 제22-1호, 한국법제연구원, 2022.2.28.

최재식외3,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IP Focus 제2021-2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12.30.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2012.7.

- 해외문헌 -

Juliet M. Moringiello and Christopher K. Odinet, THE PROPERTY LAW OF TOKENS, Florida Law Review Vol.74, November 1, 2021

WIPO, Blockchain for IP ecosystem - White Paper, 2022

Algorand's Instant Consensus Protocol(Algorand, 2018.5.1.)

Bulgari Makes World's Thinnest Watch, Plus NFT, for €400,000(Bloomberg, 2022.4.5.)

Burger King Launches NFT Campaign 'Keep It Real Meals' With Digital Collectibles Sweets from the Market(ultcoin365, 2021)

Coinbook Co., Ltd. “SKE48 12th Anniversary Fes 2020 ~ 12 Performances All at once ~” SKE48 collaboration “Suddenly NFT Trading Card” will be on sale from October 3rd(Japan NEWS, 2020)

Collezione Genesi(UNXD2021.9.20.)

Digital Good v. Digital Receipt: The Dispute Over StockX's Use of Nike Trademarks in NFTs(JDSUPRA, 2022.5.10.)

Fake Bored Ape Yacht Club NFTs Sold by Artist, Yuga Labs Claims(Bloomberg Law, 2022.6.28.)

Gaudiyが体験ミュージアム「約束のネバーランド」GFハウス脱獄編でNFTを活用したキャンペーンを実施(techcrunch, 2021)

In the bag (for now): Hermès survives motion to dismiss in MetaBirkin NFT lawsuit(LEXOLOGY, 2022.6.13.)

Lil Yachty hits music NFT platform Opolous with trademark and right of publicity suit(FRANKFURT KURNIT KLEIN & SELZ PC, 2022.1.29.)

Mintable - An NFT auction of a 96 year-old painting by Wladimir Baranoff-Rossine(Brave New Coin, 2021)

Nike escalates StockX NFT dispute; Hong Kong Customs in major seizure swoop; PONY portfolio sale - news digest(WTR, 2022.5.13.)

OpenSea Disables Trading for Bored Ape #2162 Amid Ongoing Court Case in Singapore(nftgators, 2022.5.20.)

OpenSea: how trademark infringement is rampant on the biggest NFT marketplace(WTR, 2022.6.20.)

PROOF OF ART - A brief history of NFTs(Ars Electronica, 2021)

Pulp Fiction NFT Lawsuit (Miramax V. Tarantino, Et Al.): A Preview Of Coming Attractions(Forbes, 2022.7.25.)

RIAA Takes Down ‘Infringing’ .ETH Domain Auctions from OpenSea(2022.7.14.)

Russian State Hermitage raises \$440K via Binance NFT auction(thebittimes, 2021)

Senators Ask USPTO and US Copyright Office to Conduct NFT Study, with a Focus on IP Issues(JDSUPRA, 2022.7.11.)

SIAE, Italy’s larges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represents authors’ rights as digital assets managed on the Algorand blockchain(Algorand,

2021.3.24.)

The Only Marketplace For Music/Live Event NFT Ticketing is “YellowHeart”(MORNING LAZZINESS, 2022)


Two US Senators Solicit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NFTs(Skadden, 2022.6.21.)

US trademark and copyright offices to study IP impact of NFTs(Cointelegraph, 2022.7.12.)

What about NFT Business Card? |The Business Card can actually be collected in your wallet(CryptoStars, 2022.7.5.)

지식재산 관점의 NFT 활용 및 핵심쟁점 분석 연구

발행일 2022년 08월 11일
 발행인 손승우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3, 9층
 전 화 (02) 2189-2600
 팩 스 (02) 2189-2694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